#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WWW.kli.re.kr

이병희・홍민기・이현주・강신욱・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 책머리에 부쳐

케인즈는 1936년에 출판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고용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점에 있다"고 적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와 연이은 경제대침체를 계기로, 불평등 증대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불평등 심화가 불가피한가, 불평등 수준은 일하는 사람이 수용할수 있을 정도로 공정한가, 경제적 격차가 공평한 기회 제공과 사회적 이동성을 억압하지 않는가, 불평등이 경제의 역동성・효율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불평등이 민주주의와 사회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등 많은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은 U자 형태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개발연대 동안 사회정책의 미비와 노동배제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했던 우리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예외적이었던 만큼이나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의 증가 폭도 컸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자산시장의 변동성과 부의 편중, 조세 행정의 허점, 복지제도의 저발전 등은 불평등 심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 연구의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면서 의미 있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된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불평등 연구를 국

민소득의 생산요소 간 분배로 확장한 연구, 복지지출에서 현물급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추이를 파악하거나 국가 간 비교를 할 때의 유의점을 밝히는 연구,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소득 이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 등의 사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를 포함하여 국가 간 빈곤정책을 비교한 연구 등은 불평등 연구의 주제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분석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체계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열정적인 연구자들의 공동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연구 수행 중에 진행한 '불평등 연구 세미나 에서 발표하고 토론한 연 구자들에 대해서도 연구진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린다. 아직 다루지 못한 쟁점들에 대한 연구와 경제적 불평등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모색이 이후 에도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3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 인 재

#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이병희)	1
제1절 문제의식	1
제2절 연구의 구성 [	5
제2장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이병희) 10	0
제1절 문제의식1	0
제2절 선행 연구1	1
제3절 분석방법과 자료1	4
1. 분석방법14	4
2. 분석자료 ····· 16	6
제4절 분석결과1	9
1.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1	9
2. 고용률과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 $2$	7
3. 인구 고령화와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2	9
4.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0
5.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3	4
6.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6
7. 종 합	7

제5절 요약과 시사점40
제3 <b>장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b> (홍민기) ····· 42
제1절 문제의식42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43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측정43
2. 경제주체별 소득46
3.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
4. 노동소득 최상위의 분배율56
제3절 경제주체별 소득계정59
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59
2.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61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64
제4절 소 결66
제4장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기초 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이현주) 68
제1절 연구문제:'실질적'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재고68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70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72
제4절 분석결과1: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80
제5절 분석결과 2: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 87
제6절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92
제5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 (강신욱) … 95

제1절 문제의식95
제2절 소득이동성 분석의 쟁점과 방법론96
1. 분석방법96
2. 데이터
제3절 소득이동성의 실태99
1. 소득분위의 변동 99
2.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102
3. 소득 수준의 변화 103
4. 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105
5. 소득이동성의 변화 양상 종합108
제4절 개인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109
1.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비교 109
2.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112
3.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14
제5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성116
제6절 소 결121
제6장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 (장지연) ··· 123
제1절 문제의식123
제2절 분석틀과 자료 126
1. 분석틀126
2. 분석대상 국가와 자료129
제3절 근로빈곤 현황130
제4절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국가별 특성 비교133
제5절 소 결143
참고문헌151

# 표목차

<丑	2-	1>	취업자 연간 노동소득의 요인분해22
<丑	2-	2>	소득분위별 연간 노동소득의 로그 차분23
< 丑	2-	3>	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의 고용형태별 분해26
<丑	2-	4>	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고용형태별 분해27
<丑	2-	5>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64세)29
<丑	2-	6>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세 이상)30
<丑	2-	7>	단계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31
<丑	2-	8>	가구주 취업 여부·소득분위별 유배우자 비중 및
			배우자의 취업률32
<丑	2-	9>	단계별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의 변화 비교35
< 丑	2-1	10>	단계별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 비교36
			피용자보수의 구성44
< < 会 丢	3-	1> 2>	피용자보수의 구성 ···································
< < < 会 < 会 く 至	3- 3- 3-	1> 2> 3>	피용자보수의 구성
< < < 会 < 会 く 至	3- 3- 3-	1> 2> 3>	피용자보수의 구성 ···································
<	3- 3- 3- 3-	1> 2> 3> 4>	피용자보수의 구성
<	3- 3- 3- 3- 3-	1> 2> 3> 4> 5>	피용자보수의 구성
<	3- 3- 3- 3- 3- 3-	1> 2> 3> 4> 5> 6>	피용자보수의 구성
<	3- 3- 3- 3- 3- 3-	1> 2> 3> 4> 5> 6> 7>	피용자보수의 구성 44 부가가치와 국민소득의 관계 45 경제주체의 분류 46 2008년 국민소득 계정 48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57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2008년) 60
<	3- 3- 3- 3- 3- 3- 3- 3-	1> 2> 3> 4> 5> 6> 7> 8>	피용자보수의 구성 44 부가가치와 국민소득의 관계 45 경제주체의 분류 46 2008년 국민소득 계정 48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57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2008년) 60 비금융법인기업의 계정(2008년) 61
<	3- 3- 3- 3- 3- 3- 3- 3-	1> 2> 3> 4> 5> 6> 7> 8> 9>	피용자보수의 구성

<표 4- 1> LIS 참여국가 중 지출 항목 자료의 분석 가능 국가 ······ 79

<噩 4- 2>	한국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변화81
<亞 4- 3>	한국의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cdots$ 82
<班 4- 4>	수정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수준 국가비교 … 87
<班 5- 1>	가구소득분위 변동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 변화 100
<班 5- 2>	소득 변화분의 절대값 변화104
<班 5- 3>	소득 증감분의 변화105
<班 5- 4>	소득지위의 변화에 따른 불평등 변화107
<班 5- 5>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가구소득 기준,
	2006~2007년간=100)108
<班 5- 6>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개인소득 기준,
	2008~2009년간=100)109
<班 5- 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110
<班 5- 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 112
<班 5- 9>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2 113
<班 5-10>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15
<班 5-1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1117
<班 5-1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2118
<班 5-13>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119
<班 5-14>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 ······120
<班 6- 1>	근로빈곤의 발생 기제:개인과 가구 수준126
<班 6- 2>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135
<班 6- 3>	공공부조 수급자의 최저임금수준 취업에 따른 가처분
	소득 변화136

<표 6- 4> 독신 공공부조 수급자가 반일제 최저임금수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2012년)	138
<班 6- 5>	홑벌이 4인 가구, 1인 소득자가 최저임금수준 전일제	
	취업(2012년)	139

# 그림목차

[그림 2- 1]	소득불평등 변화 메커니즘의 분석틀 15
[그림 2- 2]	지니계수 추이17
[그림 2- 3]	분위별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20
[그림 2-4]	10분위별 노동소득의 상대 변화20
[그림 2- 5]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 24
[그림 2-6]	고용률과 임금불평등 변화의 국제비교(2001~2011년) … 28
[그림 2- 7]	일하는 부부간 노동소득의 상관관계33
[그림 2-8]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소득 분위별 기타 가구원 노동
	소득이 가구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34
[그림 2- 9]	가구 시장소득 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35
[그림 2-10]	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재분배정책의 시장소득
	변화율37
[그림 2-11]	단계별 불평등의 변화 비교 38
[그림 2-12]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에서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
	으로의 전이 메커니즘의 비교 40
[그림 3- 1]	경제주체별 소득비율50
[그림 3- 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수50
[그림 3- 3]	임금근로자 평균보수와 평균 개인잉여(명목)51
[그림 3- 4]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53
[그림 3- 5]	노동소득 하위 99%와 상위 1%의 소득비중 추이57
[그림 3-6]	소득 1%, 99% 집단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그린 3- 7]	가계 소득항목벽 추이60

[그림 3-8]	비금융법인기업의 소득원천별 비율62
[그림 3-9]	투자/기업저축의 비율 64
[그림 3-10]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 65
[그림 4- 1]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 83
[그림 4- 2]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변화 85
[그림 4- 3]	교육비와 공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비교 85
[그림 4-4]	가처분소득 불평등 대비 조정 전후 불평등 차이 변화 … 86
[그림 4-5]	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89
[그림 4-6]	의료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90
[	
	가구소득분위(10개 분위) 변동100
	소득분위의 변동 경험자의 비율101
	두 시점 간 소득의 상관계수 변화102
	상대소득의 변화
	소득변화액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105
	가구 경상소득과 개인소득의 변화 추이 10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11
[그림 5- 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114
[그림 6- 1]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전략 127
[그림 6- 2]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빈곤선(2012년)131
[그림 6- 3]	주요국의 근로연령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132
[그림 6-4]	주요국의 고용률 추이132
[그림 6- 5]	주요국의 취업빈곤율133
[그림 6-6]	최저임금 노동자와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135

#### 요 약

본 연구는 심층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진단한다. 이때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정하였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와 원인,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 기초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소득이동성의 변화, 빈곤 문제에 대한 외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와 그 함의 등을 다룰 것이다.

#### ◆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소득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불평등 증가 요인을 탐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 질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상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질 노동소득이 크 게 증가하여, 취업자의 개인별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둘째, 고용률의 증가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생산연령인구의 노동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 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진 않았다.

셋째, 65세 이상을 추가할 경우 불평등은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 고령화가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넷째, 가구(가족)는 소득의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생계를 같이 함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

나 최근 들어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중상위 분위인 배우자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부부간 노동소득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가구(가족)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효과는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비노동소득은 가구 시장소 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노동시장 소득 자 체의 불평등 증가에 따라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커서 가처 분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요인별 영향을 요약하면, 고용률 증가와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인구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초래하고, 가구(가족)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요인들의 효과를 합한 값은 2000년과 2011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2000년대 가구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 증가가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확대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방치하면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고용률의 증가다. 그러나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불평등을 유발하는 고용 창출로는 고용률을 높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를

억제하는 정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이 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검토한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말하여, 피용자보수를 부가가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국민소득에서 경제주체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피용자보수 비중은 정체, 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 개인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개인영업잉여를 모두 이윤으로 보는 한국은행방식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후 60%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반면 어떤 가정에 의해서이든 자영업자의 소득 중 일부를 피용자보수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보정1'의 경우, 199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80.4%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67.5%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과 더불어 근로자 집단 내 불평등도 늘어났다. 이윤의 비중과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 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소득 하위집단의 소득비중은 감소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근로자 집단 내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였 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상위 1%의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 는 비중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즉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자 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대기업 중심으로 영업이윤이 급증하였는데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크게 변하여 기업의 이자지불이 감소한결과 사내유보가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들의 영업이윤은 늘어났지만 투자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늘지는 않아서 기업 내부에 유보금이 급증했다. 기업의 이윤은 급증하였지만 근로자들의 보상은 그

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기업소득과 개 인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소득불평등이 실질적인 생활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가계의 지출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계측하는 경우 기존의 가처분소득을 기반으로 계측된 불평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가처분소득에서는 주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지출만 고려된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기초수준의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후의 가처분소득이 좀 더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라 보았다.

분석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경우, 수정된 가처 분소득 불평등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국가 간에 비교하여 각 국가의 사회정책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실질적 불평등을 종단으로, 그리고 국가비교로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2006~2012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LIS 자료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의 소득과 지출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08년, 2009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각 지출을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도 유사하다. 경제위기 시에도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극적으로 줄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각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상이하다. 의료비를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높다. 의료비 지출이 불평등에 가장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값을 유지하였고 경제위기 시

에도 줄지 않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비를 차감한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과 수정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차가 0.0037에서 0.0119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24인 점을 고려하면 그차이가 작지 않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0.2966)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큰 차이를 보인 국가는 한국이다. 반면 프랑스와 영국은 그 차가 거의 없다. 의료비를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을 보면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때, 미국에서 큰 폭(0.0319)으로 악화된다. 한국에서도 그 폭이 작지 않다. 높은 본인부담 때문으로 이해된다. 소득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삶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되며,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가 삶의 불평등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이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단위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고, 또한 같은 자료의 4~7차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 단위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하였다. 소득이동성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고, 각 방식에 따라 소득지위 변동의 양상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득이동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분위 간 이동, 두 시점 간소득의 상관계수, 소득 변동의 상대적 크기, 소득지위 변동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소득이동성의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분위 변동의 정도나 상대소득의 변화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가구소득의 이동성은 2006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으나 상관계수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양상이었다. 소득이동성은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 동안 관측된 것이지만, 개인소득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은 그 저하 경향이 좀 더 분명하게 관측되었다. 개인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불평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인구집단별 및 경제활동상태별로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소득이동성을 서로 비교하였다. 대표적인 소득이동성 지 표인 소득의 상관관계(높을수록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임)를 통해 비교하였을 때 남성(0.52)보다 여성(0.79)이, 연령 면에서는 40대 (0.69)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0.62)에서, 학력 면에서는 중졸 이하 의 저학력층(0.79)에서 소득이동성이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 별로 구분했을 때에는 상용근로자(0.57)와 일용직 근로자(0.57), 그 리고 고용주(0.57)의 소득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 적으로 평균소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소득이동성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소득불평등의 고착을 우려하도록 만 드는 현상이다.

소득이동성의 확대가 여전히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 부 취약계층의 소득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소득이동성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지위의 변동이 많은 집단과 소득지위의 하향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 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큰 폭으로의 하향이 발생하기 쉬 운 경우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60대 이상, 중 졸 이하의 학력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시 계열 간 소득의 상관계수가 커서 저소득으로의 고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며, 따라서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입의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다.

#### ◈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이 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제도의 조합'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배열을 살펴본다.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은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하는데,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를 결합하여 이해할 수 있다.

최소소득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가지 사회정책모델이 드러난다. ① 일을 하면 고용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급여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노동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사회정책 방향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은 낮을 것이다. 공공부조 수급자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 ② 다른 한편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고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정책모델이 있다.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공공부조도 결과적으로 근로연계급여의 역할을 하도록 저임금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 이 틀에서 근로연계급여(그리고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분석대상 국가로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로는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set(CSB-MIPI)을 사용하였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대상연령대 인구 중에서 10~20%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네덜란드가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독일

은 2007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근로연령대 빈곤율의 증가와 고용률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관찰한 국가들만 보면,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고용률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독일은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빈곤율도 증가하는 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빈곤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빈곤율을 고려하면 이해된다. 독일은 취업빈곤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공공부조를 받던 수급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가처분 소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근로연계급여(공공부조의 보충급여 포함)와 취업성공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저임금 취 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감안하여 살펴보았다. 최저임금 일자리 에 반일제로 취업할 경우 발생하는 가처분소득의 변화는 각국이 'work first' 정책을 취하는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 가 지 혜택을 붙여서 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는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강하며,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약 하다.

# 제1장

### 머리말

#### 제1절 문제의식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평등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우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넘어선 격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유할 수 없는 사회는 시장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교육 기회의 격차, 건강 투자 격차는 세대 간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불평등은 경제적인 효율성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장을통해 분배 문제를 해결한다는 낙수 효과의 약화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구매력 약화는 소비 지출의 억제나 과잉 부채로 이어지며, 이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유인체계를 변화시켜 지대 추구 행위를 조장하며 경제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 셋째,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정치의 양극화와 극단주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1)

<sup>1)</sup> Stiglitz(2012)는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불평등이 어떻게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마비시키는지, 그리고 불평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정치과정의 실패에 기인함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평등과 관련한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 특히 주목되는 연구 쟁점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sup>2)</sup>

첫째, 경제위기와 불평등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느냐다. 전통적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에 불평등은 고려되지 않았으나, 불평등이 경제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한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aian(2010)은 위기의 원인인 가계 부채의 증가가 소득불평등 때문이 라고 주장하였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이에 따른 불만에 대응하여 미국정 부는 소득불평등을 억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신 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실질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수요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야 기한 것이다. 이러한 라잔의 가설을 Kumhof and Ranciere(2010)는 이론 모델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1920~1929년과 1983~2008년이 부 유층의 소득 비중 증가와 나머지 계층의 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 및 실물 위기의 공통점을 보이는데. 소득 증가가 뒷받침되지 않는 중산층 이하 계 층은 부채 증가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금융위기를 야기했다는 것 이다. 그들은 불평등 억제를 위해 노동자의 교섭력 회복과 노동 과세에서 경제적 렌트에 대한 과세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Reich (2010)는 197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여 중산층 이하의 가구 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근로시간의 증가로 대응하여 왔으나 더 이 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거품이 붕괴되 자 더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Stockhammer (2012)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의 규제 완화와 불평등 증가가 상호작용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제위기와 불평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1911~2010년간 14개 국가의 32개 금융위기를 분석한 Atkinson and Morelli

<sup>2)</sup> 이하에 소개하는 불평등 연구 관련 쟁점은 본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한 불평등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토론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다.

(2010)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불평등과 위기 사이의 뚜렷한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불평등이 경제위기를 초래한다는 가설에 반대하는 Krugman(2010)은 금융자유화 정책이 불평등과 위기를 동시에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경제 회복을 저해한다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Stiglitz, 2013).

둘째, 최상위계층으로의 소득 집중 문제가 소득불평등 연구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일자리와 생활을 위협하면서, 초기엔 규제받지 않고 상상 이상의 지대를 누리는 금융 자본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지만, 이후엔 상위 1%에게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문제로 옮겨갔다. 최상위 소득계층의 소득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은 학술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Pareto 분포에 기초해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추정한 Piketty and Saez(2003)는 기존의 조사 자료에 기초해 측정한 불 평등 척도에 비해 소득 분배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주요한 원인은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6년 8.9%에서 2007년 23.5%까지 증가하였 으며, 이는 경제 전체 소득 증가의 58%를 상위 1%가 가져간 것에 해당한 다. 상위 10% 중 1%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 비중 변화는 거의 없으며, 상위 10%의 소득 비중 변화는 대부분 상위 1%가 주도한 것이다. 상위 1% 내에서도 최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동일한 기간 동안 2.6%에서 무 려 12.3%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대공 황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소득세 자료를 이용한 소득집중도 연구는 이 후 각 나라마다 확산되었으며. World Top Income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kinson, Piketty, and Saez(2011)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이 후 상위 1%의 소득 비중 증가는 영어 사용권 국가에서 두드러졌으며, 유 럽대륙 국가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 OECD(2011)는 상위계층의 소득 비 중이 증가한 원인으로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의 인하. 세 계화와 기술 발전, 노동조합 및 노동시장제도의 약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낙년(2012a)의 연구가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국세청의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소득집중도는 1970~90년대에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0년 상위 1%의 소득 비중은 11.5%에 이르는데,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고 프랑스와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는 최근소득집중도가 빠르게 증가하여 영미형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셋째, 국민소득이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간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기능적(상대적)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학과는 생산요소 간 분배에 주목했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이 장기적으로 일정하다는 Bowley's law가 제기된 이후 기능적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Glyn, 2009). 그러나 실질임금의 정체가 거시적인 수요 위축을 야기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OECD(2012)는 1990~2009년 동안 선진 30개국 가운데 26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시장소득의 불평등 증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하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OECD(2012)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대부분이 산업 내에서 발생하였으며, 자본증대적인 기술변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ILO(2012)는 금융 국제화, 노동시장제도와 복지국가의 약화가 주된 원인이며, 기술변화와 세계화는 일부의 설명력을 가질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는 임금억제 정책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거시경제적 영향에 관한 포스트케인지언들의 연구들은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근린궁 핍화 정책의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한다. Lavoie and Stockhammer(2012), ILO(2012)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소득몫을 높여 거시 경제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임금주도적인 성장(wage-led growth)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압축적 인 성장을 통해 특별한 사회정책 없이도 소득분배의 개선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사라졌다.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은 그다지 개선되 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인 빈곤율은 늘어나면서 사회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불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임금 불평등은 셋째로 높으면서도 시장소득은 가장 평등하며,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은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속한 개인과 가구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가구 단위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억제하였기 때문이다(장지연, 2012).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해서, 또는 가구내 취업자 수를 늘려서 불평등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대응하는 것은한계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한 것이며,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제시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평등에 관한 국내 연구는 가구 소득분배(personal income distribution)의 추이와 요인 분해를 통해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치중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양극화를 둘러싼 논쟁이 전개되었지만, 학술적인 성격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의 성격으로 변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의 실태 및 추이에 대한 서술적 분석을 넘어서 심층적 분석과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의 성격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불평등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인 불평등에 한정한다. 가구소득 불평등의 동태적 변화와 원인,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 기초욕구 충족을 고려한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소득이동성의 변화, 빈곤 문제에 대한 외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와 그 함의 등을 다룰 것이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가구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제2 장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탐색(step-wise approach)하는 방법을 사용하 여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 불평등임을 밝힌다. 불평등 영향 요인을 임금률, 근로시간, 고용률 등의 노동시장 요인, 인구 고령화 요인, 가구 요인, 비근로소득 요인, 재분배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개인 단위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 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한다.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국내의 불평등 연구는 가구소득 불평등 또는 노동시장 내부의 불평등에 치중되어 왔지만, 노동-자본소득 간 관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경제력 집중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와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1년 59.0%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62.6%에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영세 자영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가운데 얼마를 노동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조정방법을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든 노동소득분배율이 큰폭으로 하락하였음을 보일 것이다. 경제주체별로는 피용자보수의 비중이정체하고, 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하며, 개인 영업잉여 비중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근 주목받은 가계소득이 정체하고 기업소득이 급증하는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실이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하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비 교하면 실제 삶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데, 가처분 소득에는 현물급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와 욕구별 급 여가 크게 확충된다면, 가처분소득 기준의 불평등을 시기별로 비교할 때 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현금급여보다 현물급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현물급여가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최근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흔히 현물급여를 금전으로 환산 (valuation)하는 방법들이 주로 사용되지만(OECD, 2011; Verbist and Matsaganis, 2012; 박기백 외, 2006), 도입되는 많은 가정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제4장에서는 사회정책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영역인 주거, 의료, 교육 등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수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소득 불평등 수준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욕구 중 어느 정도가 충족되지 않아 가구 부담으로 남아 다른 지출을 제약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 연구에서 소득만이아니라 지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불평등이 높더라도 이동성이 활발할 경우 장기적인 불평등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상향 이동을 통한 사회의 역동성이 높다면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불평등 수준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2000년대 중반 이후를 대상으로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가구 소득분위가 상승한 개인과 하락한 개인의 비율이 주는 반면변하지 않은 가구와 개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소득 이동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소득이동성의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특히 평균소득이 높은 집단과낮은 집단의 소득이동성이 동시에 낮게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소득불평등의 고착을 우려하도록 만드는 현상이다. 경제활동상태 변화와 소득이동성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분석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노동시장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불평등 증가와 함께 상대빈곤율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지만 자신과 그가족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저임금과 비공식 일자리가 비대한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근로연령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 주요한 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시장의 취약성과 근

로빈곤층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제6장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Minimum Income Protection)의 조합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배열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 이때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최소소득보장정책으로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 그리고 최저임금제도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이러한 제도배열의 변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유럽의 최소소득보장제도 프로젝트(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set)의 통계를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유럽 주요국의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된 본 연구는 불평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첫째, 자산 불평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소득 자료에서는 재산소득 비중 이 너무 낮게 측정되어, 자산의 불평등 기여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노 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중산층의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을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하층 이하의 실질소득 정체도 문제지만, 중산층은 교육ㆍ주 거 등에서의 과중한 지출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 회정책을 교육ㆍ주거 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출 불평 등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실질 임금이 정체한 상태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임금 과 생산성 간의 재연계가 필요하다. 경제 전체 측면과 산업 단위에서 임 금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넷째, 노동시장 불평등 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추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불평등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무엇인지, 정책 간 일관성 과 보완성을 가진 정책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본 연구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제도. 사회서비스, 교육, 조세 및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노둣돌이길 희망하면서도 이상의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숙제로 남아 있음을 밝힌다.

## 제2장

##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요인의 탐색적 분석

#### 제1절 문제의식

최근의 가구소득 불평등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가구소득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노동시장 불평등임을 밝히고 있지만,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연구는 드물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 가구의 노동공급, 자산가격의 변동, 복지지출의 변화 등의 다양한 요인이 소득분 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요인들이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따라 정책적인 대응방법은 달라질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가 불평등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불 평등을 억제하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이 감소하는지, 임 금 불평등이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핵심적인 요인인지 등의 다양한 질문 에 대한 대답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의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평등 증가의 핵심 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 단위의 노동소 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으로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분석 목적에 비추어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성하였다. 2000년대를 분석 시기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사용한 자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에 다소 감소하던 소득불평등 수준이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던 2000년대 중반에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불평등을 심화시킨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 참여와 가구 단위의 소득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증가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불평등 증가가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임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제2절 선행 연구

개인 단위의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근로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가구소득 불평등 심화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근로소득 불평등을 주목하게 되었고, 둘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은 Gottschalk and Danziger (2005)였다. 그들은 노동시장 불평등 연구와 가구소득 불평등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고 비판한다. 노동경제학은 가장 좁은 소득개념인 개인별임금 분포의 변화에 집중하여, 기술변화·해외 경쟁·노동시장제도의 변화 등이임금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여 왔다. 반면 가장 넓은 소득 개념인 가구소득의 불평등은 사회정책 연구에서 주로다루어져 왔으며, 재분배정책에 집중하였다. 그들은 소득을 개인의임금률, 개인의연간 근로소득, 가구의연간 근로소득, 가구의 균등화된소득

등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각각의 추이를 분석한다. 남성의 임금불 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지만, 시기 에 따라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이나 비근로소득 등의 영향이 더 큰 점 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Salverda and Haas(2013)는 그동안의 임금불평등 연구와 소득불평등 연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임금불평등의 분석 단위는 근로자 개인인 반면 소득불평등은 가구 단위다. 또한 임금불평등 연구는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당 임금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소득불평등 연구는 연간 소득을 사용하는데, 근로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력의 차이가 반영된다. 그리고 분석의 초점도 임금불평등 연구에서는 교육과 같은 인적 특성, 산업·직업 등의 일자리 특성, 노동시장제도가 상대임금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반면소득불평등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배분, 빈곤과 연관된소득의 충분성, 가구간소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재분배정책의 효과를 주로 다룬다. 그들은 임금불평등과소득불평등 간의 관계를 규명해야만소득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OECD(2011)는 가구소득 불평등이 임금불평등과 반드시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임금불평등이 증가하여 왔으나, 가구소득 불평등은 나라마다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후술하듯이, OECD는 소득불평등 분석을 위해 단계적으로 불평등 영향 요인을 추가하는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분석들을 차용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로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불평등 원인을 규명하는 시도가 많았는데,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연구로는 두연구가 대표적이다.

장지연·이병희(2013)는 1996~2011년에 걸친 소득불평등의 증가를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와 가구의 노동공급, 재분배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구유형별 요인분해, 소득원천별 요인분해,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과 다양한 소득원천을 고려한 요인분해 등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

하여, 지난 15년간 불평등 증가의 요인들을 규명하고 있다. 첫째, 지난 15년간 불평등 증가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로연령가구의 불평등 증가가 더 주된 요인이다. 둘째,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소득불평등을 더 이상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셋째, 소득불평등증가의 주된 요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 불평등 확대다. 분석자료로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후술하듯이 연간소득 자료와 월간 소득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불평등 증가를 과소 추정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요인분해 방법을 적용하여불평등 증가에 대한 각 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는 장점이 있지만, 불평등전이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강신욱(2012)은 불평등 증가의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OECD(2011)가 제안한 방법을 수정하여,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소득 불평등을 기준으로 다른 집단과 다른 소득범주를 추가함으로써 지니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불평등이 증가한외환위기 직후 시기와 2000년대 후반 시기를 비교하여, 2000년대 후반에도시 가구의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미취업 가구주의 존재, 배우자의 취업, 노인 가구의 증가 등은 불평등을 확대하는 반면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과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기타 가구소득, 재분배정책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 불평등이전체 가구소득의 불평등에서 가장 주된 요인이며,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여타 요인들도 근로소득 불평등 심화의 경향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계조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한정되고 불평등 수준과 추이가 과소 측정되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별 고용 및 소득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개인 단위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 를 구성하여,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불 평등으로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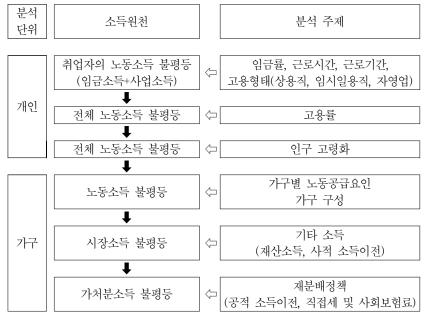
#### 제3절 분석방법과 자료

#### 1. 분석방법

소득불평등 변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OECD(2011)가 제안한 분석틀, 즉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소득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탐색(step-wise approach)하는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불평등 영향 요인은 임금률, 근로시간, 고용률 등의노동시장 요인, 인구 고령화 요인, 가구 요인, 비근로소득 요인, 재분배 요인 등으로 나누었다. 강신욱(2012)이 지적하듯이, 분석의 출발점과 다양한 요인들을 어떤 순서로 추가할 것인지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가구소득 불평등으로의 전이 메커니즘의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우선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출발 점으로 하여, 6단계로 분석단위를 확대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인구 고 령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15~64세에 속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 평등을 분석한다.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 간의 이행이 잦고 부업을 가진 사람들도 늘어나지만, 연간 단위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소득과 사 업소득을 합하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개인이 일을 통해 획 득하는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반영한다. 둘째 단계 에서는 비취업자를 포함한 개인 전체로 확장하였을 때 노동소득 불평등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고용률의 변화가 개인 단위 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셋째 단계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를 추가하여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의 취업률 · 노동소득 불평등의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넷째 단계에서는 소득을 공유하는 단 위인 가구로 분석단위를 확장하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소 득계층별로 가구 내에서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노인을 포함한 피부양 가구원 수가 얼마인

[그림 2-1] 소득불평등 변화 메커니즘의 분석틀



자료: OECD(2011), 강신욱(2012), 장지연·이병희(2013)에서 재구성.

지에 따라서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가구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다섯째 단계에서는 노동소득 이외에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시장소득 불평등을 통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단계에서는 직접세와 사회보험료, 공적 이전소득이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시장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 간의 차이만큼이 재분배정책의 효과다.

이상의 단계적인 탐색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OECD, 2011). 첫째, 여러 요인들의 동시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은 달라질 것이지만, 단계적인 탐색 방법에서는 복지 지출의 영향만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개별 요인들 자체가 변화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임금 불평등에서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다양 한 요인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요인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영향이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배열 순서로 불평등 수준의 변화폭을 두 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개별 요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소득불평등 지표로는 주로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는 단 기간에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시계열 변화가 크지 않지만, 모든 계층의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다는 장점이 있다(강신욱, 2012).

#### 2. 분석자료

연구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통계청이 공표하는 소득분배 지표의 자료원은 가계동향조사다.3)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 1982년부터 시작되는 가장 긴 시계열적인 소득분배 정보를 제공하지만, 2006년 이후에야 전국의 모든 가구(농어가 가구 제외)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분석시기를 확장하려면 도시 2인 이상 가구로 한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전체 가구로 확장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는 않다. 통계청은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묻는 가구소비실태조사를 1996년, 2000년에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이들 조사에서 측정되는 지니계수가 가계동향조사의 그것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1996년,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이후의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대상이 농어가를 제외한 전체 가구로 동일하다.

<sup>3) 1990</sup>년 이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의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직후보다 높은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후 크게 악화되었던 소득분배 상황은 2000년대 초반 다소 개선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경제가 성장하고 실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시 악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소득층의 소득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지니계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감소 경향을 가질지는 불확실하다. 둘째, 1인 가구와 읍면지역, 농어가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로 조사 대상을 확장할수록 불평등 수준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단신 가구, 비도시 지역, 농어가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간의 격차는 2000년대 중반부터 확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확대되면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한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1996 년 0.274에서 2000년 0.343으로 급증하였는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2006 년 0.300, 2012년 0.300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은 가계동향조사에 농가경제조사를 통합하여 전체 가구의 불평등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조사대상이 동일하므로 불평등의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는 KOSIS에서 0.311인 데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0.365로 현저하게 높다.4)

김낙년(2013)은 가계동향조사가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금융소득 등의 과소보고 문제에 따라 지니계수가 과소 추정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가계동향조사를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면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이 심하게 나타난다. 또한 김낙년(2013)이 국세청 소득세 자료의

#### 0.40 0-0.38 -시장소득(도시2인 이상) 0.36 \*\*\*\*\*\* 가처분소득(도시2인 이상) 0.34 시장소득(전체 비농가1) 0.32 - 가처분소득(전체 비농가1) 0.30 ● 시장소득(전체 비농가2) 0.28 ■ 가처분소득(전체 비농가2) 0.26 시장소득(전체1) \*\*\*\*\*\*\*\*\*\*\* 0.24 ■■■ 가처분소득(전체1) 0.22 시장소득(전체2) 0.20 □ 가처분소득(전체2)

[그림 2-2] 지니계수 추이

주: 실선 또는 점선은 가계동향조사(또는 농어가경제조사를 포함)를, 동그라미나 네모는 가구소비실태조사 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통계청, KOSIS; 통계청(1996,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2012),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복지조사 자료.

<sup>4)</sup>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는 가처분소득은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 득으로, 본 연구의 정의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분배정책의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경상소득에서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 비소비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구하였다. 그리고 음의 가처분소득은 0으로 간주하였다.

소득구간별 인원을 추정하여 가계동향조사와 결합하여 수정한 지니계수는 2010년 시장소득 기준 0.415, 가처분소득 기준 0.371로 나타나서, 가계동향조사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지니계수에 가깝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묻는 조사가 소득분배의 현실에 근접하며, 둘째, 매월 소득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와 지난 1년간의 소득을 묻는 조사 간에는 시계열적인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자료<sup>5)</sup>를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는 본 연구에 필요한 개인 별 소득 및 고용 정보와 가구의 소득 및 특성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도 고려한 것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 1996년 자료에서는 개인별 종사상 지위 정보가 없고 사업소득을 개인별로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두 자료는 지난 1년 동안의 주된 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별 고용 및 소득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에서는 개인별 노동소득이 조사되었으나 공개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을 개인별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가구주와 배우자 만으로 개인의 노동소득 자료로 구성하였다.6)

그러나 두 조사 간에는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의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는 점을 밝힌다. 첫째, 조사단위가 가구소비실태조사는 혈연 여부와 상관 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인 가구인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는 차이가 있다. 둘째,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농어가도 조사하였지만 자료는 농어가를 제외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가를 제외한 전체 가구의 소득분배상황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농어가를 포함한 전체 가

<sup>5)</sup>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자료에서는 개인별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부문 조사의 가구 및 가구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sup>6) 15~64</sup>세인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8.0%, 2011년 88.3%를 차지한다.

족의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2000년 조사에서는 농림축어업소득을 별도로 조사하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 비중이매우 낮으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차이를 조정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본 연구는 각각의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두 조사에서 소득의 조사기준일은 각각 2000년과 2011년이므로, 2000~2011년동안 소득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 제4절 분석결과

### 1.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 가. 취업자 노동소득의 불평등 추이

2000~2011년 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한 분석의 출발점으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살펴보았다. 이때 취업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고령화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15~64세로 한정하였으며, 둘째, 자료의 한계 때문에 가구주와 배우자로 국한하였고, 셋째, 지난 한 해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취업자를 유급 취업자로 정의하였다.7) 그리고 취업자의 개인별 노동소득은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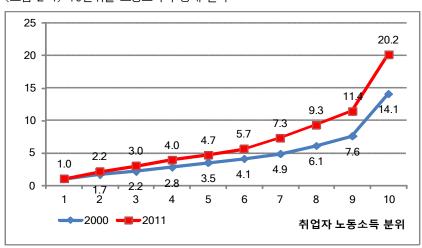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노동소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2-3]에서 분위별 실질 노동소득의 변화를 보면, 2000~2011년 동안하위 1분위에서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2분위에서는 정체하고, 7분위 이상의 고소득계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그림 2-4]는 하위 1분위 소득을 1.0으로 하였을 때 분위별 상대소득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10분위의 상대소득은 2000년에 14.1배에서 2011년 20.2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sup>7) 2011</sup>년 조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별도의 종사상 지위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업소득보다 적어서 자영업자에 포함하였다.

[그림 2-3] 분위별 실질 노동소득 증가율



[그림 2-4] 10분위별 노동소득의 상대 변화



주: 노동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함. 1분위 소득을 1.0으로 하였을 때의 상대소득임.

낮은 소득 분위에서 실질 노동소득이 하락 또는 정체하고 높은 소득 분위에서 소득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빠른 현상은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로 이어진다. 지니계수로 측정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00년 0.401에서 2011년 0.420으로 증가하였다.

### 나.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과 임금률 · 노동시간 · 근무기간

Blau and Kahn(2009)은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가격효과와 수량효과에 의한 기여도를 통해 알 수 있는 분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간 단위로 측정되는 노동소득(E)은 노동의 가격인 시간당 소득(w)과 노동의 양인 연간 노동시간(h)의 곱과 동일하다.  $E=w\times h$  방정식에 로그를 취하면, 노동소득의 분산은 시간당 소득의 분산, 연간 노동시간의 분산, 두 요소 간의 공분산으로 분해된다.

$$var(\log E) = var(\log w) + var(\log h) + 2cov(\log w, \log h)$$

아쉽게도 노동시간에 대한 정보는 2011년 자료에서만 제공된다. 불가 피하게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아닌 2011년 노동소득 불평등의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2011 년 조사에서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과 한 해 동안 수입 을 목적으로 일을 했던 기간을 묻고 있다. 두 정보를 이용하여 연간 노동 시간과 시간당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분석 대상은 비임금근로자를 포함 한 유급 취업자 전체이며, 노동시간을 응답하지 않은 표본은 제외하였다. <표 2-1>은 취업자의 연간 노동소득을 요인분해한 결과다. 주된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시간당 소득불평등이 노동소득 불평등의 가장 큰 요 인이다. 시간당 소득의 분산이 전체 노동소득 분산의 73.9%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 시간당 소득과 연간 노동시간 간의 공분산은 음의 값을 가진 다. 이는 시간당 소득이 높은 취업자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 한다. 셋째, 성별로 보면, 남성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은 압도적으로 시간당 소득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지만, 여성에서는 시간당 소득의 불평등뿐 만 아니라 노동시간의 설명력도 크게 나타난다. 이는 연간 노동시간의 변 동성이 여성에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과 분석 시기의 불일치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 불평등의 기여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OECD (2011)에서 시간당 임금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설명력은 0.546이며, Blau and Kahn(2009)에서 남성 근로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임금

	$var(\log E)$	$var(\log w)$	$var(\log h)$	$2cov(\log w, \log h)$
전체	1,388	1,025	483	-120
겐세	(100.0)	(73.9)	(34.8)	-( 8.6)
남성	1,036	935	311	-210
당시	(100.0)	(90.3)	(30.0)	-(20.3)
여성	1,328	877	700	-249
A,9	(100.0)	(66.0)	(52.7)	-(18.7)

〈표 2-1〉취업자 연간 노동소득의 요인분해

주:() ) 안은 연간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각 요인별 기여도임.

불평등의 기여가 0.733이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임금 불평등의 기여가 Blau and Kahn(2009)의 0.715에 비해 낮다.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이 저임금 집단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연간 근로시간은 월간 근로시간과 일한 개월 수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연간 노동소득은 시간당 임금×월간 노동시간×연간 취업월의 세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취업자의 노동소득을 5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평균 노동소득의 격차에 대한 세 가지 요인별 기여도를 로그 차분(log-difference)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2-2>를 보면, 첫째, 전체 유급취업자의 최상위 5분위와 최하위 1 분위 간 평균 노동소득 격차의 70.5%를 시간당 임금격차가 설명하여, 앞 서 분산분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한편 연간 노동시간을 월 근로시 간과 취업 개월로 나누어 보면, 근로기간의 영향이 월 노동시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서, 고용 안정성이 근로시간에 비해 노동소득 격차를 더 크게 하는 요인이다.

둘째, 최상위 분위와 중간 분위 간 평균 노동소득 격차(Q5-Q3)는 대부분 임금률의 격차에 의해 발생하는 반면 중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 평균 노동소득 격차(Q3-Q1)는 임금률 격차가 50.8%, 근무기간 격차가 25.6%, 노동시간 격차가 23.5%를 설명한다. 이는 최하위 소득분위에 속한 취업자가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적은 근로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성별로 보면, 남성의 분위 간 노동소득 간 격차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은 임금률의 격차인 반면 여성에서는 임금률뿐만 아니라 근무기간과 노동시간 격차가 분위 간 노동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

			노동	소득	분위				로그	차분		
		Q1	Q2	Q3	Q4	Q5	Q5	-Q1	Q5-	-Q3	Q3	-Q1
	연간 노동소득(만 원)	682	1,511	2,348	3,629	7,434	2.454	(100.0)	1.070	(100.0)	1.384	(100.0)
전	시간당 임금(만 원)	0.64	0.78	1.10	1.55	3.14	1.730	(70.5)	1.026	(95.9)	0.704	(50.8)
체	월 노동시간(시간)	168.4	208.1	213.8	216.1	212.4	0.329	(13.4)	0.003	(0.3)	0.325	(23.5)
	취업월(개월)	9.0	11.2	11.5	11.7	11.9	0.395	(16.1)	0.041	(3.8)	0.355	(25.6)
	연간 노동소득(만 원)	1,077	2,212	3,287	4,578	8,713	2.127	(100.0)	0.893	(100.0)	1.235	(100.0)
남	시간당 임금(만 원)	0.78	1.03	1.39	1.90	3.61	1.721	(80.9)	0.899	(100.7)	0.822	(66.6)
성	월 노동시간(시간)	197.1	219.1	221.1	216.6	214.2	0.141	(6.6)	-0.030	-(3.3)	0.171	(13.9)
	취업월(개월)	9.9	11.5	11.7	11.8	11.9	0.265	(12.4)	0.023	(2.6)	0.241	(19.5)
	연간 노동소득(만 원)	473	987	1,378	2,157	4,825	2.396	(100.0)	1.178	(100.0)	1.218	(100.0)
여	시간당 임금(만 원)	0.62	0.65	0.67	1.04	2.25	1.415	(59.0)	1.147	(97.3)	0.268	(22.0)
성	월 노동시간(시간)	145.5	187.6	203.9	204.8	200.7	0.447	(18.6)	-0.013	-(1.1)	0.460	(37.7)
	취업월(개월)	8.0	10.7	11.3	11.5	11.8	0.535	(22.3)	0.044	(3.8)	0.491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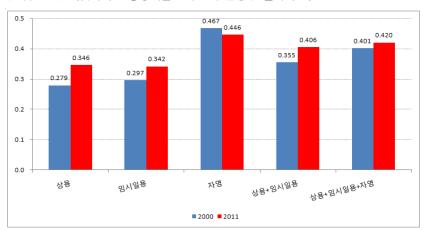
〈표 2-2〉 소득분위별 연간 노동소득의 로그 차분

히 여성 취업자에서 중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 평균 소득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은 근무기간, 노동시간, 임금률 순으로 나타난다. 중하위 분위 간임금격차는 커지 않는 반면 저임금 여성 취업자의 근무기간과 노동시간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은 2011년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노동의 가격인 임 금률의 격차에 의해 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다만, 저소득 취업자, 특히 여성 저소득 취업자에서는 고용 단절과 짧은 근로시간이 낮은 노동소득 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다.

### 다.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형태

2000년대는 노동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의 증가,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함께 경험한 시기다. 우선 [그림 2-5]에는 고용형태별 노동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첫째, 2000년을 기준으로 고용형태의 집단 내 불평등은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주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둘째, 고용형태의 집단 내 불평등 증가폭을 보면, 상용직의 불평등이 0.279에서 0.346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자영업주의 불평등 수준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자영업 집단



(그림 2-5) 취업자의 고용형태별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

의 이질성을 줄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상용직에 집단 내 불평등이 큰 고용형태를 더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노동소득 지니계수는 0.346이었으나 임시일용직 집단을 더하면 0.420으로 더욱 증가한다.

고용형태별 구성 비중과 소득 변화가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구성집단별 불평등의 요인분해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8) 지니계수는 가법적 분해 가능성의 공리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집단별로 분해할 경우 완전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엔트로피 지수로 분해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지수의 일종인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을 사용하였다. 대수편차평균은 아래처럼 자연대수로 전환된 소득에 대하여 그 편차를 평균한 값으로 정의된다. 만일 소득이 완전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대수편차평균은 0이며, 소득분배가 불평등할수록 그 크기는 커진다.

$$MLD = \frac{1}{n} \sum_{i} \ln \frac{\overline{Y}}{Y_i}$$

이때,  $\overline{Y}$ 는 모집단 전체의 평균 소득,  $Y_i$ 는 가구 i의 소득, n은 개인 수

<sup>8)</sup> 구성집단별 요인분해 방법에 대한 소개는 Jenkins(1995), 여유진 외(2005) 참조.

이다.

고용형태별로 집단을 나눌 경우, 전체 불평등도는 아래 식과 같이 집단 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정태적 요인분해).

$$MLD^t = \sum_g w_g^t \cdot MLD_g^t + \sum_g w_g^t \cdot \ln \frac{\overline{Y}}{Y_g}$$

이때  $MLD^t$ 는 t기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이며,  $w_g$ 는 특정 고용형태(g)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중이고,  $MLD_g$ 는 고용형태별 소득불평등도이다. 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은 고용형태별 불평등도를 그 집단의 구성비를 가중한 합으로, 집단 내 불평등도(withingroup component)이다. 둘째 항은 모집단의 평균소득에 대한 고용형태별 평균소득의 대수편차에 각 집단의 구성비를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한 값으로 집단 간 불평등도(between-group component)이다.

<표 2-3>은 연도별 집단의 특성과 정태적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9) 우선 고용형태별 특성을 보면, 첫째, 집단 내 불평등도는 자영업자가 가장 크고, 임시일용직, 상용근로자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집단 내 불평등은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에서는 감소하였다. 둘째, 고용형태별 구성비중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는 감소하였다. 셋째, 평균소득은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순이며, 지난 10년간소득의 증가폭은 상용직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2011년의 정태적인 요인 분해 결과를 보면, 전체 불평등에 대한 집단 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77.8%,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도가 22.2%로 나타 난다. 집단 내 불평등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내부 불평등의 기여도가 크며, 집단 간 불평등은 임금이 전체 평균소득에 비해 크게 낮은 임시일용직에서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난다. 2000년과 비교하면, 상용근로자의 집단 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 내부 불평등의 기여도는 감소하였다. 한편 임시일용직의 집단 간 불평등의 기여도는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sup>9)</sup> 노동소득이 0인 경우 로그 형태가 정의될 수 없기 때문에 1의 값을 주어 계산하였다.

		불평등(MLD)	구성비	평균소득	요인분해		
		_ 돌성으(IMITID)	T 28 H	정민소국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상용직	0.1352	0.392	2,317	0.0530 (17.4)	-0.0635 -(20.8)	
2000	임시일용직	0.1505	0.308	1,015	0.0463 (15.2)	0.2042 (67.0)	
2000	자영자	0.4525	0.300	2,498	0.1357 (44.6)	-0.0712 -(23.4)	
	전체	0.3046 (100.0)			0.2351 (77.2)	0.0695 (22.8)	
	상용직	0.2120	0.532	3,730	0.1128 (33.1)	-0.0696 -(20.4)	
2011	임시일용직	0.2355	0.201	1,273	0.0473 (13.9)	0.1898 (55.7)	
2011	자영자	0.3917	0.267	3,866	0.1046 (30.7)	-0.0445 -(13.1)	
	전체	0.3404 (100.0)			0.2648 (77.8)	0.0757 (22.2)	

〈표 2-3〉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의 고용형태별 분해

주:() ) 아은 연도별 노동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구성집단별로 다음과 같이 동태적으로 분해된다(Oxley et al., 1997).

$$\begin{split} &\Delta MLD = MLD^t - MLD^0 \\ &= \sum_g \overline{w_g} \cdot \Delta MLD_g + \sum_g \overline{w_g} \cdot \Delta \ln{[\frac{\overline{Y_0}}{Y_g}]} + \sum_g \overline{MLD_g} \Delta w_g + \sum_g \overline{[\ln{\frac{\overline{Y}}{Y_g}}]} \Delta w_g \\ &+ \sum_g \overline{w_g} \Delta [\ln{\frac{\overline{Y}}{Y_0}}] \end{split}$$

단, 
$$\overline{Y_0} = \sum_g w_g^0 Y_g^t$$
,  $\overline{Y} = \sum_g w_g^t Y_g^t$ 

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은 가구 유형별 구성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 단 내 불평등도의 변화, 둘째 항은 가구 유형별 구성비중을 유지한 상태 에서 하위집단 간 불평등도의 변화, 마지막 세 개의 항은 집단 내 불평등 과 집단 간 불평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구 유형의 구성비중 변화로 인한 불평등도의 변화이다.

< 포 2-4>는 지난 10년간 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를 고용형태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주된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지난 10년간 노동소득불평등의 증가에서 집단 내 불평등에 의한 순효과의 기여도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집단 간 상대소득의 변화도 불평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고용형태별 구성의 변화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킨요인으로 나타난다.

		집단 내	집단 간		
	MLD 변화	불평등의	불평등의	구성 효과	전 체
		순효과	순효과		
상용직		0.03552	-0.02360	0.04179	0.05371 (149.9)
임시일용직		0.02163	0.05064	-0.08566	-0.01339 -(37.4)
자영자		-0.01725	-0.00330	0.01607	-0.00448 -(12.5)
절대기여도	0.03583	0.03990	0.02373	-0.02780	0.03583 (100.0)
상대기여도	(100.0)	(111.4)	(66.2)	-(77.6)	

〈표 2-4〉취업자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고용형태별 분해

주:() ) 안은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에 대한 기여도임.

둘째, 집단 내 불평등 변화의 효과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내부 불평등 증가가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한편 임시일용직은 평균적인 상대임금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집단 간 불평등이 매우 큰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시일용직의 고용비중 감소가 전체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자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감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조사된 고용형태의 구성비중 변화와 비교할 때 임시일용직의 고용비중 감소가 과다하여,10) 임시일용직의 고용비중 감소로 인한 불평등 감소효과는 실제보다 크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 2. 고용률과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지난 2000~2011년 동안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 등이 함께 증가하였다. OECD(2013)에 따르면, 최상위 분위의 최저치와 최하위 분위의 최고치 간 비율인 D9/D1로 측정한 임금 불평등은 우리나라가 2011년 4.85로, 비교 대상 32개국의 평균 3.37에 비해 월등히 높아서

<sup>10)</sup>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64세 가구주와 배우자로 한정하여 유급 취업자의 구성비중을 보면, 임시일용직은 2000년 33.7%에서 2011년 26.1%로 하락하였으며, 상용직은 33.8%에서 47.7%로 증가하였다. 본 연구가 활용한 자료에서 임시일용 직의 감소폭과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불평등 #분위 #변화 1 0.5 -10 -10 -15 -1 --1.5 --2

[그림 2-6] 고용률과 임금불평등 변화의 국제비교(2001~2011년)

자료: OECD(2013), Employment Outlook 에서 작성.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가장 높은 나라에 해당한다. [그림 2-6]은 32개국의 지난 10년간 고용률과 임금 불평등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다. 고용률과임금불평등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나라마다 양상은 다르다. 고용률이 증가하면서임금 불평등이 감소한 나라가 6개국인 데비해고용률과임금 불평등이함께 증가한 나라는더 많은 10개국에이른다.우리나라는 고용률이 2.4% 증가하였지만,임금 불평등이가장 크게 증가한 나라라는 특징을 보인다.

Atkinson and Brandolini(2006)는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 등을 취업자의 임금 불평등 변화와 고용률의 변화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있다. u를 비고용률, e=(1-u)를 고용률,  $I_W$ 를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도로 정의하면,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도  $I=u+(1-u)I_W$ 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전체 지니계수는 비취업자의 노동소득을 0이라고 가정하고, 비고용률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고용률로 다시 표현하면,  $I=1-e+eI_W=1-(1-I_W)e$ 로 나타난다. 즉 전체 노동소득 불평등은 고용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취업자들의 임금 불평 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11)

이제 두 시기 간 지니계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Delta I \simeq e \Delta I_w$  —

	ı		
	2000	2011	변화
취업자의 지니계수	0.401	0.420	0.019
유급 고용률	0.637	0.720	0.082
개인의 지니계수	0.604	0.582	-0.022
임금효과			0.012
고용효과			-0.049
오차			0.015

〈표 2-5〉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64세)

 $(1-I_w)\Delta e$ . 첫째 항은 임금 불평등의 변화로 인한 '임금 효과'이며, 둘째 항은 고용률의 변화로 인한 '고용 효과'다.

이 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표 2-5>에 제시하였다. 비취업자를 포함한 개인 전체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00년 0.604에서 2011년 0.582로하락하였다.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 전체의노동소득 불평등이 하락한 것은 유급 취업 여부로 정의한 고용률이 크게증가하였기 때문이다.12)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용률 증가는 취업자의노동소득 불평등 증가의 영향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취업자의노동소득 불평등 증가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폭의 고용률증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된다.

# 3. 인구 고령화와 개인 노동소득의 불평등

인구 고령화가 노동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65세 이상 의 노인 인구를 추가할 경우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인의 노 동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sup>11)</sup> OECD(2011)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기간의 24개 OECD 국가들의 LIS 자료를 이용하여,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면, 고용률이 1% 증가할 경우생산연령인구의 지니계수가 0.65% 감소하며, 취업자의 지니계수 1% 증가는 생산연령인구의 지니계수를 0.61% 증가시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sup>12)</sup>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64세 가구주·배우자의 유급 고용률(무급가족종사자 제외)이 2000년 63.9%에서 2011년 68.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정 시점의 고용률이 아닌 지난 1년간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용률이므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증가폭은 과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6〉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과 고용률(15세 이상)

	2000	2011	변화
취업자의 지니계수	0.406	0.441	0.035
유급 고용률	0.603	0.654	0.050
개인의 지니계수	0.627	0.634	0.007
임금효과			0.021
고용효과			-0.030
오차			0.016

### 4.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 가.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추이

가구 노동소득은 개인의 노동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참여, 가구원 수 등의 영향을 받는다. <표 2-7>에서 가구 내 노동공급을 중심으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을 살펴보자. 취업한 가구주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2011년 0.423에 이르며, 200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가구주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않은 가구주를 포함한 전체 가구주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한편 취업한 배우자 표본에서노동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지만, 배우자의 고용률 증가에 의해 비취업자를 포함할 경우의 불평등은 200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가구주와배우자를 합한 표본에서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개인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소폭 증가하였다.

이제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을 합하여 가구 단위의 불평등을 보면, 개인의 노동소득 불평등에 비해 감소한다. 그러나 가구 단위로 전환할 때 불평등이 감소하는 정도는 200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개인 단위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가구 단

			2000	2011
	가구주	취업 지니계수	0.382	0.423
		유급 고용률	0.811	0.836
		전체 지니계수	0.490	0.518
개인	배우자	취업 지니계수	0.403	0.435
(15세		유급 고용률	0.313	0.391
이상)		전체 지니계수	0.780	0.778
	가구주+배우자	취업 지니계수	0.406	0.441
		유급 고용률	0.603	0.654
		전체 지니계수	0.627 (100.0)	0.634 (100.0)
	가구주, 배우자	지니계수	0.440 ( 70.1)	0.458 ( 72.3)
가구	가구주, 배우자, 가구원	지니계수	0.402 ( 64.2)	0.428 (67.5)
	균등 가구 노동소득	지니계수	0.389 ( 62.1)	0.413 (65.2)

〈표 2-7〉 단계별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 변화의 비교

주:( )안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개인 단위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을 100으로 하였을 때 상대 수준임.

위로 합한 불평등도의 상대수준은 2000년 70.1에서 2011년 72.3으로 높아 진 것이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불 평등 억제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더하였을 때, 소득불평등은 더욱 감소한다. 그러나 2000~2011년 동안의 감소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구 내 획득한 노동소득을 가구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하여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소득을 균등화하면,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다시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균등화한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2011년 0.413으로, 2000년의 0.389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나. 배우자의 취업과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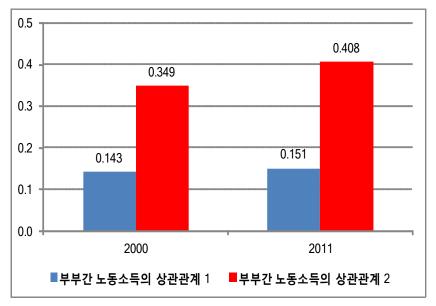
배우자의 취업이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의 결정은 가구주의 소득에 크게 의존하므로, 가구주의 취업 여부, 취업하였을 때 가구주 소득 분위에 따른 유배우자의 비중과 배우자가 있을 때의 취업률을 살펴보았다.

〈표 2-8〉 가구주 취업 여부·소득분위별 유배우자 비중 및 배우자의 취업률

가구주	가구주	유배우;	자 비중	배우자	취업률
취업여부	소득분위	2000	2011	2000	2011
비취업		0.483	0.461	0.177	0.156
취업		0.773	0.736	0.380	0.420
	1	0.534	0.476	0.467	0.362
	2	0.590	0.516	0.504	0.378
	3	0.640	0.582	0.480	0.434
	4	0.724	0.657	0.442	0.472
	5	0.778	0.747	0.452	0.480
	6	0.802	0.783	0.427	0.474
	7	0.851	0.842	0.377	0.463
	8	0.880	0.877	0.350	0.419
	9	0.932	0.893	0.284	0.403
	10	0.944	0.942	0.217	0.312

<표 2-8>을 보면,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에 비해 비취업 상태였을 때유배우자의 비중이 낮고 배우자의 취업률이 낮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1년에 더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가구주의 소득수준과 배우자의 취업률 간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였다. 2000년 배우자의 취업률은 가구주의소득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통해 가구소득을 보충함으로써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온 것이다. 반면 2011년에는 가구주의소득이 중간 분위인 경우에 배우자의 취업률이 높으며,하위 분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중간 분위 배우자의 취업이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의 소득분포에 따라 10분위를 매겨서, 가구주와 배우자 간 소득의 상관관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2-7]을 보면, 가구주와 동일한 소득 분위에 속한 배우자의 비중(상관관계 1)은 2000년 14.3%에서 2011년 15.1%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구주의 소득 분위와 동일하거나 인접한 소득 분위에 속한 배우자의 비중(상관관계 2)은 2010년 34.9%에서 2011년 40.8%로 더욱 증가하였다. 고소득 가구주 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동류 간 결혼(classmate)이 증가하면, 가구의 소득불평등 억제 효과는 더욱 약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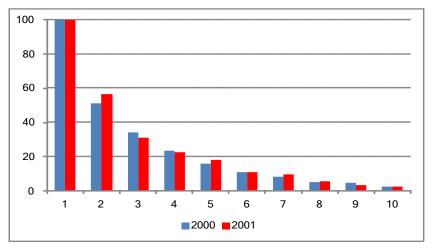
[그림 2-7] 일하는 부부간 노동소득의 상관관계

### 다. 다른 가구원의 취업과 가구 노동소득의 불평등

기타 가구원의 노동참여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을 보완하게 된다. 다른 가구원의 소득을 더하였을 때,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을 합한 가구 노동소득 불평등은 더욱 감소한다. [그림 2-8]에서 보듯이 가구주와 배우자의 노동소득을 합한 가구 노동소득 분위별로 나누어 보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기타 가구원의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분위별 기타 가구원 소득의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타 가구원의 취업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그다지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림 2-8]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소득 분위별 기타 가구원 노동소득이 가구 노동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 5.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

재분배정책이 개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민간이 획득하는 소득은 시장소득이다. 시장소득은 노동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표 2-9>는 소득원별 불평등도와 시장소득 대비 구성비중을 보여준다. 재산소득은 고소득자에게 편중되어 불평등 수준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집중 지니계수는 2000년 0.870에서 2011년 0.933으로 증가하였다. 한편사적 이전소득은 저소득 가구에서 집중되어 있어서 불평등 수준이 높게나타나는데. 집중 지니계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소득원천을 더하여 지니계수를 구하여 비교해 보면, 노동소득에 재산 소득을 추가할 경우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한다. 재산소득의 집중 지니계 수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장소득에 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사적 이전소득을 추가하면 가구 시장소득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하는데, 하락폭은 크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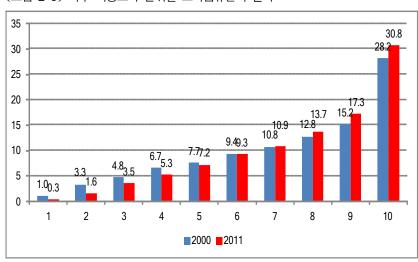
요약하자면, 재산소득과 사적 이전소득은 구성비중의 하락에 따라 가 구 간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20	00	2011	
	지니계수	비중	지니계수	비중
노동소득	0.389	0.902	0.413	0.943
재산소득	0.870	0.056	0.933	0.040
사적 이전소득	0.924	0.042	0.940	0.018
노동소득	0.389		0.413	
재산소득	0.381		0.409	
사적 이전소득	0.355		0.393	

〈표 2-9〉 단계별 가구 시장소득 불평등의 변화 비교

서 획득한 소득의 불평등 증가와 구성비중의 증가에 따라 시장소득의 불평등은 2000년 0.355에서 2011년 0.393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9]에서 전체 가구의 시장소득 10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0~2011년에 걸쳐 6분위까지 시장소득 점유율은 하락하 고 상위 7분위 이상은 증가하였다. 상위 분위일수록 소득점유율의 증가폭 이 크게 나타난다.



[그림 2-9] 가구 시장소득 분위별 소득점유율의 변화

주:1) 각 원천별 소득을 가구규모별로 균등화함.

<sup>2)</sup> 비중은 가구 시장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임.

### 6.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민간부문에서 획득한 시장소득에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에 의한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고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가처분소득이다. <표 2-10>에서 단계별로 소득원천을 더하여 지니계수를 구하여비교해 보면, 시장소득에 공적 이전소득을 더하면 불평등도는 하락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의 감소폭은 2000년 0.9p에서 2011년 2.4p로 확대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사회보장제도가확충된 영향이 크다. 한편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를 추가하였을 때 감소폭은 큰 변화가 없다.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와 사회보험료의 인상에 따라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증가하였지만, 동일한 보험료율을 부과하기 때문에불평등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커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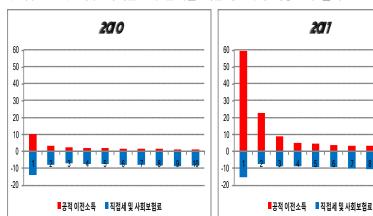
⟨ ∓	2-10	다게변	기구	가처분소득	보펴드이	벼하 비교
\	/ 10//	7 17 11 =	<i>-</i>		3000	

	20	2000		11
	지니계수	비중	지니계수	비중
시장소득	0.355	1.068	0.393	1.070
공적 이전소득	0.956	0.018	0.878	0.042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0.523	-0.086	0.531	-0.111
시장소득	0.355		0.393	
공적 이전소득	0.346		0.369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	0.343		0.361	

주:1) 각 원천별 소득을 가구규모별로 균등화함.

2) 비중은 가구 가처분소득에서 각 소득원천이 차지하는 비중임.

<sup>13)</sup> 가처분소득의 지니계수가 [그림 2-2]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개인별 고용 및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복지부문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 이다.



[그림 2-10] 가구 가처분소득 분위별 재분배정책의 시장소득 변화율

[그림 2-10]을 통해, 가구 가처분소득을 10분위로 나누어 공적 이전소 득과 직접세·사회보험료가 가구 시장소득에 미치는 변화를 통해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재분배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하위 1분위에서 44.3%, 2분위에서 15.6%를 기록하여 저소득 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둘째, 직접세 및 사회보험료는 모든 분위에서 가구 시장소득을 감소시키며, 오히려 저소득 분위에서 시장소득의 감소률이 크게 나타나 역진적인 현상을 보인다. 셋째, 공적 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2010년에 미미하였으나, 2011년 들어 저소득 가구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 7. 종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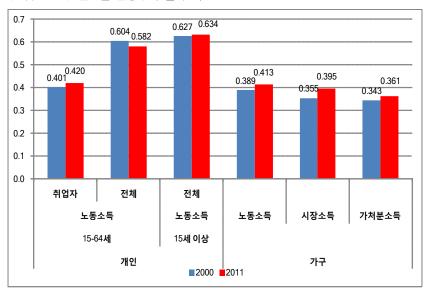
소득불평등의 영향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불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그림 2-11]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노동시장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하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질 노동소득이 하락하고 상위 노동소득 분위의 실질 노동소득이 크게 증가하여, 취업자의 개인별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분석 자료에서 고용형태의 구성 변화가 과다하여 실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집단 내불평등의 증가가 전체 불평등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결과는 노동

소득 자체의 불평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노동의 가격인 임금률의 불평등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다. 성별 로는 노동소득 불평등을 유발한 요인들의 차이가 있는데, 남성은 임금률 의 불평등이 가장 주된 요인인 반면 여성은 시간당 소득뿐만 아니라 근무 기간과 노동시간의 차이도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였다.

둘째, 취업자에 비취업자를 포함하면, 노동소득의 불평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고용률 증가에 따라 비취업자를 포함 한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고용 률의 증가폭이 다른 조사에 비해 과다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률 증 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증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석결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큰 폭의 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연령인구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 소 효과가 작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65세 이상을 추가할 경우 불평등 수준의 증가폭은 2011년 들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11] 단계별 불평등의 변화 비교

주: 개인의 전체는 취업자와 비취업자를 합한 것임.

넷째, 가구(가족)는 소득의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생계를 같이 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감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구주의 노동소득이 중상위인 분위에서 배우자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부부간 노동소득 간 양의 상관관계가 높아짐에 따라 가구(가족)의 노동소득 불평등 감소 효과는 약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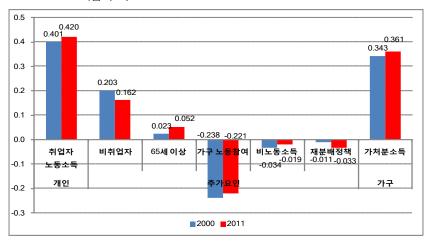
다섯째,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비노동소득은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노동시장 소득 자체의 불평등 증가에 따라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였다.

여섯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가구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보이지만,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커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 는 증가하였다.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으로 확대하기까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 및 소득원천을 추가하였을 때 불평등 수준의 변화폭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그림 2-12]에 제시하였다. 주된 특징을 보면 첫째, 취업자의 노동소득에 미취업자를 포함할경우 불평등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증가폭은 하락하였는데, 고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하였을 때 불평등 수준은 증가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최근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셋째,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은 가구 단위로 통합할 때 소득 공유와 가구별 노동공급을 통해 불평등 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감소폭은최근 들어 하락하여, 가구의 불평등 억제 효과가 약화되었다고 평가된다. 넷째,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등 비노동소득은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들어 비노동소득 비중의 감소에 따라 감소폭은하락하였다. 다섯째, 재분배정책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최근 들어 증가하였다.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에 추가된 요인들의 불평등 변화 효과는 각각 다르지만, 다섯 가지 요인들의 효과를 합하면 2000년 -0.058, 2011년 -0.059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증가한 것은 개인 취업자의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12] 개인 노동소득 불평등에서 가구 가처분소득 불평등으로의 전이 메커 니즘의 비교



# 제5절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료와 가구 단위의 소득 자료의 결합자료를 처음으로 구성하여, 지난 2000년대 소득불평등 증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인 단위의 노동소득 불평등으로부터 가구 단위의 소득불평등으로 분석 단위를 확대하면서 소득불평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가구 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노동시장에서 노동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요인별 영향을 보면, 고용률증가와 재분배정책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인구 고령화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가구(가족)가 소득불평등 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이 줄어들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연이은 대침체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Reich(2010)에 따르면, 불평등 확대에 저소득층은 우선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거나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면서 자 구적으로 대응하며, 이마저 한계에 부딪히면 저축을 줄이고 가계 부채를 늘리게 된다. 그러나 부채 거품이 터져버리자 경제위기와 생활수준의 급 격한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임금 불평등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구 시장소득이 평등하게 나 타난 까닭은 저소득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임금 불평등을 상쇄하였기 때문이지만(장지연ㆍ이병희, 2013), 2000년대 들어 중상위 소득가구에서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가구의 불평등 억제 효과는 약화되었다. 또한 근로시간의 추가적인 증가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또는 가구 단위에서의 자구적인 대응으로 불평등 억 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계 부채의 증가를 통한 생활수준의 유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분배정책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불평등 억제가 남은 길일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가구 소득불평등 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분배정책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지만, 노동시장 불평등을 방치하면서 재분배정책이 불평등을 줄 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소득 불평등을 상쇄하는 방법 중의 하나 가 고용률의 증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이듯이. 고용률의 증가를 통해 노동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불평등을 유 발하는 고용 창출로는 고용률을 높이기도 어려울 것이다(이병희, 2013). 결국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격차를 억제하는 정책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장

# 노동소득분배의 추이와 영향

# 제1절 문제의식

이 장에서는 기능적 소득분배(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의 추이를 검토한다. 기능적 소득분배란 부가가치가 생산요소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를 말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보상으로 정의된다.

외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반면, 한국에서는 연구가 매우 적다. 배진한(1989)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론을 교섭력이론, 독점력이론, 신고전파 수요공급 이론, 개발도상국 이론으로 나누어 각 이론을 검증하였다. 홍민기(2011)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경기변동성을 분석하였는데,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경기에 순행한다고 하였다. 홍장표(2013)는 1991~2009년 한국 제조업 18개 산업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제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고 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문제를 홍민기(2011)에서 다룬 바 있으나, 간략 하게만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여러 가지 보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측정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경제주체별 소득분배 과 정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국민계정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즉 '개인영업잉여')을 이윤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이란 자영업자의 소득 중 얼마만 큼을 노동소득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어떻게 보정을 하든 외환 위기 이후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가를 모형이나 통계적 방법으로 검토하기 이전에 경제주체별로 나누어서 소득의 추이를 살피면 몇 가지 가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경제주체별 소득 추이는 제2절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비금융법인기업과 가계의 소득원천과 지출내역을 좀 더자세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의 변화, 투자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조세구조의 변동이 기업소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관계를 살핀다. 기업/개인소득의 구분은 경제주체 간 분배에 주목을 하는 방식으로, 기능적 소득분배에서 배당의 처리만 달라진다. 기업/개인소득은 기능적소득분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념임을 살핀다.

# 제2절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 1.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한 측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 보상의 비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를 부가가치로 나눈 값으로정의된다.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과정은정의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어서, 피용자보수와 부가가치의 개념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항목을 찾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하에서는 국민계정 자

〈표 3-1〉 피용자보수의 구성

	임금 및 급여	현금 임금 및 급여
회 Q 키 H 스	<u>10 × 19</u>	현물 임금 및 급여
피용자보수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실제사회부담금
	(사회보험 고용주 부담금)	귀속사회부담금

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국민계정 자료에 대한 설명은 한국은행(2010)을 참고하였다.

피용자보수(compensation of employees)에는 일정기간 동안 피고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급여와 피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연금기금 및 보험에 납부한 고용주 분담금이 포함된다(즉, 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은 사회보험 고용주 부담금이라고도 한다.14)

부가가치(value added)는 생산활동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말하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중간소비)을 차감하여 구한다. 부가가치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순생산 및 수입세(=생산 및 수입세-보조금)로 구성된다. 이 중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 부가가치는 각 경제주체(혹은 제도단위)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빼면 순부가가치가 된다.

부가가치의 구성항목 중 '순생산 및 수입세'는 '생산 및 수입세'에서 보조금을 뺀 것이다. '생산 및 수입세(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관세 등이 있다. 예전에는 생산 및 수입세를 간접세라고 하였다. 반면 국민계정에서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라고 부르는 직접세는 사람이나 기업에 붙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보조금'은 산업진 흥 및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생산자의 생산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적자보전과 석

<sup>14)</sup> 고용주 부담 사회부담금에는 실제사회부담금과 귀속사회부담금이 있다. 실제사 회부담금과 귀속사회부담금은 피용자보수로 받은 것처럼 의제 처리한 후 가계가 동 사회보장기구나 고용주에게 경상이전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부가가치에 간접세를 포함하여야 하는가? 간접세는 재산소유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부가가치세는 상품구매자가 부담하므로 이윤에 속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구매자는 노동에 대한 기여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노동에 대한 대가도 아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때에는 간접세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와 간접세(즉, 순생산 및 수입세)를 빼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이 된다(표 3-2 참조). 소득계정 항목에서 보면,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를 뺀 것이다.

따라서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할 경우 총부 가가치에서 순생산 및 수입세와 고정자본소모액을 뺀 값을 분모로 하여 야 한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은 피용자보수를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나 눈 값으로 계산한다

계산: 노동소득분배율 = 피용자보수 / 요소비용 국민소득

〈표 3-2〉 부가가치와 국민소득의 관계

계정명	항목								
총산출 (Gross Output)		중간투입							
국내총생산(GDP)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및수 입세	고정자본소모					
국민총소득(GNI)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및수 입세	고정자본소모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민순소득(NNI) =시장가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및수 입세						
국민처분가능소득 (NDI)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순생산및수 입세		국외순수취 경상이전				
국민소득(NI) =요소비용국민소득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 2. 경제주체별 소득

총부가가치 중 고정자본소모는 자본축적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나머지 순부가가치는 각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분배된다. 국민계정에서 경제주체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가계 등 5개 제도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3 참조).

비금융법인기업은 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생산에 종사하는 법인기업, 대규모 비법인기업, 준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준법인기업이란 법적형태로는 법인기업이 아니지만 법인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회계보고를 하는 대규모 개인기업과, 통신·조달·양곡관리 특별회계 등 규모가 큰 정부기업을 가리키다.

〈표 3-3〉 경제주체의 분류

경제주체	하위 범주					
비금융법인 (=일반기업)	민간법인기업, 공법인 대규모 비법인기업 준법인기업: 대규모 개인기업, 규모가 큰 정부기업					
금융법인	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기타금융중개기관: 증권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금융보조기관					
일반정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예:연구기관)					
가계에 봉사하는 비 영리단체	노동조합, 전문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종교단체, 자선구 호단체					
가계	일반가계 가계비법인기업(자영업자) 자급농가					
국외부문						

금융법인은 금융중개활동 또는 보조적 금융활동을 하는 법인기업 또는 준법인기업을 의미한다. 맥락상 의미전달에 혼란이 없다면 이 장에서는 '비금융법인기업'을 지칭할 때 '금융을 제외한 일반법인기업' 혹은 '일반기 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법인'은 금융기업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포함된다. 일반정부의 활동목적은 이윤의 추구가 아니다. 따라서 일 반정부는 영업잉여를 갖지 않는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교육·종교·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 전문직능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종교단체, 자선구호단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는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 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계'(혹은 개인)에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통상적인 가계와 더불어 '가계 비법인기업'(즉, 소규모 자영업자), 자급농가가 포함된다. 가계 비법인기업의 소유주, 즉 소규모 자영업자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과 노동을 투입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 비법인기업의 소득에는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가 섞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의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가계 비법인기업의소득을 혼합소득(mixed income)으로 부르고 있다(한국은행, 2010:61). 하지만 현재 한국의 국민계정에서는 가계 비법인기업의소득을 모두 영업 잉여로 처리하고 있다.

< 표 3-4>는 2008년 경제주체별 소득계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제시된 경제주체별 소득계정은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을 요약한 것이다. 공표된 자료에서는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가계' 부문에 포함되어서,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개인 등 4개 국내부문과 국외부문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경제주체별 소득은 크게 피용자보수, 영업이여, 재산소득의 합이다. 재산소득(property income)은 금융자산을 공급하거나 혹은 유형 비생산자산(주로 토지)을 빌려준 대가로 받은 소득이다. 재산소득은 이자, 법인기업의 분배소득(배당 및 준법인기업 소득의 인출15), 임료로 구분된다.

2008년 국민소득 계정을 보면, 재산소득은 국내 경제주체 간의 거래를 통해 소득수취와 지불이 거의 해소된다. 예를 들어 비금융법인기업에서는 순배당금(=배당금 지출-배당금 수입) 지불이 46.7조 원인데, 개인과일반정부의 순배당금 수취가 각각 44.4조 원, 1.5조 원으로, 경제주체 간배당금 지불과 수취를 합치면 국내 경제주체 간에는 1.4조 원의 지불이남는다. 이자나 배당금 등 나머지 재산소득도 경제주체 간 거래를 모두환산하면 국내 경제주체의 소득으로 남는 것은 매우 적다.

2008년 국민소득계정에서 피용자보수는 474.7조 원이다. 영업잉여는 비금융법인기업 153.1조 원, 금융법인기업 34.1조 원, 개인영업잉여 108.1조 원을 합쳐 모두 295.4조 원이다. 재산소득까지 합친 전체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778조 원이므로, 피용자보수를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나눈 노동소득분배율은 0.61이다. 이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현재한국은행의 방식이다.

#### 〈표 3-4〉 2008년 국민소득 계정

(단위:조 원)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 기업	일반 정부	개인 (개인기업 포함)	전 체			
	피용자보수				474.7	474.7			
	영업잉여	153.1	34.1		108.1	295.4			
	이자	-5.7	0.8	13.5	0.8	9.3			
	배당금 등	-46.7	-0.6	1.5	44.4	-1.4			
수	임료	-2.5	-0.1	0.2	2.4	0.0			
취	요소비용 국민소득	98.2	34.2	15.2	630.4	778.0			
	순생산 및 수입세			120.3		120.3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기타경상이전	-37.3	-6.0	95.6	-52.5	-0.2			
	국민처분가능소득	60.9	28.2	231.1	577.9	898.1			
지	소비			156.9	561.6	718.6			
불	저축	60.9	27.6	74.2	16.8	179.5			

주: 배당금 등은 '법인기업 분배소득'을 가리킴.

<sup>15)</sup> 대규모 개인기업(즉, 준법인기업)을 운영하여 1,000만 원의 기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600만 원을 기업주가 가계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자. 국민계정에서는 이 600만 원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준법인기업 소득의 인출'이라고 한다. 준법인기업 소득의 인출은 가계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개인영업잉여' 항목이며, 이 개인영 업잉여는 국민계정상에서는 이윤으로 처리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이란 개인영업잉여 중 노동소득분을 환산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 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룬다.

요소비용 국민소득에 순생산 및 수입세(즉, 간접세)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즉, 직접세)와 기타경상이전을 합하면 국민처분가능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2008년에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영업잉여로 153.1조 원을 벌었고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98.2조 원이다. 여기에 직접세와 기타경상이전으로 37.3조 원을 지불하여 순처분가능소득은 60.9조원이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처분가능소득은 곧 기업의 저축이 되며, 이는기업의 내부유보금에 해당한다.

개인부문의 요소비용 국민소득은 피용자보수, 개인영업잉여, 재산소득을 합쳐 총 630.4조 원이고, 여기에 직접세(47.2조 원)와 순경상이전<sup>16)</sup>(5.2조 원)을 빼면 처분가능소득 577.9조 원이 된다. 지출항목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중 561.6조 원은 소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6.8조 원은 저축되었다. 그러므로 2008년 개인부문의 저축률은 2.9%(=16.8/577.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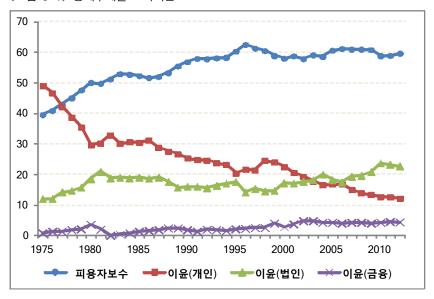
경제주체별 소득의 추세가 [그림 3-1]에 나와 있다. 이 그림에서는 각항목을 요소비용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다. 피용자보수의비중은 1975년 39.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7년 61.4%까지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영업잉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21.0%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4.2%까지 감소하였다. 일반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00년대에 17~20%대를 유지하다가 2010년에는 23.7%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지난약 40여 년 동안 최고 수준이다.

금융법인의 영업잉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약 2% 정도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여 2010년 4.6%에 이르렀다. 비금융법인기업의 영업잉여와 금융법인의 영업잉여를 합한 기업 영업잉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초반에는 18% 수준이

<sup>16)</sup> 순경상이전=사회수혜금+기타경상이전(원천)-사회부담금-기타경상이전(지출).

[그림 3-1] 경제주체별 소득비율



었다가 2010년에는 28%까지 상승하였다.

개인영업잉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75년 49.2%에서 외환위기 직전에는 20% 수준에 이르렀다. 개인영업잉 여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약간 상승하였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하락하여 2012년 12.3%까지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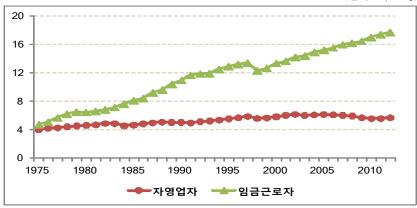
개인영업이여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하락한 것과 1인당 평균개인영업이여가 감소한 것이 모두 작용하였다. [그림 3-2]에서 보여주듯이, 임금근로자 수는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의 수는 큰 변동이 없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까지 자영업자 1인당 개인영업잉여는 1인당 피용자보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고 이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2년 현재 개인영업잉여 평균은 피용자보수 평균의 63.5%에 불과하다.

[그림 3-3]에서 보듯이, 개인영업잉여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이유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달라진다. 외환위기 전에는 취업자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하락하였기 때문이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이와 더

[그림 3-2]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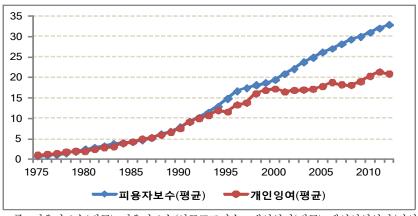
(단위: 백만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3] 임금근로자 평균보수와 평균 개인잉여(명목)

(단위: 백만 원)



주: 피용자보수(평균)=피용자보수/임금근로자수. 개인잉여(평균)=개인영업잉여/비임 금근로자수.

불어 자영업자 평균소득 하락이 함께 작용을 하였다.

영업 이 역 의용자보수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외환위기 전까지 조금씩 상승하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증가 추세를 멈추고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② 기업(비금융법인기업+금융법인기업) 영업이여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

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대 초반에는 지난 40년 동안의 최고수준인 28%까지 이르렀다. ③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영업이 영세화되면서, 개인영업잉 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요약하면 피용자보수 비중은 정체, 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 개인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3. 노동소득분배율의 보정

피용자보수를 E, 부가가치를 V라고 하면 노동소득분배율 l은 E/V로 정의된다. 그리고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의 보수 W와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S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부분 F로 나누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 \frac{E}{V} = \frac{W + F}{V}$$

국민계정 자료를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소득(S)도 알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중 피용자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정한 가정을 통해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을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Gollin, 2002; Krueger, 1999; Glyn, 2009 등 참조). 이하에서는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한국은행 방식] 먼저 국민계정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이윤으로 간주한다. 즉 F=0이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한국은행 방식'이다.

[보정 1]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l_s$ 라고 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F=l_sS$ 가 되고,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 \frac{W + l_s S}{V}$$

여기서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 즉  $l=l_s$ 라고 가정하면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에서 개인영업잉여를 뺀 값을 분모로 하여 계산된다.

$$l = \frac{W}{V - S}$$

이러한 방법을 '보정1'이라고 부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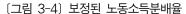
[보정 2] 다음의 방법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즉 '보정 2'의 방법은 F = S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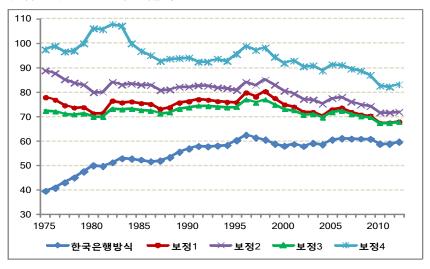
[보정 3] 미국에서 Johnson(1954) 이후 사용된 전통적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영업자 소득 중 2/3를 노동소득으로, 1/3을 자본소득으로 간 주한다. 이 방법을 '보정 3'이라고 하자.

[보정 4] 또 다른 방법은 자영업자의 임금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소 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합이라고 보면, 이 방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임금소득이 평균적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과 같다고 가정하는 것이다(Gollin, 2002).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여러 가지 보정방식으로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가 [그림 3-4]에 나와 있다. 자영업자의 임금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과 같다고 가정하는 '보정 4'의 방법을 적용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100%가 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Glyn(2009)이 지적한 바 있다. '보정 4'의 방법은 자영업자가 영세하여 자영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을 경우 실제 노동소득분배율을 과대 측정한다.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자의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이 방법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를 왜곡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환산하는 '보정 2'의 방법으로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을 상한값이라고 볼 수 있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모두 이윤으로 환산하는 '한국은행방식'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한값이라고 볼 수 있다. '보정 1'과 '보정 3'은 상한과 하한 사이에 있고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보정 1'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는데, 자영업자가 점점 영세해지 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우 단순하고 주먹구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중 2/3를 노동소득으로 간 주하는 전통적 방식 '보정 3'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방식으로 계산된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후 60%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 반면 어떤 가정에 의해서이든 자영업자의 소득중 일부를 피용자보수로 보정을 한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과 같다고 가정하여계산한 '보정 1'의 경우, 1998년 노동소득분배율이 80.4%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0년 67.5%까지 하락하였다. '보정 3'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77.0%에서 67.4%로 하락하였다.

보정한 국민소득분배율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피용자보수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비중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소득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중일부를 피용자보수로 보정을 하면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것은 적어도 OECD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1970년대 이후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가한 반면, 유럽대륙 국가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 다. 1990년대 이후에는 OECD 30개국 가운데 26개국에서 노동소득분배율 이 하락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기술변화, 개방(무역, 국제화), 산업 구조 변화, 노동자 교섭력의 약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각각의 요인에 대 해 검토하는 것을 이 연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그림 3-1]에서 나타난 경 향을 보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홍민기의 연구(2013)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의 변화,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은 산업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산업으로의 이동이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의 쇠퇴가 크게 작용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외환위기 이후에는 고용구조의 변화, 즉 자영업자의 쇠락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다. 특히 도소매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규모가 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쇠퇴한 것이 노동소득분배율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지난 20년간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것은 제조업이다. 그런데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정체되고 있다. 성장 산업 부문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니 서비스업으로 취업이 몰리게 되었다. 일정 정도의 학력과 숙련을 가진 사람들은 금융업, 교육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여 괜찮은 소득을 얻지만, 생계를 위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은 음식업이나 소매업처럼 진입장벽이 낮은 부문으로 갈 수밖

에 없다. 여기서는 과도한 경쟁상태에 놓여 높은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큰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쇠퇴는 자본주 의 발전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한국에서는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현상 과 맞물려 쇠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노동소득분배율 하 락으로 반영되고 있다.

#### 4. 노동소득 최상위의 분배율

노동소득의 최상위 1%의 노동소득을  $W^1$ 이라고 하고, 하위 99%의 노동소득을  $W^{99}$ 라고 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 $1\%~W^1$	이윤 <i>Y</i>
노동소득 99% $W^{99}$	্ <sub>। ন্দ</sub> ্র

$$\frac{W}{Y} = \frac{W^1 + W^{99}}{Y} = \frac{W^1}{Y} + \frac{W^{99}}{Y}$$

식에서  $W^1/Y$ 는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 상위 1%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조건부 비율의 곱으로 표현된다.

$$\frac{W^1}{Y} = \frac{W^1}{W} \frac{W}{Y}$$

즉 노동소득 상위 1% 집단의 소득비중은 노동소득 중 1%의 노동소득 비중에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을 곱한 것이다. 노동소득 상위 1% 집단의 노동소득 비중  $W^1/W$ 는 김낙년(2012b)의 연구에서 그 값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노동소득 상위 1%와 하위 99%의 소득비중을 그린 것이 [그림 3-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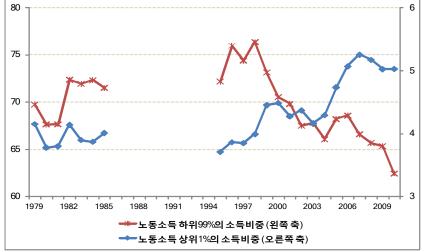
전체소득에서 노동소득 하위 99%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하락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소득 하위집단의 소득비중이줄어들고 그만큼 이윤의 비중이 늘었다.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은

크게 늘지 않았다. 즉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근로자 집단 내 불평등보다는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과 더불어 근로자 집단 내 불평등도 늘어났다. 이윤의 비중과 노동소득 상위 1%의 소득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노동소득 하위집단의 소득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로부 터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근로자 집단 내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2005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노동소득이 낮은 집단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정체하였기 때문이다. 최상위 노동소득 계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표 3-5 참조).

80

[그림 3-5] 노동소득 하위 99%와 상위 1%의 소득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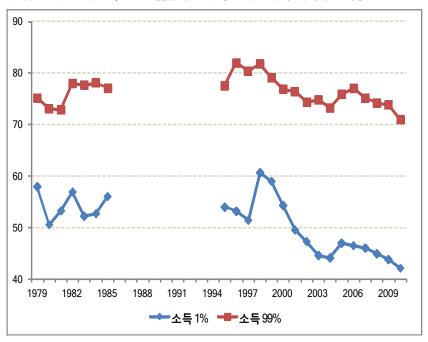


#### (표 3-5)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

(단위:%)

	전체	노동소득 상위 1% 집단의 소득비중	노동소득 하위 99% 집단의 소득비중
1995~1997 평균	78.0	3.8	74.2
2008~2010 평균	69.6	5.1	64.5
증가율	-10.8	33.3	-13.0

[그림 3-6] 소득 1%, 99% 집단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최상위 소득 중 노동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일하는 부자(working rich)로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였다. 일하는 부자는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로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최상위소득 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다시 확연히 커지면서 자본소득 수취를 주된수입원으로 삼는 고전적 자본가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Atkinson, Piketty, and Saez, 2011: 53~54).

전체소득 상위 1% 집단과 99% 집단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추세를 그린 것이 [그림 3-6]에 나와 있다. 노동소득이 아닌 것은 자본소득이다.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 집단의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노동소득 1%의 소득비중  $W^1/W$ , 경제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W/Y, 소득 1%의 소득비중  $Y^1/Y$ 의 역수의 곱으로 표현된다.

$$\frac{W^1}{Y^1} = \frac{W^1}{W} \frac{W}{Y} \frac{Y}{Y^1}$$

 $Y^1/Y$ 의 값은 김낙년(2012a)에서,  $W^1/W$ 의 값은 김낙년(2012b)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양 집단에서 모두 하락하고 있다. 특히 소득 상위 1%의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 하는 비중이 더 크게 하락하였다.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중에서 자본소득 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 제3절 경제주체별 소득계정

여기서는 가계와 기업의 소득원천과 사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소득항목 비중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경제환경, 제도, 주체의 행동변화를 알 수 있다.

### 1.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

가계부문의 소득은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자본소득(배당<sup>17)</sup>, 이자, 임료)로 구성된다. 세전소득에서 경상세를 빼고 여러 가지 보조금을 더하면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2008년 계정이 <표 3-6>에 나와 있다.

[그림 3-7]에서는 순본원소득잔액을 분모로 하여 각 소득 및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1975년부터 나타낸 것이다.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였는데, 가계부문에서 경상세 부담은 2000년대 이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상승하였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다.

<sup>17) &#</sup>x27;준법인기업소득인출'은 규모가 큰 기업의 소유주가 취득한 소득이다. 현재 국민 계정에서는 이를 모두 개인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액수를 보면 배당금의 두 배에 달해서 개인 재산소득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기업 소유주가 취득한 소득이 모두 개인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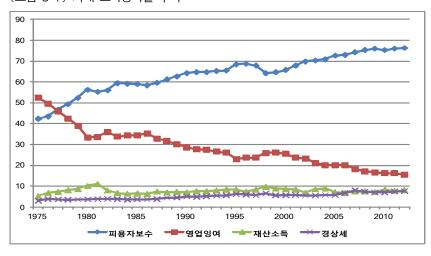
추세로 보아 가장 큰 특징은 개인영업잉여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피용자보수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3-6〉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계정(2008년)

(단위:조원)

	원천(+)	사용(-)	계정
피용자보수	474.7		474.7
임금 및 급여	415.3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59.4		
영업잉여	108.1		108.1
법인기업분배소득	44.4		44.4
배당금	15.1		
준법인기업소득인출	29.2		
이자	44.4	43.6	0.8
임료	3.1	0.7	2.4
순본원소득잔액/NNI			630.4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47.2	
사회수혜금	73.2		
(비기금형수혜, 사회보장, 부조 등)	13.4		
사회부담금		101.3	
(고용주, 피용자, 자영자의 부담금 등)		101.5	
기타경상이전	72.5	49.7	
순처분가능소득/NDI			577.9

#### [그림 3-7] 가계 소득항목별 추이



#### 2. 금융을 제외한 일반기업

< 표 3-7>에서는 2008년 (금융을 제외한) 기업의 계정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기업들은 153조 원의 영업잉여를 벌어들였다. 이자수입 31조원과 이자지출 36.8조 원을 합치면 순이자지출은 5.7조 원이다. 배당금지출은 46.7조 원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준법인기업소득인출이다. 즉 규모가 큰 비법인기업에서 자기소득으로 가져간 것이다. 영업잉여에서 이자, 배당, 임료 지출을 빼면 순본원소득잔액은 98.3조 원이고 30조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2008년 영업잉여 중 세금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19.6%이다. 나머지가 기업저축이 된다. 기업저축은 기업 내부유보금이다. 간단히 정리해 영업잉여는 배당, 이자, 임료, 세금, 저축으로 나뉜다.

영업잉여 = 배당 + 기업저축(유보) + 이자 + 임료 + 세금

#### 〈표 3-7〉 비금융법인기업의 계정(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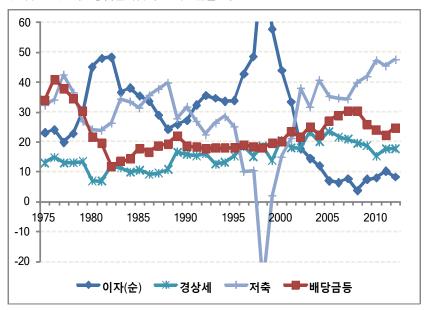
(단위:조 원)

	원천(+)	사용(-)	계정
영업잉여	153.1		+153.1
이자	31.1	36.8	-5.7
법인기업분배소득	9.0	55.6	-46.7
배당금	9.0	26.4	
준법인기업소득인출		29.2	
임료	0.4	2.8	-2.5
순본원소득잔액			98.3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30.0	-30.0
기타경상이전	12.8	20.1	-7.3
순처분가능소득(=기업저축=유보)			60.9

[그림 3-8]에서는 1975년 이후 비금융법인기업의 소득원천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배당, 저축, 이자, 세금을 영업잉여로 나눈 값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외환위기 이후 이자지불이 감소하고 사내유보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자지불이 감소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들이 차입자금에 의존하여 중복, 과잉투자를 하면서 외환위기 직전 부채비율이 400%까지 치솟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부채비율이 급략하였고 최근에는 부채비율이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즉 기업들이 외환위기 이후에는 차입자금에 의존하기보다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상조, 2012: 141). 기업이 자금조달방식이 변화하고 재무구조가 안정화하면서 이자지불이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차입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3-8) 비금융법인기업의 소득원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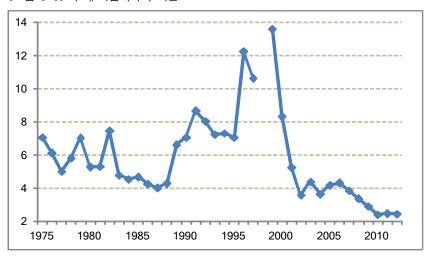
영업이익 대비 세금의 비중은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실 효세율이 23.5%에 이르렀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15.3% 까지 떨어졌다.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영업이익 중 배당으로 지출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약간 감소하였다.

영업이익 중 이자지불로 나가는 돈이 급격히 줄어들고, 세금 지불이 감소하면서 2005년 이후 사내유보가 급증하였다. 영업이익 중 사내유보로 남아 있는 비중은 2010년대에 약 45%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00조 원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여 보면 2000년대 들어 대기업의 차입금의존도가 중소기업보다 더 낮아졌다(김상조, 2012: 144). 대기업의 차입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자지불이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 대기업이 높은 이윤율을 기록하면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삼성계열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은 2010년 현재 약 21조 원인데, 법인세 실효세율은 12.6%이고, 사내유보 금액은 19.5조 원으로 영업이익의 79%를 사내유보로 남겼다. 삼성의 사내유보 금액은 경제전체 사내유보 금액의 20%를 넘는다.

기업들의 내부유보는 늘어났지만 투자는 늘지 않았다. 외환위기 직전에는 차입금에 의존하면서 투자/기업저축의 비율이 1,200%까지 증가하였다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이 비율이 급락하였다.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투자/기업저축의 비율이 400%를 유지하였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200%까지 떨어졌다(그림 3-9 참조).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곧 이윤몫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윤몫이 증가하면 투자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면서도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에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모두 2% 미만의 증가율을 보였고, 2011년부터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전체투자가 감소하기도 하였다(표 3-8 참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투자 부진을 두고 내수 침체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투자 부진의 원인을 좀 더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투자/기업저축의 비율



〈표 3-8〉 투자 연평균 증가율(실질)

(단위:%)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 투자
1970	5.9	4.5	7.8	6.0
1980	5.3	5.2	5.2	8.4
1990	2.1	1.3	2.8	7.0
2000	1.1	0.9	1.5	2.0
2011~2012	-0.6	-1.5	0.4	2.5

### 3.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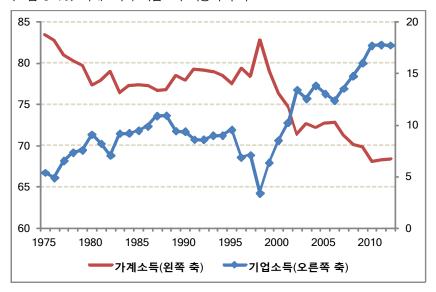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으로 전체소득의 배분을 보는 것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대신, 가계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강두용·이상호, 2012). 가계소득/기업소득으로 소득을 나누었을 때 노동소득/자본소득의 구분과 달라지는 소득 항목은 배당이다.

가계소득은 피용자보수와 개인영업잉여에 배당, 이자, 임료 등 가계가 벌어들인 재산소득을 합한 것이다. 반면 기업소득은 영업잉여에서 배당

<i>√</i> ∓	3-0/	가계/기업소득과 이유/임금 관계	
\ \	.) .7/	701/7101195017766 501	

		임금	
기업소득	유보(저축)		
가계소득	재산소득(배당, 이자)	자영업자의 영업잉여	피용자보수

[그림 3-10]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의 추이



등 재산소득지출을 뺀 것이다. 가계/기업소득과 이윤/임금의 관계가 <표 3-9>에 정리되어 있다.

국내순본원소득잔액, 즉 세전총소득에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림 3-10]에 나와 있다. 가계소득의 비중은 1990년대 말 80% 수준까지 올랐다가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10년에는 68.1%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9% 정도였다가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여 2010년에는 17.7%까지 증가하였다.

시기별로 명목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을 <표 3-10>에 정리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피용자보수는 기업소득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표 3-10〉 가계 및 기업소득의 시기별 연평균 증가율(명목)

(단위:%)

	비금융 법인 소득	금융 법인 소득	피용자 보수 (1)	영업 잉여 (2)	재산 소득 (3)	가계 소득 (1)+(2)+(3)	국내 소득
1975~1984	12.7	13.3	11.3	7.3	10.6	9.5	9.9
$1985 \sim 1994$	6.8	7.2	7.8	5.8	8.5	7.2	7.1
1995~2004	5.6	4.2	3.2	2.4	3.4	3.1	3.4
2005~2012	4.0	6.0	2.4	0.5	2.8	2.1	2.5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소득의 증가율이 피용자보수의 증가율을 압도하였다. 2005년 이후 비금융법인기업과 금융법인기업의 소득은 각각 연평균 4.0%, 6.0% 증가한 반면, 피용자보수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개인영업이여는 이 기간 동안 0.5% 상승에 그쳤다. 피용자보수, 영업이여, 재산소득을 모두 합친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1%에 머물렀다. 기업의 이윤은 급증을 하였지만 근로자들은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보수는 2000년 중반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근로자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은 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문을 닫거나 영세화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00년 중반 이후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 제4절 소 결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감소하였다. 경제주체별 소득 추이로 보면 피용자보수 비중은 정체, 기업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 개인 영업잉여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보정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는 자영업자의 쇠락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다. 고용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

을 주는 요인들을 나열하고 각각의 요인에 대해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룬다.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윤이 크게 늘어났고 이자지출과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내부유보가 엄청난 규모로 쌓이고 있는데 투자는 부 진하다. 노동소득분배율과 투자의 관련성을 이론적 혹은 실증적으로 검 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제4장

##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기초욕구충족을 위한 가계지출을 고려하여

# 제1절 연구문제: '실질적'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재고

본 연구는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가계의 지출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계측하는 경우, 소득을 기반으로 계측된 기존의 불평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소득불평등이 실질적인 생활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대개 불평등의 수준을 계측할 때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구한다. 이때 가처분소득은 소득 중 실제로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정의된다. 조작적으로 정의하자면 획득한소득 중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금을 합한 것을 가처분소득으로 간주한다. 개인적으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의미하는 가처분소득은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지출, 즉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을 제하고 각종 공적 이전소득을 합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얻어진 가처분소득은 개인의 의지로 비교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조작화된 가처분소득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한의미의 '가처분'소득일까?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자면, 20세기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18) 지출 부담이 이미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의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이나 불평등 비교가 활발하였던 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의료와 교육에서 본인 과 가구의 지출에만 의존하여 기초적 수준의 욕구 충족이 가능한 사회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이 상황을 언급하자면 가구원이 질병 으로 고생하게 되었을 때, 의료비가 과연 개인의 자유로운 지출일 수 있 을까? 이 경우 의료비는 세금이나 사회보험기여금보다 더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될 것이다. 교육비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들의 교육을 위한 비용이 개인적인 선택의 범주에 놓이기 쉽지 않다. 교 육이나 의료, 주거의 영역에서 사회정책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개 인이나 가구의 소득에서 기초수준의 교육, 의료, 그리고 주거를 위한 지 출을 부담하고 나서야 그 가처분소득이 사회정책이 발달한 사회의 가처 분소득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피할 수 없는 기초수준의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을 고려한 후의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여타의 지원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소득불평등만으로는 불평등의 시기적 변화 또는 국가 간 불평등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정 시기, 특정 사회에서 가처분소득불평등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도 기초욕구보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여 실제 불평등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초욕구 영역에서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가계 지출을 차감한 수정된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라 보고 이를 기반으로 불평등을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그 실질 적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불평등 수준을 계측하여야 좀 더 정확한 삶의 불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가처분

<sup>18)</sup> 주거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저소득 층 주거에 대한 지원이 주거비(구체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 그리고 공 공주택을 제공하는 방식 등 다양한 정책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에 따라 가계의 주거비 지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이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를 파악하여 기존의 소득불평등이 삶의 수준을 반영하는 데 갖는 한계 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조정된 실질적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기초욕구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발전 수준 또는 과제를 가늠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는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국가 간에 비교하여 각 국가의 사회정책이 가처분소득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선행 연구의 검토

소득은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자원으로서 빈곤이나 불평등 측정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득으로 생활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소득빈곤의 한계를 논하는 선행 연구들에서 이미 자주 지적된 바 있다. Ringen(1988)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지와 같은 생활에서의 평등이라면 우리는 삶의 불평등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원이라는 기회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생활조건은 비슷한 경제적 자원을 가진 가구에서도 다를 수 있다. 지출 압박이 다를 때가 그 대표적 예이다. 그리고 현금을 생활수준으로 전환하는 능력도 상이하다(Nolan & Whelan, 2010: 114). Nolan & Whelan(2010: 319~320)도 소득만으로 빈곤을 측정한다면 저축을 사용하거나 국가의 비현금 지원으로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또는 장애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경우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Hallerod (1995: 113)는 빈곤에 대한 측정에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간접적 접근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간접적 정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가구의 경제적 자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금소득을 자원의 측정으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가급부, 현물소득이나 기타 비공식 자원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한계는 현재의 가구소득은 장기적인 자원부족의 누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점이었다. 물가의 차이와 사회적 이전과 사회서비스에 대한접근성 차이 등을 고려하면 소득은 빈곤을 파악하는 데 더욱 큰 한계를 가진다. 위와 같은 한계의 지적은 공히 지출압박에 대한 고려, 그리고 사회적 이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소득을 활용한 계측을 완전하게 대체할 강력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면 적어도 한계를 줄이고 삶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Hicks(1998: 104)는 소득이라는 대리변수로 빈곤을 파악하는 것을 비판하고 적절한 대체 접근으로 미충족기초욕구지수(Unsatisfied Basic Needs Index: UNI)를 제안하였다. 삶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 중 하나인 미충족기초욕구지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중하나의 목적으로 생활상의 부족한 면을 드러내준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특히 강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선진국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적용한 기초욕구지수의 구성이 부적절하기도 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단위의 조사가 수행되어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적어서, 이것 역시전면적으로 소득의 활용을 대체하기 어렵다.

빈곤의 측정과 비교하여 불평등 분석에서는 불평등 지수의 산식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기는 하였지만 대개 소득이나 지출을 사용한다. 불평등 연구에서 생활을 반영할 대체 측정치를 모색하는 연구는 빈곤 연구와 비교하여 그리 활발하지 않다. Thomas et al.(2000)이 교육성취도 등교육의 다른 지표로 불평등을 측정하기도 하였지만 그 밖의 관련 연구의 축적은 일천하다. 국내에서는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조정된 가처분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활용하여 빈곤율을 비교한 경험(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 2012)이 있지만 연구 초기에 불과하다.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안 모색 중 하나는 소득 불평등이 실제 불평등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현물과 서비스 급여를 포함하는 수정된 소득의 불평등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 2006; OECD, 2012; Verbist & Matsaganis, 2012; Smeeding & Thompson, 2010; Evandrou et al., 1993). 현물과 서비스 급여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가처분소득을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부류의 연구들은 현물 및 서비스 급여를 포괄하여 볼 때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연구들은 공히 현물과 서비스가 각 사회성원의 삶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게 한다. 반면 충족되지 않은 기초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일상의 기본적인 문제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초점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현금지원이 큰 사회에서도 의료욕구의 충족이 현저하게 낮을 수 있다. 실제 정부의 의료지원 전체 예산규모가 커도이를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밝히기 쉽지 않다. 사회정책의 성과에 주목하는 한편 사회정책의 부족함을 도외시하기 쉬운 위험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안적 빈곤 측정을 지향하는 연구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한편 불평등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을 수정하여 현물이나 서비스 급여를 포괄하여 불평등 감소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놓치기 쉬운 사회정책의 미완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한다. 특히 기초욕구분야에서 사회정책의 미진함으로 인한 가계와 개인의 부담이 일상의 생활을 어느 정도 더 불평등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불평등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제3절 자료와 분석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불평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서는 오히려 빈곤에 대한 직접적 측정을 강조하는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빈곤 측정에서 논의되는 여러 대안 중 욕구를 고려한 접근을 이용하여 불평등을 다른 측면에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즉 각 사회정책이 불평등의 감소에 기여한 측면이 아니라 사회정책이 해소하지 못한 욕구 에 초점을 두어 이를 고려할 경우 불평등은 기존의 소득불평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이 사회정책이 대응하는 주요 욕구영역별로, 가구에서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지출을 고려하여 이를 소득에서 감하게 되면 실제 각 가구에서 사회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욕구 중 어느 정도가 충족되지 않아 가구 부담으로 남고 다른 지출을 제약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 방법으로 가처분소득을 기초욕구 영역의 충족을 위한 지출을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방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이슈가 있다.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을 기초욕구 영역으로 간주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두 번째 이슈는 지출의 차감에서 어느 수준을 과연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서 기초욕구 영역을 설정한 바 있다. 대체로 의・식・주와 함께 교육과 의료가 병행하여 거론된다. 이 영역들은 기초욕구 영역이면서 정책적으로 공적 지원의 주 영역이기 때문이다. 위의 기초욕구 영역 중 현물이나 서비스 지원 등의 사회정책 영역에서 그정책적 함의를 전제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거, 의료, 교육을 기초욕구 영역의 핵심으로 언급하여 왔다. 물론 의생활과 식생활의 경우도 핵심적인 기초욕구 영역이다. 하지만 이 욕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대체로 현금지원으로 구성된다. 생계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즉이 기초욕구 영역의 충족과 지출 부담은 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분석으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영역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논외로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 문화 등을 기초욕구의 영역으로 포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타당한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우선비현금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이자 기초욕구의 영역인 교육, 의료, 주거 영역을 중심으로 그 지출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가 간 비교에서는 주거 영역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였다. 이는

주거지원정책의 경우 국가마다 그 지원방식의 선택과 조합이 상이하여 주거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가 가구의 비율, 주거비 지원범위와 규모,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한 강조 등 한 사회의 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주거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너무 많다. 심지어 임대료 지원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선택한 국가의 경우, 주거비를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면 기존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그 불평등 수준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임대료 지원이 소득으로 합산되고 다시 지출에서 차감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료 지원이 소득으로 합산되었으므로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료를 파악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자료의 상태를 고려할 때 주거비 지원을 소득으로 파악한 정확성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를 수있기 때문이다.

국가비교에서 주거 영역에 대한 분석을 제외하였지만, 한국의 불평등 변화에서는 주거비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 정책과 주택시장이 변화를 거듭하여 왔지만 외국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국가 간 차이보다 변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주거비는 월세(외국의 경우 실제 월세(actual rent))로 한정하였다. 이는 자가나 전세의 경우, 주거비를 산정하기 어렵고, 환산(imputed)된 주거비로는 다른 지출처럼 일상적 생활에서 경험하는 지출부담과 이 부담에 따른 지출 제약의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보증금과 주거 관련 부채 등은 소득ㆍ지출과 다른 영역, 즉 재산의 영역과 관련된 정보이다. 이 점도 자가와 전세의 환산된 주거비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데 고려되었다.

교육비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전체를 포괄하는 지출이다. 사교육비가 과연 기초적 지출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점에서 사교육비를 포괄하는 교육비를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사교육비는 성적향상과 진학에서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그 실제 성과와 무관하게 정서적으로도 그 지출을 기초욕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즉 사교육 기회가 박탈된

상태를 실제 박탈로 인식하는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사교육을 포괄한 교육비를 사용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 간 비교에서 공교육비만을 별도로 구별하여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이 가능하므로 공교육비를 교육비지출로 간주한 분석을 병행하여 공교육비 지출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을 소득에서 차감할 때, 어느 수준까지를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지출이라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질문은 쉽게 그 답을 찾기 어렵다. 대개 소비가 기호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소비가 항상 사람들의 기호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거, 교육, 의료에서는 기호의 반영이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계층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소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 의료, 주거의 영역에서 어느 수준의 지출을 기초욕구를 위한 지출로 간주하고 차감할 것인가 하는 이슈에 대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지출 전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둘째는 기초욕구 충족의 수준을 가정하고 그 수준까지의 지출을 상한으로 지출을 조정하여 차감하는 것이다.

첫 번째 선택의 핵심적 이유는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은 소득탄력성이 낮다는 점에 근거한 선택이다.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구의 비용은 두 가지 이유로 사회마다 상이하다. 첫째는 욕구의 차이인데, 만약 위생이나 영양공급의 여건이 취약한 곳에서 저소득층의 질환이 더 심하다면이러한 상황이 각 가구의 의료비 지출 차이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욕구충족을 위한 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만약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사회라면 각 가구의 의료욕구 충족을 위한 지출은 역시 전무할 것이다. 결국 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욕구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수준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가구 부담은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 고려한 상태로 박탈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이유로 가구의 지출 중 기초욕구를 충족하는 데 사용된 지출 자체로 가계의 부담을 대변하기로 하였다. 가계의 지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을 가지는데, 이 이점은 상한을 적용하여 지출을 조정하는 안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특정 지출수준을 상한으로 적용하는 경우 자칫 실제 필요한 지출의수준을 극단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해당 사회의 불평등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결론적으로 기초욕구 영역의 가계 지출 자체를 차감하기로 하였다. 이 선택은 지출 자체는 있는 그대로 가구의 부담을 최종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해당 가구가 기초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출하고 여타의 생활에 사용이 가능한 잔여 소득으로 가구의 여건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분석방식의 선택이 갖는 문제는 빈곤층과 달리 중상층의 경우, 기초욕구 영역에서 기초욕구 충족 이상의 지출을 할 가능성이낮지 않다는 점이다. 즉 고소득자의 경우 주거생활의 선택은 단순히 기초적 주거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이상의 욕구, 개인적 기호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쉽고,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될 것인데 이를 소득에서 모두 감하게 되면 기초욕구 충족을 위하여 각 가구에서 이루어진 지출을 고려한다는 가정과 부합하기 어렵다.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고정비용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각 욕구영역별 소득에 따른 지출의 탄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필수재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이라도 소득탄력성이 0이 아니므로 지출 전액을 기초욕구를 위한 지출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선험적인 지출상한을 적용하여 지출을 조정하고 이를 차감하는 분석을 병행하였다. 주거, 의료, 교육비 지출은 소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받는지를 파악한 후 기초욕구 충족 이상의 지출은 기초욕구 충족 수준의 지출로 대체하여 소득에서 감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시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욕구 영역 가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보자면, 그 소득 탄력성이 낮지 않다. 문혜정·황상필(2012)은 2003~2011년 평균 품목별 소비지출비중을 분석한 결과, 주거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비중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은 소득분위별로 60대 이상의 연령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비중이 유사하고 교육은 약간 증가하였다. 최근의 연 구인 김범식(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교육의 소득탄력성이 1.3312로 다른 지출영역 대비 높게 나타났고 선택재적 성격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보건의료 소득탄력성은 2008년 0.805로 상대적으로 필수재적 성격을 보였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은 전 가구 평균의 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의료, 교육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지출 항목에 따라,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교육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비 소득탄력성은 단연 1을 넘어서고 있으며, 의료비의 경우도 1을 넘어서고 있고 외국의 그 값보다 높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탄력성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기초욕구 충족수준의 지출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가 비교를 위한 수준을 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욕구 영역에서 일정 수준까지의 지출만 기초욕구를 위한 지출로 인정하고자 할 때, 그 수준을 정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 선택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하나는 빈곤층의 지출을 기초욕구를 위한 지출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빈곤선으로 가정하는 중위 50%선 이하 가구들의 지출이 기초적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대안의 단점은 빈곤층이 과연 기초욕구를 충족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빈곤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또는 교육기회를 포기하였다면 이를 반영한 평균 지출이 기초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기 어렵다. 이 수준이란 극빈층의 생활을 반영한 평균이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가 더유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해당 사회의 평균 지출을 기초수준의 지출로 설정하는 것이다.

Smeeding(1984)은 그의 연구에서 지원받은 현물이나 서비스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금등가(cash equivalent value) 방식을 활용하였다. 현금등가는 실제 현물이 수급자에게 주는 가치가 시장가치나 정부의 비용과 다를 것이라는(이유는 그들에게 각 항목의 소비가 다른 효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는 현금등가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비수급자들이 해당 욕구충족에 사용하는 지출을 고려하였다. 만약 유사한 특징의 비수급자집단이 시장가치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는 이 집단의 평균지출로 처리되고 그 이하이면 시장가치로 처리된다. 이는 서비스 급여의 실제 가치를 가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비스 급여를 현금으로 환산하려는 목적과 달리 본 연구는 사회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구의 수준,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욕구충족을 위한 고정비용의 수준을 초점으로 하므로 다소 다른 방식으로위 방법을 원용한다. 하지만 해당 사회의 평균지출을 가치 환산의 주요한기준을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한 사회에서 구성원이 살아가는일반적 삶의 방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균'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을 적용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조작화할 때, 기초욕구 영역별 평균지출을 해당 기초욕구의 충족을 위한 상한으로 간주하고 각가구에서 그 이상의 지출이 있다면 이 수준의 지출로 대체하여 차감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평균지출은 지출이 있는 가구에 한정한 평균지출로 하여 지출이 없는 가구규모의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 즉 교육비지출 평균은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구하였으며 주거비의 경우도 주거비(월세) 지출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였다. 기초욕구 영역의 고정 지출 이후, 얼마나 여유가 있는 소득을 남기는지를 보려는 것이므로 각국 의 소득탄력성 차이를 고려하기보다 동일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 식의 한계도 물론 존재한다. 가장 큰 단점은 여전히 빈곤층의 결핍을 보 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극빈한 상황으로 인하여 지출이 있으나 매우 낮 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가구가 존재하고 그 수준이 최저지출로 가정한 수 준 이하라고 할 때, 무엇을 지출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 이 가 구의 경우 기초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자면 기초적 수준의 지출이 가정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지출 상한을 적용하면서 지출의 하한을 적용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분석함으로써 내핍으로 기초욕구 충족을 포기한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하지만 욕구가 없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없이는 내핍의 반영을 위한 하한지출의 적용이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슈에 대한 대안마련은 차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하 는 자료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uxembourg Income Study: LIS, 이하 LIS) 자료이다. 우리나라 지출과,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인 가구와 비임금근 로자를 포괄한 시점 이후의 자료로 분석을 한정하고자 2006~2012년 신분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 간 비교에서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LIS는 수십 년 동안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36여 개국의 소득, 지출, 자산에 관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왔다. 현재 LIS는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함께 근로소득, 자본소득, 가처분소득, 연금, 사회보장급여, 세금 등 소득 관련 자료와식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 관련 자료, 그리고 재산, 부채 등 자산 관련 자료를 포괄하여 제공하고 있다. LI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국가 중 구체적 분석에서는 대상을 일부 국가만으로 국한하였다. 분석에 사용될 소득과 지출 항목의 안정적 제공이 가능한 국가로 분석 대상국가가 재구성되어야 했다. LIS 자료에서 대부분의 국가 자료는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출의 경우는 그 활용이 가능한 국가가 상당히 제한된다. 또한 자료를 제공한 시점도 국가마다 상이하여서 국가에따라서 시차가 큰 자료의 분석에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지출과 소득 항목이 제공되는 국가 중 일부 국가만을 분석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이는 분석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그 용이성을 염두에둔 제한이다. 사회정책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널리 알려진 미국, 영국, 프랑스를 우선 고려하였으며, 멕시코도 유럽과 차별화되는 정책 환경의 국가로 추가하였다. 한국은 2006년 자료 외에는 LIS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가계동향조사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결과를 LIS 자료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표 4-1〉 LIS 참여국가 중 지출 항목 자료의 분석 가능 국가

Variables	South Korea (2006)	US (2010)	UK (2004)	Germany (2007)	France (2005)	Italy (2004)	Finland (2004)	Switzer- land (2004)	Mexico (2004)	Canada (2007)	Israel (2007)
Education	X	X	0	X	0	X	X	0	0	X	0
Health	X	0	X	X	0	X	X	0	0	0	0

주: O 표시는 지출 자료가 제공됨을 의미하고 X 표시는 지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LI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Luxembourg: LIS.

## 제4절 분석결과 1: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추이

교육, 의료, 주거, 세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과 평균 지출 수준은 해당 영역의 지출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구하였다. <표 4-2>를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 의료, 주거비 지출은 비빈곤층을 제외하고 빈곤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소득의 수준을 보면, 비빈곤층의 부담수준은 낮지만 빈곤층의 높은 부담 수준으로 전체 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볼 때, 교육비 부담은 매우 높다. 의료비와 주거비와 비교하여 그 부담의 수준이 매우 높다. 비빈곤층으로 한정하여 보아도 교육비 부담은 의료비와 주거비에 비교하여 부담의 수준이 높다. 하지만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과 비교할 때 교육비 지출은 빈곤층의 경우 비빈곤층과 그 지출 수준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담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교육비의 경우 빈곤층에게 그 부담이 작아지지 않고 있지만,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은 비빈곤층과 비교하여 절대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빈곤층과 비교할 때 빈곤층의 부담이 절대액에서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층의 경우는 의료비 지출/소득이 평균 1%도 안 되었다. 하지만 빈곤층의 부담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료비 지출/소득이 2,859에서 6,487에 이른다. 주거비의 경우는 전 계층에게 의료비보다는 높은 수준의부담이 되고 있으나 빈곤층으로 한정할 때는 그 부담의 수준이 다소 낮다. 월세를 지출하는 빈곤층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빈곤층보다 소득이 다소 높은 것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월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의료비와 월세는 빈곤층과 전 계층의 평균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의료비와 월세를 많이 지출하는 가구가 빈곤층에 더 집중되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비빈

#### 〈표 4-2〉 한국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변화

(단위: 원/월)

		亚岩	유비			의로	로비			주거비	(월세)	
	빈근	고층	전 7	계층	빈근	고층	전 :	계층	빈관			계층
	평균 지출	지출/ 소득	평균 지출	지출/ 소득	평균 지출	지출/ 소득	평균 지출	지출/ 소득	평균 지출	지출/ 소득	평균 지출	지출/ 소득
2012	249,774	12,023.6	475,364	894.0 (.12)	164,908	3,234.3	157,204	438.3 (.05)	208,480	2,611.9	247,563	474.7 (.09)
2011	269,549	7,878.0	480,616	682.5 (.13)	117,048	4,648.7	155,423	635.0 (.05)	200,695	10,854.5	231,027	2,167.2 (.09)
2010	249,368	23,852.6	479,979	110.4 (.14)	116,338	6,487.3	150,471	877.5 (.05)	178,364	3,646.4	228,588	637.5 (.09)
2009	256,623	13,979.3	462,552	1149.9 (.14)	96,399	2,965.4	138,397	409.4 (.05)	156,524	2,108.2	207,828	446.7 (.09)
2008	109,795	6,924.2	296,847	958.4 (.10)	92,573	5,249.0	126,473	741.8 (.04)	150,048	1,926.0	208,545	386.6 (.10)
2007	104,931	5,552.8	268,349	760.0 (.09)	93,779	3,586.5	126,053	505.2 (.05)	155,376	3,544.6	188,107	699.0 (.09)
2006	88,495	4,569.7	247,834	592.7 (.09)	84,092	2,859.3	118,226	382.1 (.05)	136,187	3,224.3	162,637	594.6 (.08)

주:() )안은 비빈곤층 지출/소득.

곤층의 지출/소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전체적으로 빈곤층의 평균 지출은 일부 극단치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다. 기존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표의 (A)에 제시되어 있다. 교육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으로 구한 지니계수는 (B), 의료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으로 구한 지니계수는 (D), 주거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으로 구한 지니계수는 (F)에 제시되었다. 즉 (B)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교육비' 값을 활용하여 구한 지니계수이다. 그리고 각 기초욕구의 평균 지출을 상한으로 지출을 조정한 상태로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C), (E), (G)에 제시되었다. 즉 (C)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평균교육비를 상한으로 한 교육비' 값을 활용하여 구한 지니계수이다.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는 (B)-(A), (C)-(A) ··· 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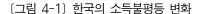
〈표 4-3〉 한국의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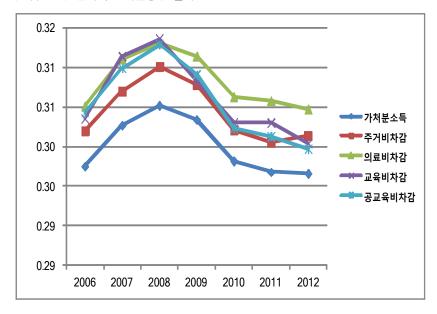
		교육	비 차감	의료비	미 차감	월세	차감
	가처분소득	수정가	처분소득	수정가:	처분소득	수정가	처분소득
	기준 지니	교육비	평균교육비	의료비	평균의료	주거비	평균월세
	(A)	차감(B)	차감(C)	차감(D)	비 차감(E)	차감(F)	차감(G)
		(B)-(A)	(C)-(A)	(D)-(A)	(E)-(A)	(F)-(A)	(G)-(A)
2012	.2966	.3004 (.2997)	.3062	.3047	.3034	.3014	.3004
		.0048	.0096	.0081	.0068	.0038	.0038
2011	.2968	.3030 (.3013)	.3081	.3058	.3039	.3006	.3005
		.0038	.0113	.0090	.0071	.0062	.0037
2010	.2982	.3030 (3023)	.3094	.3063	.3050	.3021	.3019
		.0039	.0112	.0081	.0068	.0048	.0037
2009	.3034	.3083 (.3091)	.3153	.3114	.3098	.3078	.3074
		.0044	.0119	.0080	.0064	.0049	.0040
2008	.3052	.3136 (.3129)	.3169	.3131	.3118	.3101	.3096
		.0049	.0117	.0079	.0066	.0084	.0044
2007	.3027	.3114 (.3099)	.3137	.3110	.3093	.3070	.3065
		.0043	.0110	.0083	.0066	.0087	.0038
2006	.2975	.3035 (.3034)	.3071	.3051	.3039	.3020	.3012
		.0045	.0096	.0076	.0064	.0060	.0037

주:() ) 안은 공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2008년, 2009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각 기초욕구별 지출을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경제위기 시에도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극적으로 줄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각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상이하다.

의료비를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 [그림 4-1]을 보면 2007~2008년까지는 교육비 지출 후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이 의료비 차감 조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보다 더 심하였지만





그 이후 의료비 지출이 불평등에 가장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의 수준이 높은 값을 유지하였다. 2007~2008년 경제위기 시에도 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아서 이로써 불평등은 심하게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2008년을 기점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주거비를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비교적 의료비와 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도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11년 이후 2012년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2012년에는 교육비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주거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주거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주거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보다 주거비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를 보면 교육비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044, 평균 교육비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109, 의료비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081, 평균 의료비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061, 그리고 평균 월세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061, 그리고 평균 월세 차감의 경우 7년 평균 0.0039이다. 평균 교육비의 경우 그 차이가 가장 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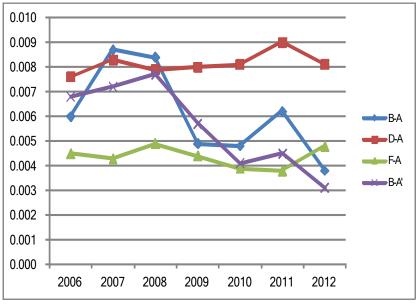
이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높아서 평균 교육비 지출로 상한을 적용한 경우 불평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며 저소득계층도 교육비 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의료비 지출 후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큰 것은 빈곤층이 높은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과 수정 가처분소득 불평등 차이가 0.0037에서 0.0119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24였고, 2006년에는 그 값이 0.019였다는 점을 환기하면 그 차이가 작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0.0119의 경우 2006년 전체적으로 국가의 개입으로 발생한 불평등 감소폭에 근접하는 것이다.

[그림 4-2]는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지 출의 차감으로 구하여진 가처분소득 불평등 B, D, F를 기준으로 한 불평 등)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기존 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가장 크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모습이다. 의료비지출이 불평등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악영향이 줄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월세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가장 작게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그 차이가 커져서 조금 더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되지만 그 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 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 으나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전체 교육비와 공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에서도 유사하다. [그림 4-3]에서 보면 공교육비와 전 체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더욱 급격하게 감소하여 공교육비가 불평등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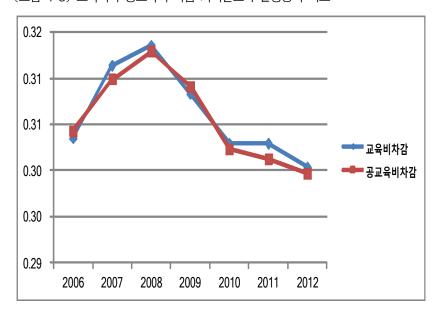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과 조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의 차이는 기존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불평등

[그림 4-2]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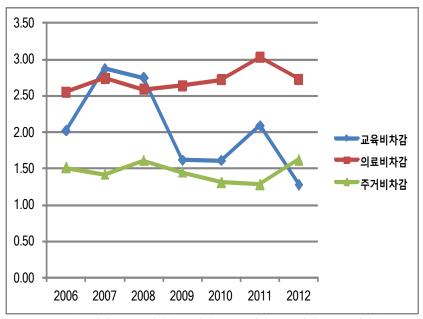
주:B-A'는 공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임.

[그림 4-3] 교육비와 공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비교



수준이 매우 심각한 사회의 경우, 큰 폭의 지니계수 변화가 좀 더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같은 값의 차이로 불평등을 개선하기에 더 큰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기존의 불평등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존 가처분소득 불평등 대비 불평등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수정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를 기존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로 나누어 기존 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 크기를 통제한 상태로 변화폭을 시기별로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을 통제하여 조정 전후 가처분소득 불평등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절대값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을 고려하여도 가장 높다.

[그림 4-4] 가처분소득 불평등 대비 조정 전후 불평등 차이<sup>1)</sup> 변화



주:1) {(조정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처분소득 지니계수}\*100.

## 제5절 분석결과 2: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국가 간 비교

미국, 영국, 프랑스, 멕시코를 비교대상국가로 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비교하였다.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지출을 고려하여 가처분소 득을 조정하고, 이렇게 구한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불평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미국의 경우는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을, 영국의 경우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다행스럽게 프랑스와 멕시코는 교육비와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공히 비교할 수 있었다.

앞의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각 영역의 지출을 그대로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결과와, 각 영역에서 지출이 있는 가구들의 평균 지출을 상한으로 지출을 조정하여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결과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앞의 <표 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국의 기준 시점은 서로 다르다. 각국이 자료를 제공한 최근시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것임을 밝힌다.

〈표 4-4〉 수정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지니계수) 수준 국가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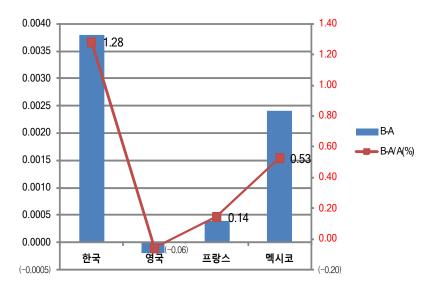
	가처분소득	교육비를 차김	<b>}한</b> 가처분소득	의료비를 차김	l한 가처분소득
	/ (A)	교육비(B)	평균 교육비(C)	의료비(D)	평균 의료비(E)
	(A)	(B)-(A)	(C)-(A)	(D)-(A)	(E)-(A)
한국	.2966	.3004	.3062	.3047	.3043
인크	.2300	.0038	.0096	.0081	.0077
미국	.3764	-	_	.4083	.4008
114	.5704	-	_	.0319	.0244
영국	.3319	.3317	.3316	_	_
ÖТ	.5519	0002	0001	-	-
프랑스	.2792	.2796	.2797	.2849	.2824
6-	.4134	.0004	.0005	.0057	.0032
멕시코	.4562	.4586	.4635	.4627	.4620
4/12/	.4002	.0024	.0073	.0065	.0058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불평 등(.2966)은 그리 높지 않다. 심지어 비교국가 중 프랑스(.2792)에 이어 불평등 수준이 양호한 국가에 속한다. 반면 멕시코(.4562)와 미국(.3764)의 불평등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 영국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도 심각하다. 하지만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차감하여 가처분소득을 수정하면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한국이 .3004. 영국 이 .3317. 프랑스는 .2796. 그리고 멕시코는 .4586이다.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큰 차이를 보인 국가는 한국 이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와 교육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 지 니계수의 차이는 .0038이다. 다음으로 그 차이가 큰 국가는 멕시코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는 교육비를 차감하여 수정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는 심지어 조정된 가처분소득 지니계 수가 더 낮다. 교육비 지출을 고려한다면 빈곤층과 비빈곤층 사이의 불평 등이 더 완화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가 낮아서. 그리고 고소득 층의 교육비가 심각하게 높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니 좀 더 심도 있 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영국의 빈곤층에 대한 교육지원의 영향이 분 명 존재할 것이라 추정된다. 특히 영국의 빈곤층에 대한 집중 지원도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멕시코에서 공히 교육비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양국에서 평균 교육비19)를 상한으로 교육비를 수정하여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은 더 욱 심각하다. 교육비의 소득탄력성이 높은 때문으로 추정된다.

각국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통제한 상태로 조정 가처분소득과 가처분소득 불평등 차이를 다시 보면 [그림 4-5]와 같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통제하여 변화폭을 보더라도 국가 간 순위는 유지된다. 멕시코에서 교육비 지출로 인한 불평 등 악화는 오히려 완화되어 보인다. 교육비 차감으로 가처분소득 불평등 의 .53% 정도 악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그 악화의 수준이 가처

<sup>19)</sup> 한국에 대한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평균 교육비는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에 한 정하여 구하고 차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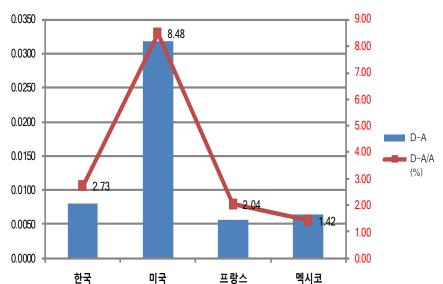


[그림 4-5] 교육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분소득 불평등의 1.28%에 이른다.

의료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불평등과 가처분 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때, 미국에서 큰 폭(.0319)으로 악화된다. 미국에서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발전하지 못한 때문이라 추정된다. 프랑스에서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가처분소득 불평등 대비 가장 소폭으로 변화하였으며 다음이 멕시코와 한국 순이다(그림 4-6 참조).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이 발전된 상태이지만 본인부담으로 가계와 개인의 부담이 적지 않은 탓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평균의료비를 상한으로 지출을 조정하여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에서도 유사하다. 의료비지출은 소득탄력성이 있다고 하여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의료비가 높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중산층이라 하여도 필요한 수준의 의료비지출로 지출을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를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에 대비하여 보면 [그림 4-6]과 같다. 한국과 프랑스의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가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2.73%, 2.04% 악화되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1.42% 정도 악화



(그림 4-6) 의료비 차감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차이 비교

된 것으로 나타난다. 멕시코의 경우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을 고려한다면 의료비 지출로 불평등이 악화되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미국은 워낙 불평등이 심화되는 정도가 커서 높은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에도 불구하고 차이의 비율이 크다. 한국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낮다고 하여도 기초영역의 지출을 고려하면 불평등의 상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기존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통제하고 지출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보면 더 심각하다.

의료비와 교육비지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비교국가들 사이로 한정하여 보면, 프랑스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에서도 그리 불평등이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정책의 수준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멕시코와한국은 유사하지만 한국의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하게 보자면 한국에서 의료비와 교육비지출이 불평등 악화에 더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균 의료비와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에서도 양국의 순위가 유사하여 이러한 설명이더욱 신빙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멕시코와 한국의 사회정책과

교육, 의료 부문의 현실을 고찰하여야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계속 사회보험으로 의료적 박탈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상태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해되었다.

정부의 공적 지출 수준을 보면 미국의 보건에 대한 공적 지출이 GDP 대비 8.3%(2009년 기준)이고 프랑스의 보건에 대한 공적 지출은 GDP대비 9.0%(2009년 기준)로 큰 차이가 없다<sup>20)</sup>. 하지만 두 국가의 가계 지출중 보건의료비 지출로 인한 불평등 심화의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공적 지출의 수준만으로 특정 국가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공적 지출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주요 측면이다. 물론 위의 사례는 공적 지출과 불평등 완화 사이의 관계가 모호한 극단적 예일 수 있다. 많은 경우 공적 지출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공적 지출은 과연 그 공적 지출이 어떻게 기획, 운영되는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보건과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비교국가군 중 가장 낮다. 보건에대한 공적 지출은 GDP대비 4.0%(2009년 기준),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GDP대비 4.9%(2009년 기준), 5.3%(2009년 기준)보다 낮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중요한 발견은 가처분소득 불평등이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을 고려하여 수정된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을 외국과 비교할 때 단순하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삶의 불평등을 오히려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초욕구 영역의 지출 부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소득불평등은 우리의 삶에서 불평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sup>20)</sup> 보건에 대한 공적 지출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http://stats.oecd.org/Branded View.aspx? oecd\_bv\_id=socx-data-en&doi=data-00166-en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OECD. Argentina, Indonesia: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World Education Indicators programme). See Annex 3 for notes(www.oecd.org/edu/eag.htm).

### 제6절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실제 삶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처분소득으로 불평등을 파악하여 보고자 하였다. 가처분소득을 수정하여 주거, 의료, 교육 분야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가계의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 수준을 측정하여 보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불평등 현황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2008년, 2009년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 변화와 경향은 유사하다. 하지만 각 지출을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 수준은 상이하다. 2008년 이후 의료비를 차감한 상태의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아서 기존의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차이가 크다. 의료비 지출이 실질적인 삶의 불평등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비는 빈곤층의 열악한 건강상태와 높은 부담이 결합되어 불평등에 대한 영향이 더 커진 것이라 추정된다.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의 수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경제위기 시에도 줄지 않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완화되고 있다. 주거비를 차감한 수정된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은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주거비가 실제 삶의 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전체적으로 가처분소득과 조정 가처분소득 불평등 차이가 0.0037에서 0.0119에 이른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차이가 0.024인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조세정책이나 각종 사회정책이 불평등 감소에 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가 보여주지 못하는 삶의 불평등 악화 경향이나 악화의 정도를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과의 비교에서도 보면 기존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때보다 조정된 실질적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보 다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불평등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기초욕구를 위한 지출을 고려한 상태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불평등 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국가이다. 교육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이나 의료비를 차감한 가처분소득 불평등의 변화가 비교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컸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소득불평등 이상으로 생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조정된 가처분소득은 실제 국민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 할 때,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기존 인식보다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시도하지 못하였지만 주거비와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를 모두 차감한 상태의 불평등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더욱 심화된 상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우리의 불평등 수준을 안일하게 이해하고 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의 모색을 미룰 것은 아니다. 국민의 실질적 삶의 불평등이 최근 국민이 느 끼는 불평등 악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전면적 인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책 구상은 기초욕구 영역의 지원 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불평등 체감은 소득의 차이만 으로 비롯되지 않을 것이며 기초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일상의 힘겨움에 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비지출은 실질적인 삶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가계의 의료비지출을 줄이는 정책적 대안을 조속하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이 운영된다고 하여도 높은 수준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규모가 작지 않고, 가계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한 빈곤화 사례도 적지 않게 거론되어 왔다. 고액의 본인부담을 방지하는 의료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교육비 부담이 주는 영향은 감소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거비 부담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어서 빈곤층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월세의비중이 계속 증가 중에 있으며 자가 외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거지원은 향후 심각한 정책 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주거비의 지출 부담과 이로 인한 여타 생활의 위축, 압박이 커지면 우리가 낮은 소득불평등으로 숨겨 왔던 불평등 문제가 전면적인 사회문제로 노출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만으로 국민의 삶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각 가구의 욕구가 다르며 이러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지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욕구에 대한 저렴한, 또는 무료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사정이 다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득만으로 놓치기 쉬운 삶의 어려움, 삶의 불평등을 좀 더민감하게 대변할 수 있는 측정방식을 고민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삶의 불평등에 보다 민감한 불평등의 측정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 방안으로 가처분소득에서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차감하여 조정된 가처분소득을 활용한 지니계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차감하는 지출은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지출이라고 전제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출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정치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지출을 포기한 극빈층의 기초욕구 박탈은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도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답을 구하여야만 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던 분석은 생활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적 노력에 불과하다. 본 분석의 한계와 남겨진 과제들은 이후 연구에서 극복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 제5장

# 2000년대 중반 이후 소득이동성의 변화

### 제1절 문제의식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득분배의 한 가지 측면인 소득이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이동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정한 시간에 걸친 소득지위의 변동성이 특정한 시점에서의 불평등과는 또 다른 의미의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점에서 관측된 불평등이 심하더라도 소득계층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개별가구(또는 개인)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 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나 개인의입장에서는 장차 소득계층이 상향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닐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이동성이 침체된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현재의 계층 지위가 고착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갖게 되고, 이는 사회통합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이동성은 소득불평등 문제가 갖고 있는 좀 더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성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일시적인 개인 간소득격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지위의 변화와 관련되고, 더 나아가 세대 간 소득지위의 전이라는 문제와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더 장기적이다. 또한 소득이동성의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부

양이나 재분배정책만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그리고 소득이동성의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 내의 계층화가 고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소득분배의 중요한 양상 가운데 하나인 소득이동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어떻게 변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이동성이 장기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 시점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국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분석 대상 기간을 더 길게 하지 않은 점은 가용한 데이터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다만 200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강조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기의 국면이 일차 해소되면서 2000년대 초반 빈곤과 불평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소득분배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 시기의 분배 악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 소득이동성 지표들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분석 대상 기간이 길지 않다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 제2절 소득이동성 분석의 쟁점과 방법론

### 1. 분석방법

일반적으로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은 두 시점 간 소득지위의 변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소득인지, 누구의 소득인지, 소득 지위란 무엇인지 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동일한 개인의 두 시점 간 소득지위 변동을 의미하는세대 내 소득이동과, 부모와 자녀와 같이 서로 다른 세대에 걸친 소득지위 변동을 의미하는세대 간 소득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득 범주의

측면에서도 개인의 노동시장 활동을 통해 획득한 소득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혹은 기타 소득도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인가 등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 지위라고 할 때그것이 소득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득 분포상의 위치(순위)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sup>21)</sup>

소득이동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과 무관한 기본적 공통점은 특정한 개인(또는 가구)의 소득지위 변동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고 하는 종단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데이터의 제약은 소득이동성과 관련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패널데이터 자료를 이용하여 부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사이의 탄력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소득이동성을 분석하거나(김희삼, 2009; 강신욱 외, 2010; 최지은·홍기석, 2011), 각 개인이나가구의 소득분위 변화 경향을 추적하는 세대 내 소득이동 연구가 주를 이룬다(성명재, 2007; 석상훈, 2009; 이건범, 2009; 강신욱, 2011 등).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 가지 한계는 데이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소득이동성 분석의 시계열 범위가 길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패널조사 자료가 지니는 표본 구성의 특성상 소득의 변화에 중요한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들의 분포가 시간이 갈수록 덜 변화하게 된다.22)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강신욱(2011)은 횡단면 자료인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부분적으로 연결하여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동성 변화를 추적하였으나 데이터 자체 및 데이터 구축 방법 과정에서의 정보 유실 등의 한계로 인해 분석의 내용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본 연구 역시 타 연구와 같은 자료상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신, 본 연구는 소득이동성을 파악하는 여러 지표들을 검토함으로써 소득이동성 변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sup>21)</sup>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소득이동성(income mobility),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에 관한 개념적 구분에 관해서는 강신욱·이병희·장수명·김민희 (2010)를 참조할 것.

<sup>22)</sup> 국내의 패널자료를 분석하여 소득이동성이 감소한다는 다수 연구의 결론을 해석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의 분석 방법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거시적 접근은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Fields(2008)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는 소득이동성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그에 상응하는 지표들도 각각 다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지표들을 도출한 후, 시계열적 비교와 인구집단 간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시적 방법으로 개인의 경제·사회적 특성이 소득이동의 방향이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소득이동성 지표의 분석에서는 가구와 개인 모두를 분석 단위로할 것이지만 인구집단 간비교나 미시적 분석에서는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2005년부터(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 사회의 소득이동성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이 장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다.

#### 2. 데이터

이하의 분석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7차 자료를 이용할 것이다.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으로 하되, 가구 관련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가구 연결 자료를 사용할 것이며, 소득지위의 동태적 변화를 위해 인접 연도의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1~7차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가구 및 개인소득을 제공하고 있다. 각 연도마다의 소득지위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인접한 두 해의 자료를 결합하였다. 이때 두 해 모두 소득이 조사된 개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의 소득이동성 분석이 의미를 지니려면 분석 대상 개인을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집단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는 연령층이나 주부, 학생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킬 경우 이들의 소득이 계속 0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이동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는 만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만을 포함시켰다. 이 연령대에서도 근로무능력자 및 근로능력이 미약하여 단순한 가내 활동만 가능하다고 분류된 개인

은 제외하였다. 단,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에서도 근로능력은 있으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가 '취업준비', '구직포기', '근로의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실업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간주하여 비경제활동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1~2차 연결 자료에서는 6,208명, 2~3차에서는 5,867명, 3~4차는 5,669명, 4~5차는 5,371명, 5~6차는 5,471명, 6~7차는 5,409명의 표본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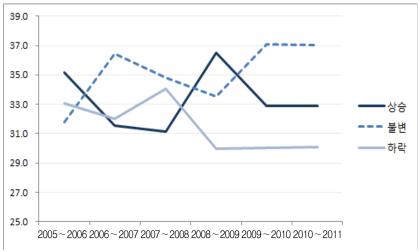
소득범주는 가구소득을 이용할 경우에는 균등화된 가구 경상소득을, 개인 단위의 소득에서는 개인의 노동소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소득을 균등화할 때에는 가구 전체의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개인의 노동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업소득, 농림어업소득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나 농림어업소득 항목에 대해 순소득을 조사하고 있어 이들 집단의 소득변동이 매우 불규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비롯되는 오차를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전입소득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입소득이 보고되지 않는 3차까지의 자료(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 이전의 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불가피하게 개인 단위의 분석은 4차 이후의 자료만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과 경상소득 음(-)으로 보고된 경우는이를 0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 제3절 소득이동성의 실태

### 1. 소득분위의 변동

한 세대 내에서 동일한 개인의 소득이동성은 기준 시점의 소득지위에 비해 비교 시점의 소득지위가 변했는지 여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때 소득지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방안으로 그 개인이 속한 가구소득의 분위 또는 개인이 획득한

[그림 5-1] 가구소득분위(10개 분위) 변동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표 5-1〉 가구소득분위 변동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 변화

(단위:%)

							( - 11 / 0/
	분위변동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10분위 구분	상승	35.2	31.6	31.1	36.5	32.9	32.9
	불변	31.8	36.4	34.8	33.5	37.1	37.0
ार	하락	33.1	32.0	34.0	30.0	30.1	30.1
5분위 구분	상승	25.7	22.2	21.6	26.3	22.5	22.5
	불변	50.1	55.6	55.2	53.2	57.0	56.2
	하락	24.3	22.2	23.2	20.5	20.5	2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소득의 분위를 소득지위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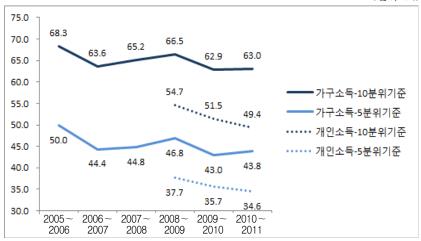
[그림 5-1]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10개의 소득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전년도에 비해 소득분위가 상승/불변/하락한 개인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가구 경상소득을 이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표 5-1>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5개 분위로 구분하였을 때와 10개 분위로 구분하였을 때 전년에 비해 분위가 상승/불변/하락한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

는지를 보여준다. [그림 5-1]과 <표 5-1>을 보면 소득분위의 상승 혹은 하락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분위 상승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과 하락 가구에 속한 개인의 비율이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 10분위로 구분한 경우를 보면, 2005~2006년간의 가구소득분위 상승/불변/하락자의 비율이 각각 35.2%/31.8%/33.1%였다가 2010~2011년간에는 32.9%/37.0%/30.1%로 변했다. 가구소득분위가 상승한 개인과 하락한 개인의 비율이 줄고 반면 변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늘어난 것을 통해이 두 시기 사이에 소득의 이동성은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표 5-1>에서 보듯이 5분위로 구분한 경우에도 나타난다.

가구소득의 이동성과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의 이동성도 분위 변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sup>23)</sup> 아래의 [그림 5-2]는 가구소득분위 변동자의 비율과 개인소득분위 변동자의 비율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개인소득분위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자영자의 전입소득이 보고된 2008년 이후의 변동만 제시되어 있다. 2008년 개인소득분위 변동자

#### [그림 5-2] 소득분위의 변동 경험자의 비율

(단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원자료.

<sup>23)</sup> 개인소득의 경우 10분위 구분 시 하위 1, 2분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소득값이 0인 표본이 많아 1, 2분위의 엄밀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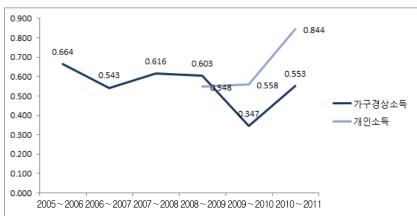
의 비율은 가구소득분위 변동자의 비율보다 그 값도 낮고 하락세도 분명 하다. 요컨대 개인소득의 이동성이 저하되는 경향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 나고 있다.

#### 2.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

소득의 이동성은 기준연도 소득과 비교연도 소득의 상관관계를 통해 파악할 수도 있다.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기준연도에 높은(낮은) 소득을 얻었을수록 비교연도에 높은(낮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소득이동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 5-3]과 <표 5-2>를 통해 볼 때 2010~2011년간을 제외하면 가구소득의 상관관계는 점차 줄어드는 추이임을 알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의 이동성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분위의 변동을 통해 소득이동성을 파악했을 때와는 상이한 양상이다.

한편 개인소득의 상관계수는 2008~2009년간을 제외하면 가구소득 상 관계수에 비해 높고 2008년 이후 상관계수의 증가 경향이 분명하다. 즉 소득이동성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5-3] 두 시점 간 소득의 상관계수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 3. 소득 수준의 변화

두 시기 간에 평균 대비 소득수준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통해 각 시기 별로 소득 지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기준시점 소득 x와 비교 시점 소득 y를 이용하여 분석한 소득이동성 지표는 다음의 Ms와 같이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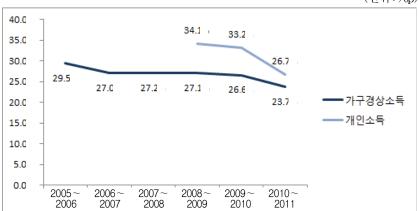
$$Ms = \frac{1}{n} \sum_{i=1}^{n} \left| \frac{y_i}{\mu_u} - \frac{x_i}{\mu_x} \right|$$

이 Ms는 전체 평균소득 대비 개인의 소득 비율의 변화폭을 평균한 값으로, 특정 개인이 전체 사회의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몫, 즉 소득점유율 (share)의 변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Ms가 클수록 소득 이동이 활발했음을 의미한다. 가구 경상소득과 개인소득에 대한 Ms의 변화는 아래의 [그림 5-4]와 같이 나타난다.

가구소득의 경우 평균소득 대비 약 24~29%p의 변화를 보였으며, 소득 이동성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반면 개인소득은 2008년 이후 약 34%p에서 약 27%p로 변화폭이 줄어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림 5-4] 상대소득의 변화

(단위:%p)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 〈표 5-2〉 소득 변화분의 절대값 변화

(단위: 만 원/연)

	2005~ 2006	2006~ 2007	2007~ 2008	2008~ 2009	2009~ 2010	2010~ 2011
가구경상소득	709.9	741.7	736.0	759.4	810.6	721.0
개인소득				836.9	810.6	684.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한편 두 시점 간 평균적인 소득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봄 으로써 소득이동성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변화액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파악한 소득이동성 지표를 다음  $M_{nd}$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_{nd} = \frac{1}{n} \sum_{i=1}^{n} |y_i - x_i|$$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M_{nd}$ 는 <표 5-2>와 같이 나타난다. 개인소득의 변화분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과는 달리 가구소득의 변화분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sim2011$ 년 사이에 크게 줄어들었다.

 $M_{nd}$ 가 소득 변화분의 절대값을 이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소득의 변화 방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소득의 변화가 증가를 의미하는지 감소를 의미하는지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와 달리 아래의  $M_d$ 는 소득변화의 방향을 고려한 소득이동성 지표이다.

$$M_d = \frac{1}{n} \sum_{i=1}^{n} (y_i - x_i)$$

소득 변화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추이는 <표 5-3>과 같이 나타난다. 소득변화액의 절대값을 이용한 위 <표 5-2>의 결과보다는 변화 정도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의 증가액과 감소액이 평균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의 변화액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 후 2010~2011년간에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개인소득은 이와 달리 2009~2010년 사이에 소득변화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표 5-3〉 소득 증감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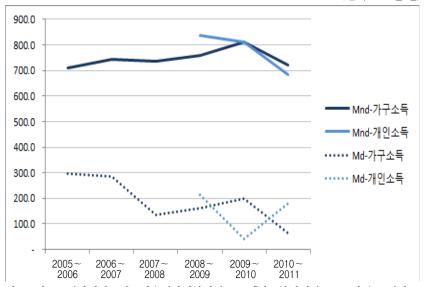
(단위: 만 원/연)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구경상소득	295.4	285.4	135.4	163.2	199.4	65.8
개인소득				213.6	43.2	182.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원자료.

[그림 5-5] 소득변화액을 통해 본 소득이동성

(단위: 만 원/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M_{nd}$ 와  $M_d$ 는 소득이동성의 각각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소득 변화에 규범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변화가 많았는지만을 보 려면  $M_{nd}$ 가 적절할 것이나, 소득 이동에서 상향이동과 하향이동에 다른 가치판단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M_d$ 가 적절할 것이다.

## 4. 소득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소득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소득이

동의 결과 불평등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이동성이 갖는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소득 이동의 결과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 지위의 상향이동이,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하향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이는 소득이동성이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중간 소득계층에서 소득지위가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양분화 경향이 나타났다면 소득이동성의 증가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두 시점 사이의 소득이동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 반대로 작용하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  $M_a$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M_g = 1 - \frac{I(a)}{I(x)}$$

여기서 I는 특정 연도의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불평등지표로서, 이하에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할 것이다. x는 기준연도의 소득, a는 기준연도 소득 x와 비교연도 소득 y의 산술평균값(=  $\frac{x+y}{2}$ )이다. 만일 기준연도에서 비교연도로의 소득 분포 변화가 불평등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I(x)와 I(a)가 동일하게 되므로  $M_g$ 의 값은 0이 된다. 그러나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면 I(a) < I(x) 일 것이고  $M_g$ 는 0과 1 사이의 값을 지니게 된다. 반대로 불평등을 증가시켰다면  $M_g$ 는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을 이용한  $M_g$ 의 변화 추이는 <표 5-4> 및 [그림 5-6]과 같이 나타난다. 가구소득과 개인소득 모두 소득지위의 변동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정도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관측이 시작된  $2005\sim2006$ 년 기간에 비해  $2010\sim2011$ 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 개인소득도  $2008\sim2009$ 년간에 비해  $2010\sim2011$ 년에  $M_g$ 가 다소 증가하였다. 요컨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 사회의 소득이동은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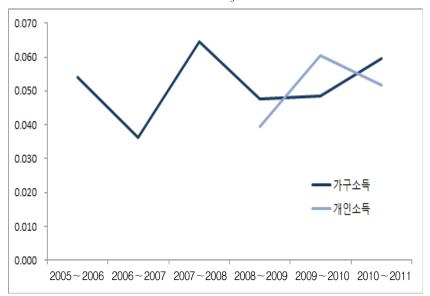
<sup>24)</sup> 이러한 해석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표 5-4>에서와 같이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 ㅍ	F-1\	소득지위의	대약대	떠모	부펴드	벼히
く並	5-4/	오득시위의	건와에	나는	돌	면와

		가구소득		개인소득			
	전년도 소득 지니계수	두해 평균소득 지니계수	· · · · ///		두해 평균소득 지니계수	$M_g$	
2005~2006	0.3222	0.3048	0.054				
2006~2007	0.3206	0.3090	0.036				
2007~2008	0.3167	0.2962	0.065				
2008~2009	0.3043	0.2899	0.047	0.4532	0.4353	0.039	
2009~2010	0.3134	0.2982	0.049	0.4906	0.4610	0.060	
2010~2011	0.3080	0.2896	0.060	0.4738	0.4494	0.05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그림 5-6] 가구 경상소득과 개인소득의  $M_a$  변화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원자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표 5-4>에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한 지니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구소득 불평등의 감소 경향은 다른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예컨대 통계청의「가계동향」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와 상이한 모습이다. 이는 데이터 작성 과정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 장의 분석을 위해 인접한 연도 간 연결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탈락된 표본의 특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위의 해석은 이러한 원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5. 소득이동성의 변화 양상 종합

아래의 <표 5-5>와 <표 5-6>은 위에서 언급한 각 지표들의 변화에 대해 가구소득은 2006~2007년간의 지표값을 100으로, 개인소득은 2008~2009년간의 지표값을 100으로 간주하여 비교한 것이다.<sup>25)</sup>

가구소득을 통해 본 이동성의 경우 분위변동과 상대소득 변화(Ms), Md의 변화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2006년 이후 소득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소득 상관계수나 Mnd를 통해 본 소득이동성의 변화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소득의 변동은 불평등을 일관되게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정도는 다소 변동이 있는 편이었다.

개인소득을 통해 보면 기준 시점은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2008~2009년간에 비해 이후 소득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관측된다. 특히 가구소득과는 달리 개인소득의 상관계수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소득이동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보다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소득이동이 개인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는 가구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관측된다.

《표 5-5》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가구소득 기준, 2006~2007년간 =100)

	2005~2006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분위변동(10)	107.4	100.0	102.5	104.6	99.0	99.1
분위변동(5)	112.6	100.0	101.1	105.5	96.9	98.8
상관계수	122.4	100.0	113.5	111.1	64.0	101.9
Ms	106.1	100.0	95.5	94.5	94.5	82.4
Mnd	95.7	100.0	99.2	102.4	109.3	97.2
Md	103.5	100.0	47.4	57.2	69.9	23.0
Mg	149.1	100.0	178.0	130.8	133.9	164.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sim7$ 차년도 원자료.

<sup>25)</sup> 가구소득 지표에서 2005~2006년간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일부 지표의 경우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 5-6⟩ 소득이동성 관련 지표들의 변화 추이(개인소득 기준, 2008~2009년간 =100)

	2008~2009	2009~2010	2010~2011
분위변동(10)	100.0	94.2	90.3
분위변동(5)	100.0	94.7	91.7
상관계수	100.0	101.8	154.0
Ms	100.0	97.2	78.2
Mnd	100.0	96.9	81.8
Md	100.0	20.2	85.4
Mg	100.0	153.4	131.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 제4절 개인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

#### 1. 인구학적 특성 집단별 비교

앞절의 분석이 가구소득과 개인소득의 소득이동성에 대한 시기 비교가 목적이었다면, 이 절에서는 각 집단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자 한 다.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소득이동성의 집단별 비교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 자료부터 인접한 두 해씩의 자료를 연결한 후 이를 다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결합하였다.26)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학력 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기준연도에 비해 비교연도에서도 변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준연도의 변수값을 근거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즉 여성, 30대, 고졸 등의 구분은 기준연도에 관측된

<sup>26)</sup> 즉 4~5차, 5~6차, 6~7차 연결자료를 결합하여 각 인접 연도 간의 소득이동을 하나의 관측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세 번의 연결 자료에서 모두 관측된 동일한 개인은 서로 다른 3명의 개인으로 간주한 것이다.

〈표 5-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단위:%, 만 원/연)

	성	<b></b>			연령대			학력			
	남성	여성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 64세	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 대	대졸 이상
구성비	59.9	40.1	17.6	25.4	30.7	22.0	4.4	16.2	36.4	17.5	29.9
Yt	3,276	1,534	1,468	2,829	3,139	2,652	1,274	1,388	2,316	2,198	3,759
Yt+1	3,425	1,675	1,716	3,043	3,270	2,707	1,171	1,460	2,452	2,389	3,931
$\Delta Y$	149	141	249	213	131	55	-103	72	136	190	172
St	127.1	59.5	57.0	109.8	121.8	102.9	49.4	53.9	89.9	85.3	145.9
St+1	125.8	61.5	63.0	111.7	120.1	99.4	43.0	53.6	90.1	87.8	144.3
$\Delta S$	-1.3	2.0	6.1	1.9	-1.7	-3.5	-6.4	-0.2	0.2	2.5	-1.6
ρ	0.5172	0.7935	0.4358	0.6073	0.6855	0.4676	0.6197	0.7898	0.7250	0.7903	0.4428
Dt	6.70	4.48	4.44	6.43	6.47	5.64	3.95	4.29	5.59	5.47	7.09
$\Delta D$	0.10	0.18	0.45	0.17	0.06	-0.01	-0.18	0.07	0.11	0.26	0.11
$ \Delta D $	0.93	0.87	1.09	0.90	0.82	0.89	0.92	0.82	0.95	1.00	0.8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원자료.

#### 특성에 따른 구분이다.

위의 <표 5-7>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각 집단의 구성비와 소득이동 관련 값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 표에서 Yt와 Yt+1은 각각 기준 연도와 비교연도(기준연도의 다음 해)의 소득을, St와 St+1은 각각 기준 연도와 비교연도의 평균소득대비 상대소득을 의미한다. 또한 Dt와 Dt+1은 각각 기준연도와 비교연도의 소득분위(10분위 구분)를 의미하고  $\rho$ 는 두 시점의 소득 간 상관계수를 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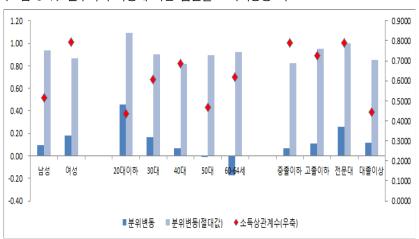
소득변동의 절대액 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컸으며 평균소득에 대비할 경우 여성은 소득이 평균소득의 약 2% 증가한 반면 남성은 1.3% 감소했다. 그러나 여성의 평균소득이 남성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득이동성이 소득격차 해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다른 집단에 비해 60대에서 소득의 절대액이 감소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평균소득 대비 상대소득의 변화를 보면 40대부터 모두 소득이 감소하고, 그 폭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에서는 소득이동이 소득지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 학력별 집단에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과 대졸 이상 의 고학력층에서 모두 상대소득의 감소가 나타났다.

소득 상관계수와 분위 변동 측면에서 본 소득이동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 5-7]을 통해 좀 더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소득분위 변동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변동폭의 절대값만을 비교한다면 남성이 여성보다 분위이동이 크게 나타나지만, 방향까지 고려할 때에는 여성의 소득분위 증가가 남성보다 크다. 물론 이는 여성의 평균 소득분위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두 시점 간 소득의 상관관계를 비교하면<sup>27)</sup> 성별 면에서는 여성이, 연 령대 면에서는 40대와 60대가, 학력 면에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에서 상 관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에 서 상관계수가 높게 되면 이는 소득이동성이 줄어듦과 동시에 소득불평 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 비교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견된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층인 중졸 이하의 소득 상관계수가 가장 높지만 대졸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상관계수가 낮아 소득격차가 고 착되는 경향을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sup>27)</sup> 소득 상관관계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경제활동상태별 비교

<표 5-8>과 <표 5-9>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후 집단별 소득이동성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표 5-8>은 근로자, 자영자, 미취업자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다. 소득 간 상관계수(ρ)의 측면에서 보면 평균 소득이 높은 취업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반대로 소득수준이 낮은 미취업자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다. 상대소득의 변화(ΔS)를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상대소득은 약 10.5%p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의 상대소득은 약 1%p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자영자를 비교할 때에는 오히려 소득수준이 높은 근로자 집단이 소득이동성은 높고 자영자가 소득이동성이 낮아 두 집단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자의 상대소득은 약 5%p 감소하고 있다. 소득분위의 변화도 변화폭 자체는 자영자 집단이 크지만 변화의 방향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분위는 상승하는 반면 자영자의 분위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표 5-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1

	근로자	자영자	취업	미취업
구성비	71.2	19.9	91.1	8.9
Yt	2,836	2,606	2,786	444
Yt+1	2,999	2,616	2,915	756
$\Delta Y$	163	11	130	312
St	110.1	101.1	108.1	17.2
St+1	110.1	96.1	107.1	27.8
$\Delta S$	0.1	-5.0	-1.0	10.5
ρ	0.62258	0.50907	0.57259	0.2811
Dt	6.28	5.55	6.12	2.64
$\Delta D$	0.12	0.00	0.10	0.49
$ \Delta D $	0.81	1.20	0.89	1.0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상용	임시	일용	자활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실업	비경활
구성비	43.1	18.4	9.2	0.5	4.0	11.9	4.0	3.1	5.8
Yt	3,671	1,718	1,285	707	5,492	2,486	71	667	325
Yt+1	3,846	1,851	1,458	752	5,310	2,494	282	1,014	619
$\Delta Y$	174	133	173	45	-82	9	211	347	293
St	142.5	66.7	49.9	27.4	213.1	96.4	2.7	25.9	12.6
St+1	141.2	68.0	53.6	27.7	195.0	91.7	10.3	37.0	22.8
ΔS	-1.3	1.3	3.7	0.3	-18.2	-4.7	7.5	11.1	10.2
ρ	0.56597	0.5063	0.56777	0.44142	0.56829	0.28619	0.04304	0.14125	0.34719
Dt	7.41	4.80	4.12	2.81	8.24	5.81	2.08	2.98	2.46
$\Delta D$	0.06	0.22	0.21	0.06	-0.19	-0.03	0.28	0.59	0.44

〈표 5-9〉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2

주:무급가족종사자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0.98 0.49

0.67 | 1.04

 $|\Delta D|$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1.36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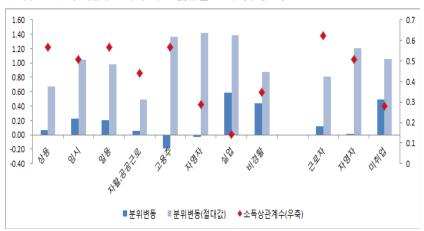
0.40

1.39

0.88

<표 5-9>는 경제활동상태를 더욱 세분화하여 근로자를 4개 집단(상용 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자활 및 공공근로)으로 구분하고 자영자를 다시 고용주와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했으며 미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활인구로 구분한 것이다. 소득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고용주,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의 순이다. 그런데 평균 소득수준은 고용주와 상용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약 5,500만 원, 3,600만 원 수준인 반면, 일용근로자는 자영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약 1,300만 원선이다. 이 집단들 사이에서는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이 소득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이동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득 점유율이나 소득분위가 하향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8]을 보면 소득분위의 변동으로 파악한 소득이동성의 집단 간 순위와 상관계수로 파악한 집단 간 순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위 변동의 절대값은 크지만 분위변동분 자체는 크지 않으며,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전기 소득을 중심으로 소폭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상용근로자, 고용주, 일용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자영자는 실제로 큰 폭의 소득 지



[그림 5-8]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집단별 소득이동성 비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위 변동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낮은 소득수준에서의 높은 이동성은 소득 지위의 불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업과 비경활처럼 소득의 상관계수는 낮으나 분위변동의 폭이 큰 경우는 실제로 두기간 사이에 소득 지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 3.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개인의 소득이동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우선 현재의 소득분포상에서 그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소득이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급격히 다른 소득지위로 이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저소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이동성에 대해 다른 전망을 지닐 수 있다. 근로연령층에서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이라면 취업과 동시에 소득이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령층이고 취업 지위의 큰 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소득이동성 역시 높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이동성은 현재의 소득분포상 위치는 물론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소득이동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지표 가운데에서 현재의 소득지위를 반영한 지표는 위의 <표5- $7>\sim<$ 표5- $9>에서 상대소득의 변화, 즉 <math>\Delta S$ 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5- $10>은 소득의 로그값을 이용하여 <math>\Delta S$ 를 구한 후, 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은 세 가지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 1은 설명변수로 전기 소득과 성별, 연령대,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을 사용한 것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 경제활동상태를 근로자, 자영자,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추가한 것이다. 모형 3은 경제활동상태를 세 가지가아닌 아홉 가지 유형으로 대체하여 투입한 것이다. 각각의 범주형 변수에서 준거집단은 전체 표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즉 남성, 40대, 고졸, 근로자, 상용근로자로 삼았다.

〈표 5-10〉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d 1	모형	형 2	모형	형 3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	0.939*	0.021	1.186†	0.026	1.962*	0.032
log개인소득	-0.129†	0.002	-0.153†	0.003	-0.245†	0.004
여성	-0.108*	0.011	-0.138*	0.011	-0.103*	0.010
20대 이하	-0.018	0.016	-0.042*	0.016	-0.084*	0.015
30대	0.023*	0.014	0.008	0.014	-0.013	0.013
50대	-0.062*	0.015	-0.045*	0.015	-0.051*	0.014
60대	-0.247*	0.027	-0.220†	0.027	-0.250†	0.026
중졸	-0.078*	0.017	-0.084*	0.016	-0.054*	0.016
전문대	0.036**	0.015	0.035**	0.015	0.011	0.015
대졸 이상	0.071*	0.013	0.070*	0.013	0.057*	0.012
자영업			-0.201	0.014		
미취업			-0.265	0.022		
임시근로					-0.142*	0.014
일용근로					-0.225†	0.019
자활공공					-0.350†	0.068
고용주					-0.047*	0.025
자영자					-0.184*	0.017
무급가족					-1.538 <b>†</b>	0.036
실업					-0.489†	0.031
비경활					-0.892†	0.029
n	15875		15875		15875	
Adj R-Sq	0.1702		0.1843		0.2612	

주: †, \*\*, \*는 각각 오차확률 1%, 5%, 10%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분석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의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소득의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았다. 연령대 면에서는 40대에 비해 다른 연령대의 소득지위의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았지만 30대는 경제활동상태를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 면에서는 준거집단인 고졸에 비해 중졸은 소득의 하향이동 가능성이 높고 대졸은 상향이동 가능성이 높았으나 전문대졸의 경우 소득이동성 차이의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에 비해 자영자와 미취업자 모두가, 그리고 상용근로자에 비해 다른 집단 모두가 소득의 하향이동성이 유의 미하게 높았다. 아홉 가지로 구분된 경제활동상태 가운데 소득 하향이동 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집단은 무급가족종사자이고 다음이 비경활, 실업자이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자영자에 비해 더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 제5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성

앞절의 분석에서는 소득지위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때 주로 기준연도, 즉 변화 이전의 시점에서 파악된 개인별 특성을 설명 변수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소득지위의 변화는 비교연도의 상태에 따라 결과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특징은 1년 사이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성은 그렇지 않다. 특히 취업 여부의 변화나 종사상 지위의 변화는 곧바로 노동소득의 변화로 연결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두 시점 사이의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소득의 변화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5-11>과 <표 5-12>는 각각 경제활동상태를 근로자/자영자/미취업으로 구분했을 때와 아홉 가지로 세분했을 때의 이행행렬이다. 이들 표에서 각 행은 기준연도의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하고 각 열은 비교연도의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하고 각 열은 비교연도의 경제활

〈표 5-1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1

(단위:%, 분위, %p)

					· -, - · · · · · - · · ·
t+1 t	변수	근로자	자영자	미취업	전 체
	구성비	65.3	2.3	3.6	71.2
근로자	$\Delta D$	0.2	-0.4	-1.3	0.1
ことが	$ \Delta D $	0.7	1.5	1.6	0.8
	$\Delta S$	1.7	0.7	-30.2	0.1
	구성비	1.8	17.5	0.5	19.9
자영자	$\Delta D$	0.0	0.1	-1.8	0.0
かるか	$ \Delta D $	1.3	1.2	2.0	1.2
	$\Delta S$	-25.4	-1.6	-46.1	-5.0
	구성비	4.1	0.5	4.4	8.9
미취업	$\Delta D$	1.3	0.7	-0.3	0.5
비케립	$ \Delta D $	1.7	1.6	0.4	1.1
	$\Delta S$	27.0	30.3	-7.1	10.5
	구성비	71.2	20.3	8.5	100.0
그리 크게	$\Delta D$	0.3	0.0	-0.8	0.1
전 체	$ \Delta D $	0.8	1.2	1.0	0.9
	$\Delta S$	2.5	-0.6	-19.3	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동상태를 의미한다. 각각의 이행 경우에 따라 소득분위의 변동폭( $\Delta D$ )은 어느 정도이고 상대소득(평균소득 대비 개인소득,  $\Delta S$ )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서 자영자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분위는 약 0.4분위 하락하면서 상대소득은 미약하게나마 상승한다. 반대로 자영자에서 근로 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소득분위의 변동은 없으나 상대소득은 비교적 큰 폭(25.4%p)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에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취업 상태에서 자영자 또는 근로자 상태로 이행한 경우 상대소득은 약 30.3%p, 27.0%p 상승한다. 반대로 자영자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한 경우는 소득점유율이 46.1%p 하락하며, 근로자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한 경우에도 큰 폭(-30.2%p)의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표 5-1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와 소득이동 2

(단위:%, 분위, %p)

										, -	· / / · • I• /
\t+1	변수	상용	임시	일용	자활	고용	자영	무급	실업	비경	전체
t	世十	(상공	임시	일광	사활	주	자	가족	결업	활	[ 신세
상용	구성비	37.7	2.8	0.4	0.0	0.3	0.5	0.1	0.5	0.8	43.1
	$\Delta D$	0.2	-0.2	-0.6		0.4	-0.6	-3.7	-2.2	-2.1	0.1
	$ \Delta D $	0.6	1.0	1.2		1.1	1.4	3.7	2.3	2.4	0.7
	$\Delta S$	0.5	-7.9	-14.1		21.3	35.8	-83.0	-52.6	-55.1	-1.3
임시	구성비	4.0	10.8	1.2	0.1	0.1	0.8	0.1	0.4	1.0	18.4
	$\Delta D$	0.7	0.3	-0.1	0.4	-1.2	-0.4	-1.6	-0.7	-1.0	0.2
	$ \Delta D $	1.1	1.0	0.8	0.5	2.3	1.4	1.8	1.3	1.4	1.0
	$\Delta S$	8.1	4.2	-3.5	7.3	-21.7	-19.9	-30.8	-14.1	-22.4	1.3
일용	구성비	0.7	1.7	5.6	0.0	0.0	0.3	0.1	0.2	0.7	9.2
	$\Delta D$	1.0	0.4	0.2	-0.6	0.2	1.1	-2.3	-0.3	-0.7	0.2
근 0	$ \Delta D $	1.2	1.0	0.9	0.6	1.2	1.8	2.3	1.2	0.9	1.0
	$\Delta S$	25.8	8.4	2.5	-1.7	0.9	20.7	-46.8	-9.0	-15.5	3.7
	구성비	0.0	0.1	0.1	0.3	0.0	0.0	0.0	0.0	0.1	0.5
자활	$\Delta D$	1.6	0.1	0.1	0.0		0.9	0.0	0.1	-0.3	0.1
공공	$ \Delta D $	1.6	0.9	0.4	0.3		0.9	0.0	0.8	0.4	0.5
	$\Delta S$	25.3	4.2	-3.9	0.9		-1.5	-10.5	0.9	-11.0	0.3
	구성비	0.2	0.1	0.0	0.0	2.8	0.6	0.1	0.0	0.1	4.0
고용	$\Delta D$	-0.7	0.3	0.5		0.0	0.1	-4.7	-4.8	-2.9	-0.2
주	$ \Delta D $	0.8	1.8	1.4		1.2	1.4	5.0	5.1	2.9	1.4
	$\Delta S$	-72.7	-14.7	3.4		-11.0	-9.2	-145.4	-115.4	-74.5	-18.2
2.2	구성비	0.3	0.8	0.2	0.0	0.7	9.5	0.2	0.1	0.3	11.9
자영	$\Delta D$	0.3	-0.3	-0.3	0.0	0.2	0.1	-3.5	-1.4	-1.5	0.0
자	$ \Delta D $	1.2	1.3	1.4	0.0	1.6	1.4	3.6	1.9	1.8	1.4
	$\Delta S$	-100.8	-10.5	-11.0	-8.8	8.5	0.4	-85.6	-22.0	-42.1	-4.7
n -	구성비	0.1	0.1	0.1	0.0	0.0	0.2	3.4	0.0	0.1	4.0
무급	$\Delta D$	2.8	1.1	0.3	0.0	5.9	3.8	-0.1	0.0	0.2	0.3
가족	$ \Delta D $	2.8	1.1	0.4	0.0	5.9	3.8	0.1	0.0	0.2	0.4
	$\Delta S$	59.0	27.7	10.1	5.2	197.8	96.5	-1.4	6.9	2.8	7.5
실업	구성비	0.6	0.9	0.2	0.1	0.0	0.1	0.0	0.4	0.7	3.1
	$\Delta D$	1.9	1.0	0.6	0.6	-0.5	1.7	-0.4	-0.5	-0.6	0.6
	$ \Delta D $	2.3	1.5	0.9	0.8	1.4	3.0	0.4	0.7	0.7	1.4
	$\Delta S$	35.1	18.7	11.5	13.9	-20.2	59.3	-4.5	-8.4	-18.0	11.1
미거	구성비	0.6	1.0	0.5	0.1	0.0	0.2	0.1	0.2	3.1	5.8
비경 활	$\Delta D$	2.1	1.3	0.7	0.5	3.1	0.3	0.0	-0.2	-0.2	0.4
	$ \Delta D $	2.5	1.6	0.9	0.5	3.1	1.1	0.0	0.7	0.3	0.9
전체	$\Delta S$	44.1	29.4	16.6	10.4	238.5	10.5	2.6	-4.0	-4.7	10.2
	구성비	44.1	18.3	8.3	0.5	4.1	12.2	4.0	1.8	6.6	100.0
	$\Delta D$	0.3	0.3	0.1	0.1	0.1	0.1	-0.4	-1.0	-0.7	0.1
	$ \Delta D $	0.7	1.0	0.9	0.4	1.4	1.4	0.4	1.4	0.9	0.9
	$\Delta S$	1.8	4.3	1.6	4.1	-2.4	3.1	-9.9	-22.4	-18.4	0.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sim7$ 차년도 원자료.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 5-12>를 살펴보면 고용주나 자영자에서 비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의 하향 이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상용근로자에서 무급가족노동이나 실직, 비경활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상대소득이 50%p 이상 감소한다.

반대로 상대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비록 빈도는 작지만) 비경활이나 무급가족노동 등에서 고용주나 자영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비경활에서 상용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약 44%p의 상대소득 증가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5-13>은 <표 5-11>을 바탕으로 이행 전후의 경제활동상 태를 모두 설명변수로 활용하여 소득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 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준거집단은 <표 5-10>에서와 마찬가지이다. 이행 이후의 경제활동상태를 설명변수로 투입한 경우 연령대의 설명력은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성을 상실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성별이나 전기 소득, 학력 변수 등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10>의모형 2와 <표 5-13>의 차이점 가운데 흥미로운 점은 이행 이전에 자영업

〈표 5-13〉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r >  t
상수	1.429	0.024	60.48	<.0001
log개인소득(전기)	-0.174	0.003	-68.24	<.0001
여성	-0.182	0.010	-18.61	<.0001
20대 이하	-0.006	0.014	-0.43	0.6669
30대	0.007	0.012	0.58	0.5612
50대	-0.011	0.013	-0.79	0.4278
60대	-0.112	0.024	-4.61	<.0001
중졸	-0.092	0.015	-6.22	<.0001
전문대	0.017	0.014	1.24	0.2135
대졸 이상	0.059	0.011	5.17	<.0001
전기 자영업	-0.020	0.021	-0.92	0.3575
전기 미취업	0.128	0.021	6.14	<.0001
다음기 자영업	-0.297	0.021	-14.18	<.0001
다음기 미취업	-1.140	0.019	-61.19	<.0001
n	15,875			
Adj R-Sq	0.34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한국복지패널」 1~7차년도 원자료.

종사자였다는 사실이 소득지위 변동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다음 기에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은 다음 기에 근로자라 는 사실에 비해 소득을 유의미하게 하향 이동시킨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 5-14>는 이행 전후의 경제활동상태를 아홉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5-14>는 앞절의 <표 5-10>의 모형 3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성별이나 전기의 소득수준은 여전히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인다. 연령대의 경우 60대,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만이 소득이동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표 5-14〉 소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

	추정계수	표준오차	t값	Pr >  t
상수	2.296	0.026	88.93	<.0001
log개인소득	-0.280	0.003	-97.99	<.0001
여성	-0.122	0.009	-14.34	<.0001
20대 이하	-0.051	0.012	-4.12	<.0001
30대	-0.013	0.011	-1.22	0.2215
50대	-0.020	0.011	-1.74	0.0827
60대	-0.118	0.021	-5.69	<.0001
중졸	-0.045	0.013	-3.5	0.0005
전문대	-0.015	0.012	-1.3	0.1938
대졸 이상	0.042	0.010	4.17	<.0001
전기 임시근로	-0.048	0.014	-3.5	0.0005
전기 일용근로	-0.065	0.020	-3.33	0.0009
전기 자활공공	-0.122	0.067	-1.83	0.068
전기 고용주	0.006	0.030	0.2	0.8419
전기 자영자	-0.117	0.022	-5.4	<.0001
전기 무급가족	-0.019	0.044	-0.44	0.6632
전기 실업	-0.186	0.026	-7.15	<.0001
전기 비경활	-0.327	0.025	-13	<.0001
다음기 임시근로	-0.087	0.014	-6.28	<.0001
다음기 일용근로	-0.173	0.020	-8.55	<.0001
다음기 자활공공	-0.174	0.067	-2.6	0.0094
다음기 고용주	-0.002	0.030	-0.08	0.935
다음기 자영자	-0.112	0.021	-5.24	<.0001
다음기 무급가족	-2.095	0.040	-52.67	<.0001
다음기 실업	-0.871	0.030	-28.87	<.0001
다음기 비경활	-1.426	0.020	-71.29	<.0001
n	15,875			
Adj R-Sq	0.52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원자료.

기준연도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표 5-10>의 모형 3과 달리 고용주이거나 무급가족종사자라는 사실이 상용근로자일 경우에 비해 소득이동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반면 다음 해의 경제활동상태는 고용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득의 하향이동을 초래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6절 소 결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소득이동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 사회의 소득이동성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지 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을 때나 일부 소득이동성 지표의 경우 소득이동성이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동성의 감소 경향 이 지배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후반의 모든 시기에 걸쳐 소득지위의 이동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이동성의 저하는 우려할 만한 사실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득이동성을 집단별로 비교하여 보면 소득이동성이 높고 낮은 것에 대해 단선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평균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소득이동성이 낮은 것은 소득격차의 확대 경향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소득수준이 양호한 집단의 소득이동성이 높다는 것은 소득지위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이동성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지위의 변동이 많은 집단과 소득지위의 하향을 경험하기 쉬운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큰 폭으로의 하향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60대 이상, 중졸 이하의 학력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시계열 간 소득의 상관계수가 커서 저소득으로의 고착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영업자나 실업자는 상대적으로 근

로자나 취업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소득의 이동성이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소득이동성의 측면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소득지위가 낮으면서 소득이동성이 동시에 낮은 집단의 이동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비교적 단기간의 동태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단기적인 소득이동을 초래하는 요인과 장기적인 소득이동을 초래하는 요 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단기적 소득이동이 경 기 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장기적 소득이동은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까지 받을 수 있다. 만일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이동에 관한 관찰이 가능하다면, 소득이동의 다양한 양상과 함의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이동에 대한 규범적 해석 도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패널자료들의 시계열이 충분히 축적될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 제6장

# 유럽 주요국 최소소득보장정책 변화의 함의

## 제1절 문제의식

인류가 빈곤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한 순간도 없지만, 빈곤의 양상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한다. 가족구조가 변화하는데 빈곤지원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던 시기에는 '빈곤의 여성화'이슈가 전면에 대두되기도 하고, 연금제도가 부실한 사회에서는 노인빈곤의 심각성이 커진다. 산업화시대에는 일할 수 있는 남성이 가족 중에 있으면 빈곤에 처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 결과적으로 근로연령대 인구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시대에는 한부모, 장애인, 노인이 위험군이었다면, 이제 탈산업화 서비스경제 시대에 빈곤 위험성의 분포는 좀 더 넓은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수시로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빈곤'은 선진국에서도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현재 취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소득을 얻지못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이다.

이 글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의 조합'을 비교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배열 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빈곤층을 위한 소득정책이라고 하면 근로 무능력 가구를 떠올리고 공공부조를 떠올렸다면, 이제는 공공부조의 성격도 변하였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등 노동시장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빈곤문제의 핵심 이슈가 근로빈곤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현상을 고려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지원제도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은 "최소소득보장(Minimum Income Protection)"이라는 개념틀로 분석할 수 있다. 자산조사에 기초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소득지원(benefits)을 일컫는데, 최후의 사회안전망(the last resort)으로 불리는 공공부조(social assistance)가 중심에 있다. 여기에 일단 취업하도록 유도하여 근로를 통해서 빈곤을 탈피하게 한다는 취지로설계된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를 덧붙여서 생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의 역할과 부담은 미숙련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노동의 규모와 수준은 '최저임금제도' 같은 노동시장제도에 다시 영향을 받는다.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설계의 특징은 단순히 빈곤에 대한 대응양식을 넘어서 해당 국가의 사회정책모델(또는 전략)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최소소득보장제도의 특징이 사회정책모델을 드러낸다는 주장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 ① 일을 하면 고용주로부터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급여를 받도록 하여 노동시장에서 저임금노동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억제하는 사회정책 방향이 있다. 이 모델에서는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은 낮을 것이다. 공공부조 수급자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 ② 다른 한편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고용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사회정책모델이 있다. 근로연계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고, 공공부조도 결과적으로 근로연계급여의 역한을 하도록 저임금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 이 틀에서 근로연계급여(그리고 공공부조)는 이미 발생한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양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의 공급이 증가하도록 작동할 수 있다.

Crettaz(2011)는 근로빈곤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저임금, 불충분한 고용 (근로), 가구의 특수한 욕구(필요)의 세 가지를 지적하였으며, 근로빈곤에

대응하는 정책유형도 최저임금, 공적소득이전, 고용확대정책(EITC)의 세가지가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는 근로빈곤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대응정책조합의 특징으로 국가들을 유형화하였는데, 그 결과는 기존의 복지국가유형론의 결과와 유사하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인 스웨덴은 인센티브와 단체협약에 기초한 고용확대정책을 가지고 근로빈곤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인 미국은 조세환급방식의 소득보조정책(EITC)을 주요 도구로 삼아 고용확대정책을 쓰고 있다. 보수주의적 조합주의의 전형인 독일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정책과 공적소득이전제도를 병렬하여 사용한다. 남부유럽 국가 중에서 스페인을 보면서, 노동시장규제와 공적소득이전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꼽았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유형화로는 독일과 덴마크 등 비잔여주의 복지국가에서 근로빈곤이 증가하는 최근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널리 알려진 독일의 변화를 보면서,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도 역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소소득보장제도의 변화가 사회전략 전반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면, 전통적인 복지국가 유형론 자체도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자산조사 기반 소득지원을 하나로 묶어내겠다는 영국의 제도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일에서 보듯이 조합주의 복지국가들에서 공공부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가? 이런 변화의 와중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건재할까? 이런 질문들이 본 연구를 이끄는 당초의 문제의식이었다. 코포라티즘의 약세와 신자유주의의 강세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공공부조의 역할이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공공부조의 고용친화성이 강조되면서 저임금과 보조금의 결합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이 증가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되, 국가 간의 차이점도 구별해 내고자 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방식의 제도 결합을 구사하는가 하는 점은 당연히 소득불평등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 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보편주의적 소득이전이 효과적이 나, 아니면 잔여주의적 소득이전 방식이 더 나으냐를 논의하는 수준은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결합양식을 살펴보는 시론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빈곤대응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 제2절 분석들과 자료

## 1.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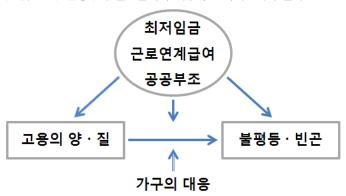
빈곤은 가구를 단위로 측정되는 소득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근로빈곤이 발생하는 기제는 <표 6-1>과 같이 개인의 고용과 가족 구성, 그리고 공적소득이전의 3단계 과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Spannagel, 2013).

빈곤정책도 각 단계의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 개인의 고용단계에서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이외에도 일자리의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각종 노동시장 규제들이었다. 둘째, 가구구성의 특징 때문에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아동과 노인을 위한 현금급여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급여들은 대체로 보편주의적 소득보장방식이기 때문에 흔히 빈곤정책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가

〈표 6-1〉 근로빈곤의 발생 기제 : 개인과 가구 수준

	welfare agency							
	고용	가족	공공복지					
개인 특성	- 저임금 - 비정규고용		- 근로연계급여 미비					
가구 관련 특성	- 낮은 고용참여	- 홑벌이 - 다수의 근로무능력 자/비취업자 가구원	- 공적이전소득 부족					

자료: Spannagel, D.(2013), "In-work Poverty in Europe: Extent, Structure and Causal Mechanisms", COPE Working paper.



[그림 6-1]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 전략

구원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나 돌봄의 사회화 정책들도 이 단계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 공적소득이전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다. 개인 수준에서 저 임금을 보충해 주는 근로연계급여(in-work benefit) 방식의 소득지원제도 와 가구단위 최저소득보장제도인 공공부조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각국이 어떤 사회정책적 전략을 가지고 불평등과 빈곤문 제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분석틀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그림 6-1 참조). 이 이론적인 프레임은 고용의 양과 질의 문제, 그리고 가구의 대응양식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일종의 '사회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한 선별적 소득지원제도이다. 공공부조는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의 생계는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사회권으로서, 최소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최근까지 공공부조를 '복지의존(welfare dependancy)'을 초래하는 문제적인 제도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장기실업과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복지의존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던 끝에 1990년대부터는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활성화조치(activation)가 강화되었다.

공공부조가 강력한 활성화조치를 수반하여 수급자들의 고용률을 높인

다면 빈곤완화는 당연히 따라올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럽에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빈곤율은 전혀 낮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불평등수준(지니계수)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Marx & Nolan, 2012; OECD, 2011). 고실업 · 저고용의 문제를 얼마간 해소하고 보니 이번에는 저임금 일자리와 근로빈곤의 문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양한 통계수치들로 확인되는 바이며, 기존연구들이 이미 충분히 밝히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근로빈곤 확대 현상이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정책만이 아니라 빈곤가구에 대한 소득이전제도 그자체의 성격에 따라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활성화조치가 빈곤인구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 일이나(work first)' 일단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이것을 특정한 형태의 소득지원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이 취해진다면, 그 결과는 고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들을 가지고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유럽 국가들에서 근로빈곤(취업빈곤과 저임금고용)이 증가하였는가? 특히 어떤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가?

둘째, 다음 두 가지 사회정책모델이 구별될 수 있는가?

- ① 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보충급여 형식의 공공부조(와 근로연계급여) 의 결합
- ②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과 근로연계급여 성격을 최소화한 공공부조제 도의 결합

셋째, 위의 두 모델의 선택과 근로빈곤율 간 상관관계가 있는가? 즉 근 로유인방식의 급여는 그 자체로 저임금고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소득 층지원 사회지출을 늘리면서도 결과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해소할 수 없 는 악순화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근로소득)과 공공부조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의 규모

와 공공부조 수급이 얼마나 쉽게 가능한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 2. 분석대상 국가와 자료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를 분석대상 국가로 설정하였다. 전통적으로 공공부조제도 의존성이 낮은 사민주의 복지국가 두 나라와 반대로 공공부조 의존성이 높은 영국을 포함시켰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는 모두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국가 유형에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들 국가에서 소득보장체계의 이중화(Du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는바(Palier & Thelen, 2012), 같은 유형 내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경향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3개국가를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독일은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네덜란드는 매우 낮은 근로빈곤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자료로는 OECD DB와 EUROSTAT 등 국제기구의 공식통계를 일차적으로 사용하되,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각국의 개별 연구자들이 모여서 비교연구를 목적으로 자료를 구축한 The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 dataset(CSB-MIPI)<sup>28)</sup>을 사용하였다(부록참조). CSB-MIPI는 최소소득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에 관련된 사항, 근로연령대 미취업자와 노인의 공공부조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충적으로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자산조사 있는 보충급여,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도 다룬다. 조사시점은 지금까지 1992, 2001, 2009, 2012년의 4회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국가별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다.

<sup>28)</sup> Van Mechelen, N. S. Marchal, T. Goedemé, I. Marx, and B. Cantillon(2011), "The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MIPI) dataset," CSB Working Paper No. 11/5, Antwerp: University of Antwerp, Available at: http://www.centrumvoorsociaalbeleid.be/sites/default/files/CSB%20Working%20Paper%2011%2005\_April%202011.pdf

## 제3절 근로빈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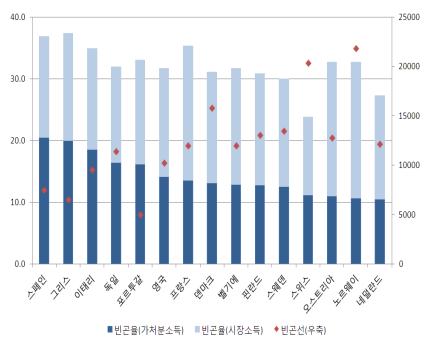
[그림 6-2]는 주요국의 근로연령대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유럽의 주 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대상연령대 인구 중에서 10~20%가 빈곤한 것으 로 나타난다. 관심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이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네 덜란드가 가장 낮은 빈곤율을 보인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라면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 림 6-3 참조). 독일은 2007년을 기점으로 빈곤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다른 보수주의와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근로연령대 빈곤율을 보였으나 최근에 영국보다도 더 높은 근로빈곤율을 보인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낮은 수준의 근로연령대 빈곤율을 보이던 국 가이지만 관찰기간 중에 빈곤율이 계속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네덜란 드만이 관찰국가 중 유일하게 낮은 수준의 근로빈곤율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연령대 빈곤율의 증가와 고용률 간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고 용률을 살펴보면, 관찰 기간 중에 네덜란드와 독일의 고용률 증가가 가장 뚜렷하다(그림 6-4 참조). 네덜란드는 1990년대 중후반에 한 번 증가하고 2000년대 후반에 다시 한 번 뚜렷한 증가를 보인다. 독일은 2000년대 중 반 이후의 증가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 덴마크는 2008년부터 최근 까지 고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관찰한 국가들만 보면, 근 로연령대 빈곤율과 고용률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고용률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빈곤율도 증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사이에는 취업빈 곤율의 차이라는 요인이 있다(그림 6-5 참조). 근로연령대 전체의 빈곤율 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취업빈곤율의 증가가 가장 드라마틱하다. 이 정도 는 아니지만,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취업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근로연령대 빈곤율이 증가한 국가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을 고용률의 변화추이에서 찾기는 어렵다. 독일과 덴마크는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스웨덴은 증가하지 않았고,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네덜란드에서는 빈곤의 심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근로연령대 빈곤율은 취업빈곤율이나 노동시장 임금격차 추이와 더 분명한 관계를 보인다(임금격차 그림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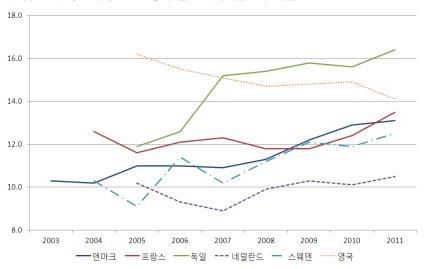
고용률과 빈곤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후반에 뚜렷한 고용률 증가를 나타낸 독일과 네덜란드 중에서 독일은 빈곤율의 증가를 함께 경험한 데 비하여, 네덜란드는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차이는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 이 두 국가의 고용률 증가를 견인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은 다양한 통계지표로 드러나는 바인데, 고용의 질이나 이후 저소득층 지원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덴마크와 스웨덴은 고용률이 워낙 높은 편이긴 하였으나, 추가적인 고용증가 없이 빈곤율만 증가하였다. 이 두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림 6-2] 근로연령대 빈곤율과 빈곤선(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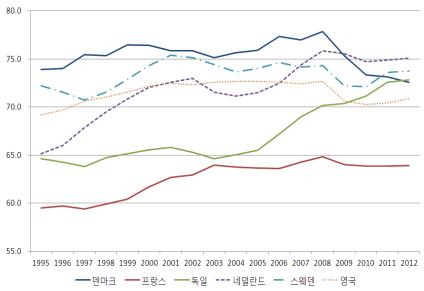
자료: EUROSTAT.

(그림 6-3) 주요국의 근로연령대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EUROSTAT.

[그림 6-4] 주요국의 고용률 추이



자료: EUROSTAT.

9.0 8.0 7.0 6.0

[그림 6-5] 주요국의 취업빈곤율

자료: EUROSTAT.

2004

2005

2006

2003

4.0

# 제4절 최소소득보장제도의 국가별 특성 비교

2007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2008

2009

2010

2011

최소소득보장제도가 저임금근로일지라도 취업 자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전에 연구대상 국가의 최저임금과 공공부조액 수준과 이 제도의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표 6-2>는 최저임금이나 공공부조의 액면금액을 바로 평균임금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조세와 다른 공적이전소득을 감안한 가처분소득을 평균임금액과 비교한 것이다. 물가수준을 고려한 최저임금액은 네덜란드가 프랑스보다 높지만(부도 6-3 참조), 평균임금과 비교한 상대적인 수준은 프랑스가 더 높다.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법정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이다. 하지만 최소소득보장제도 프로젝트(CSB-MIPI)는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과 견주어 제도의 특성을 이

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임금수준을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설정하였다.<sup>29)</sup> 독일의 경우는 시간당 7.5유로를 최저임금수준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최근 최저임금제도 도입 논의에서 흔히 가정하여 사용하는 금액이며 업종별 최저임금에서 볼 수 있는 하한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경우는 소매업 미숙련노동자의 연간임금이 192,825DKK인 점과 판매서비스직의 3/4선에 해당하는 임금이 195,000DKK인 점을 고려하여 후자를 최저임금선으로 설정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는 지방정부 서비스직의 최저협약임금이 2011년에 16,070SEK/연인 점과 호텔·음식업종의 최저협약임금이 17,727SEK/연인 점을 소개하였지만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규모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와 프랑스이고 그 다음이 네덜란드이다.30) 그런데 프랑스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011년 기준 10.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1) 최저임금액의 수준이 높지만 그만큼 이 수준의 임금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많다는 뜻이다.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서도 해당근로자의 수도 많지 않다. 영국은 비교적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부모 여성의 경우를 보면,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는 한부모 여성에게 부가되는 급여가 커서 결과적으로는 비교국가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가처분소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공공부조를 수급할 경우, 받게 되는 급여액의 상대적인 수준은 남성의 경우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높고 독일과 영국에서 낮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중간쯤에 있다. 한부모 여성이라면 덴마크와 영국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와 네덜

<sup>29)</sup> 실제로 참여한 연구자 명단은 본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록> 참조.

<sup>30)</sup>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해 온 데 비해서 프랑스는 관찰기간인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을 경험하였다. 영국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도 6-3 참조).

<sup>31)</sup> 원출처는 DARES, "Les beneficiaires de la revalorisation du Smic au 1er janvier 2011," DARES Analyses, n°074, septembre 2011, http://travail-emploi.gouv.fr/IMG/pdf/2011-074-2.pdf

#### 〈표 6-2〉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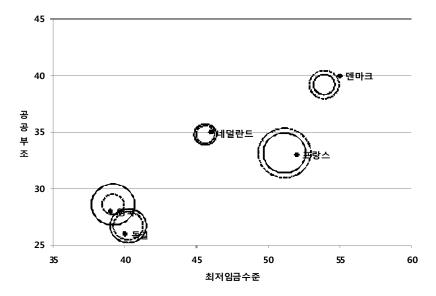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최저	35세 독신 남성의 경우	(40)	(55)	52	46	-	39
	35세 한부모 여성의 경우	(46)	(60)	69	58	1	74
	최저임금노동자(임금근로자 대비)	(6)	(6)	10.6	3.8	ı	4.4
77	35세 독신 남성의 경우	26	40	33	35	37	28
무소	35세 한부모 여성의 경우	44	69	49	52	51	58
	수급자(근로연령대인구 대비)	7.3	4.3	8.6	4.5	2.5	8.8

주:1) 최저임금근로자와 공공부조 수급자 가처분소득 수준은 평균임금대비 비율임.

2)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SCB-MIPI 프로젝트 연구자가 최저임금수준을 설정함. 독일은 7.5EURO/h, 덴마크 195,000DKK/year, 스웨덴 16.070SEK/vear. 설정 근거는 본문 참조.

자료: CSB-MIPI; 영국의 공공부조 수급자는 Bahle et al.(2011)에서 가져옴.

#### [그림 6-6] 최저임금 노동자와 공공부조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수준 및 해당자 비율



주: <표 6-2>를 그림으로 전환한 것임. 가로축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액의 비율. 세로축은 평균임금 대비 독신남성의 공공부조 수급액 비율. 동그라미의 크기는 해당자의 비율을 나타냄. 점선 동그라미는 최저임금 노동자, 실선 동그라미는 공공부조 수급자.

〈표 6-3〉 공공부조 수급자의 최저임금수준 취업에 따른 가처분소득 변화

(단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35세 독신 남성							
(평균임금대비) 반일제 취업	35	45	49	38	41	41	
(평균임금대비) 전일제 취업	40	55	56	46	53	48	
(공공부조대비) 반일제 취업	132	110	146	110	111	144	
(공공부조대비) 전일제 취업	151	136	169	131	144	170	
35세 한부모 여성 (2세 자녀)							
(평균임금대비) 반일제 취업	42	60	64	54	50	85	
(평균임금대비) 전일제 취업	46	60	74	58	67	85	
(공공부조대비) 반일제 취업	95	87	130	103	97	147	
(공공부조대비) 전일제 취업	104	87	150	112	131	148	

주: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SCB-MIPI 프로젝트 연구자가 최저임 금수준을 설정함. 독일은 7.5EURO/h, 덴마크 195,000DKK/year, 스웨덴 16,070 SEK/year, 설정 근거는 본문 참조.

자료: CSB-MIPI.

란드, 스웨덴이 중간수준에서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독일은 비교적 낮은 금액을 받는다. 공공부조의 수급률을 보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그 다음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스웨덴이 가장 낮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 표 6-3>은 공공부조를 받던 수급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가처분소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각국의 제도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는 근로연계급여(공공부조의 보충급여 포함)와 취업 성공보너스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저임금 취업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감안하였다. 최저임금 일자리에 반일제로 취업할 경우 발생하는 가처분소 득의 변화는 각국이 'work first' 정책을 취하는 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표 6-2>에 따르면, 35세 독신 남성이 공공부조를 받는 경우, 독일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26%를 받는다. 덴마크에서는 평균임금의 40%수준의 공공부조를 받고, 네덜란드는 35%수준이다. 이들이 최저임금수

준의 저임금 일자리에 전일제로 취업을 한다면, 임금에 더하여 근로연계 급여와 공공부조의 보충급여를 합쳐서 받게 되는 가처분소득 총액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높다(표 6-3 참조).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순위이다. 반대로 네덜란드나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저임금 파트타임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이 미취업 상태로 공공부조를 받는 것에 비해서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10% 정도에 불과하다.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만들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파트타임 일자리에 취업하면 공공부조를 받는 것보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이다. 영국의 경우는 전일제 근로를 하는 것과 반일제 근로를 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제도가 보내는 메시지는 아무 일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는 한부모 여성에게는 임금노동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공공부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보여주는 것이 <표 6-4>와 <표 6-5>이다. <표 6-4>는 35세 독신자가 공공부조를 받다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파트타임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어떤 급여를 더 받아서 얼마의 가처분소득을 획득하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다. 덴마크, 프랑스, 영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반일제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은 공공부조를 받을 때의 가처분소득과 비슷한 데 비해서 독일과 스웨덴은 근로소득이 더 많고, 네 덜란드는 근로소득이 오히려 더 적다. 하지만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은 상당한 액수의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에서 주는 보충급여는 독일이 주거급여의 형태를 띠고 영국이 보너스의 형태를 띤다는 차이점 이 있으나 대체로 모든 국가에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조에서 주는 급여액은 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에서 높고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서 낮다. 여기에 조세를 고려해 보자.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수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지 않지만, 덴마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반일제 일자리에 취업할 때 올 리게 되는 가처분소득은 공공부조를 수급할 때에 비해서 영국과 독일. 프 랑스에서 높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낮다. 여러 가지 혜택을 붙여서 저 임금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독려하는 인센티브 구조는 영국과 독일, 프랑 스에서 발견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4인 가구에서 한 명이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최저임금 일자리의 근로소득이 4인 가족 공 공부조액에 가장 근접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여기에 주거수당과 아동수 당과 같은 보편급여를 받고, 추가로 공공부조에서 주는 보충급여까지 받 아서 최저임금 수준 홑벌이 4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공공부조를 받을 때에 비해서 139% 정도로 높아진다. 최저임금액이 높고 공공부조의 보충 급여보다는 보편수당을 통한 소득보전액이 크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저소 득층 지원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편 독일은 공 공부조의 보충급여와 주거급여를 통해서, 그리고 영국은 공공부조의 보 충급여와 빈곤층 아동수당을 통해서 소득지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최저 임금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표 6-4〉 독신 공공부조 수급자가 반일제 최저임금수준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2012년)

(단위:개별국가 화폐단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공공부조 수급자		6,828.0	99,433.8	8,572.7	11,396.0	84,720.0	5,716.0
근로소득		7,794.0	96,232.3	8,390.2	9,405.0	9,405.0 92,877.1	
주거수	당	-	4,404.0	2,910.6	168.0	-	2,906.0
77	보충급여	646.6	49,877.0	3,295.2	2,975.0	22,784.8	-
공공 부조	주거급여	3,420.0	_	_	_	-	-
12	취업보너스	_	_	_	_	-	2,083.0
기타 -	부가 소득	_	_	-	-	-	100.0
	사회보험	-1,433.8	-14,087.9	-1,819.8	_	-	-
조세/	소득세	_	-26,589.8	-58.9	_	-11.6	-
분담금	[in work benefit]	_	_	_	_	[8,018.8]	-
Д	지방세/기타조세	_	_	-153.6	_	-	-531.0
취업지	·가구 가처분소득	10,426.8	109,835.6	12,563.7	12,548.0	115,650.3	10,099.0
가처분소득 변화		1.53	1.10	1.47	1.10	1.37	1.77

주: <표 6-2> 참조.

 $\langle \pm 6-5 \rangle$  홑벌이 4인 가구, 1인 소득자가 최저임금수준 전일제 취업(2012년)

(단위:개별국가 화폐단위)

		독일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공공부조 수급자		18,204.0	263,009.0	16,649.9	20,774.5	213,276.0	15,357.0
근로소득	Ę.	15,588.0	192,824.6	16,780.4	18,810.1	185,754.0	11,083.0
주거수당	रे	_	1	4,159.2	1,032.0	18,000.0	71.9
공공	보충급여	1,450.4	1	4,093.1	_	1	2,748.0
부조	주거급여	3,660.0	_	-	_	-	_
7 J]/	사회보험	-3,191.6	-21,244.0	-3,639.7	-310.3	-13,002.8	-419.0
조세/ 분담금	소득세	_	-22,410.6	-53.4	-1,654.4	_	-596.0
7 D D	지방세/기타조세	-	_	-211.2	_	-22,802.1	-1,189.0
아동	보편급여	4,416.0	21,264.0	1,509.4	1,993.5	27,000.0	1,755.0
수당	빈곤층	_	_	585.6	1,709.0	_	5,655.0
취업자가구 가처분소득		21,922.8	170,434.0	23,223.4	21,579.8	194,949.1	19,108.9
가처분스	소득 변화	1.20	0.65	1.39	1.04	0.91	1.24

주: <표 6-2> 참조.

개별 국가별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은 최저임금수준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둘 다 낮은 편이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와 공공부조 수급자는 많은 편에 속한다. 두 급여수준과 해당자를 비교하면, 최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work first' 전략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없다.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시간당 7.5유로를 받는 일자리 정도로 볼 사회적 배경이 있으므로 이 수준으로 설정해 볼 수 있는데,32) 이 수준은 영국을 제외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 낮게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임금수준 이하의 근로자도 전체임금근로자의 6%로 많은 편에 속한다. 즉 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다. 한편 공공부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이 많은 것도 아니다. 비교국가 중에서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수급자는 근로연령대 인구 대비 7.3%로 비교국가들 중 가장 많다. 요컨대, 저임금ㆍ저소득 인구가 비교국가들 중에 많고 이들을 공공부조로 지원하고 있는 구

<sup>32)</sup> CSB-MIPI 자료 참조.

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임금 일자리, 심지어 최저임금수준 반일제 일자리라도 일을 하는 것이 공공부조를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하고 있다. 특히 독신자의 경우가 그러하다.<sup>33)</sup> 공공부조 급여액이 낮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인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충급여도 주기 때문에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와 관련성이 높은 제도가 실업부조(UB2, 또는 BIS Basic Income Support for Jobseekers)이다. 실업부조 수급자는 2012 년 기준으로 615만 명으로 근로연령대 인구의 7.3%에 해당한다. BIS는 원래 명칭이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보조금'이지만 수급자 중에는 저소 득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연계급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급자의 약 30%에게 이 제도는 근로연계급여이다. 또한 이 제도는 강한 활성화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엄격한 제재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sup>34)</sup> 독일에서 저임금 일자리가 급증한 것은 미니잡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 때문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UB2가 기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덴마크는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둘 다 높은 편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공공부조 수급자 규모는 비교국가들 중에서 중간 수준이다. 최 저임금이나 반일제라도 일을 하라는 인센티브 구조는 아니다. 특히 한부 모 가구나 4인 가족은 여전히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다. 'work first' 구조라고 보기는 힘들다.

덴마크에도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없다.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최저선을 설정할 수 있는데,<sup>35)</sup> 이럴 경우 덴마크의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은 비교국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즉

<sup>33)</sup> 한부모 여성은 그렇지 않다.

<sup>34)</sup> 구직활동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훈련코스에 참여하지 않거나, 알선한 일자리를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때 3개월간  $10\sim60\%$ 의 급여를 삭감하는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2011년에 총 91만 회의 제재조치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59만 회는 10% 삭감하는 가벼운 조치였다.

<sup>35)</sup> CSB-MIPI 자료 참조.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수준 노동자의 비율은 6%로 높은 편이다. 호텔이나 레스토랑처럼 흔히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도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주지만, 이런 저임금 일자리들이 덴마크에서도 크게 늘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공공부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도 비교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공공부조를 받은 사람은 보충급여를 포함하여 전체인구 중에서 6.6%, 근로연령대 인구에서는 4.3%를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는 공공부조 선이 높아서 취업빈곤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높아서 저임금 노동자의 부담이 공공부조로 넘어오는 정도는 아직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근로연령대 인구의 공공부조 수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Bahle et al., 2011), 이에 비하여 최근에 공공부조 수급자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는 법정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도 매우 크다. 공공부조 급여액은 비교국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과 공공부조 금액 구조에 더하여, 보충급여액이 크고 소득세가 낮은 제도적 특성이 더해져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라도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매우 강하다. 프랑스에서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급여 성격의 급여는 'RSA active'와 PPE의 두 가지가 있다.36) 2012년 3월 현재 약 2백만 명의 RSA 수급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자리가 없는사람이 1.37백만 명(RSA sociale), 일을 조금 하는 사람이 22만 명(RSA sociale+RSA active), 그리고 근로를 하면서 RSA를 받는 사람이 47만 명이다(RSA active). 이 수치를 전체 피용자 수 23.9백만 명으로 나누면 8.6%에 해당한다. 'RSA'를 수급하는 사람에게 PES에 등록하고 적극적인 구직

<sup>36)</sup> RSA active는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성격이고 PPE는 ETTC 성격이다. 이 두 가지를 누적적으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RSA 급여를 PPE 급여에서 공제한다. 독신 가구인 경우에만 PPE를 일부 수급하게 되고 다른 가구구성일 때는 RSA 급여가 PPE보다 많다.

활동을 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도 수급자는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PES 가 제안하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 없다. 통근거리나 파트타임 여부 같은 조항들은 미리 초기단계에서 PES와 계약을 맺을 때 정한다.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전체임금근로자의 3.8%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공공부조액은 중간 정도이고 수급자도 많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구도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단 하고 보라는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서 전일제 최저임금노동자는 2010년에 14만 6,000명으로 전체의 3.8%이다. 공공부조 수급자는 약 35만여 명으로 근로연령대 인구의 4.5%이다. 이 비율은 2009년까지도 4%를 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증가하였다. 공공부조 대비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서 저임금 일자리취업 유인이 적다고 판단된다. 법적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자는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수용하도록 되어 있다.

스웨덴에는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없다. 2011년에 단체협상이 맺어진 업종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정해진 것은 호텔·식당업종에서 연간 17,727SEK이다. 호텔·식당업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6%였고, 소매업 부문에서는 18%였다. 공공부조 수급액의 수준은 관찰대상 국가 중에서 중간 정도이며, 수급자는 적은 편에 속한다. 인센티브 구조를 살펴보면 저임금 반일제 취업을 할 유인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독신의 경우, 전일제 일자리라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할 만한 구조이다. 4인 가족의 경우나 한부모 가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소득보장을 권리로 접근하는 것 또한 분명한 특징이다. 공공부조를 받는 35세 독신남성의 경우, PES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도 의무는 아니다. 제재조치를 담은 계약이나 약정도 물론 없다. 수락해야 하는 일자리의 범위는 단체협상의 효력이 미치는 일자리로 한정된다.

영국은 최저임금액과 공공부조 금액이 둘 다 낮은 편에 속하므로, 최저임금 근로자와 공공부조 수급자는 적은 편이다. 두 금액의 상대적인 수준

으로 볼 때, 저임금 일자리라도 일단 하고 보는 것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전형적인 'work first' 구조이다.

영국에는 법정최저임금제도가 있으며, 최저임금액 수준이 낮은 편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는 4.4% 정도로 다른 비교국가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다. 공공부조는 income-based JSA와 Income Support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전자를 받게 되는데, 2012년 4월 현재 수급자는 1.61백만 명으로 노동력인구의 4.9%에 해당한다. 공공부조 금액은 낮은편이다. 공공부조 대비 최저임금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높아서 저임금으로라도 일할 인센티브가 매우 강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work first'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저소득 취업자에게는 강력한 취업보너스 또는 공공부조의 보충급여, 빈곤층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등 부조성격의 다양한 보충급여를 제공하여 가처분소득을 높여준다. 활성화조치 또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된다.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는 다양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당연히 수급자는 PES에 등록해야 한다.

# 제5절 소 결

빈곤이 일자리 부족에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간주되던 시기가 있었다. 장기실업과 빈곤, 그리고 공공부조 장기수급이 하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다양한 모습이라고 이해되었고, 이것이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간 유럽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빈곤과 소득불평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근로연 령대 인구의 빈곤이 증가하였고, 심지어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도 증가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저숙련 노동자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Esping-Andersen et al.,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 급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일자리일지라도 빨리 취업하도록 강제하고, 부부가구의 여성배우자는 저임금이건 말건 'second earner'가 되라고 독

려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취업빈곤이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한데, 이러한 추세의 기저에는 물론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라는 원인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는 반드시규제가 적고 서비스업 중심인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덴마크나 독일에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가 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x & Nolan, 2012).

일을 하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억지로 노동력을 팔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향은 한 줄기의 정책 흐름을 형성한다. 이와는 지향을 달리하는 다른 하나의 사회정책 흐름은 저임금 일자리일지라도 고용을 늘려서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연계급여 (in-work benefit)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진다. 시장은 나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다. 유럽국가들 중 상당수가전자에서 후자로 사회모델을 전환해 왔다. 독일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될 것이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들 중에서 덴마크와 스웨덴도 이런 변화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큰 시대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네덜란드는 차별성을 보여준다.

필자는 유럽국가들의 이러한 최소소득보장제도의 변화 흐름을 개별적 인 정책의 변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읽 는다. 특히 공공부조제도와 근로연계급여는 저임금 일자리와 빈곤층 중 가라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의 변화라고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는 최저임금정책이나 각종 일자리정책과 결합하여 근로빈곤 확대라는 사회현상을 초래하는 기제의 일부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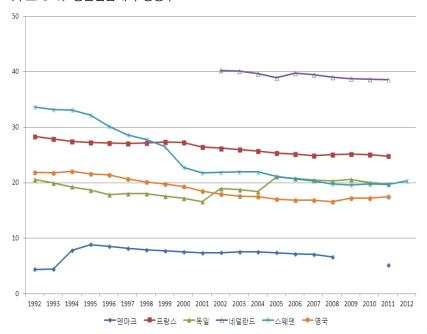
유럽에서 장기실업과 공공부조 의존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무 일자리나' 취업우선 정책으로 대응한 지 20여 년이 지났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실업은 줄였으나 빈곤은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본연구를 통해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전략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선국가들에서 빈곤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났다.

본 연구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한 계를 가지고 있다. 근로빈곤과 저임금 일자리의 관계에 대한 접근은 두 가지 분석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시간당 일자리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 다른 하나는 연간소득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자리의 질 하락으로 인한 근로빈곤과 연관성이 높고, 후자는 이에 더하여 일자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근로빈곤에 주는 함의가 크다. 이 두 접근방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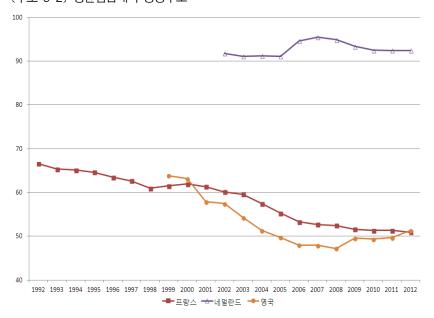
또한 과거라면 몰라도 최근에는 공공부조와 최저임금 일자리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아니다. 장기수급자에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자리'는 처음에는 과거 일자리에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지만, 몇 개월 지나면 이런 선택이 불가능해지는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가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임금수준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급여액의 수준이 개인의 행위양식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유지하고 분석하였다. 향후연구에서는 활성화정책의 강도, 즉 수급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를 함께 고려하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사용한 CSB-MIPI 자료는 전체 EU 국가와 노르웨이, 미국이 참여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모두 28개국이 최소소득보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가구유형과 소득수준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감안한 가처분소득의 격차를 살펴볼 수 있으며, 노인가구와 근로연령대 가구에 주어지는 급여의 차이를 분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럽의소득보장제도와 사회모델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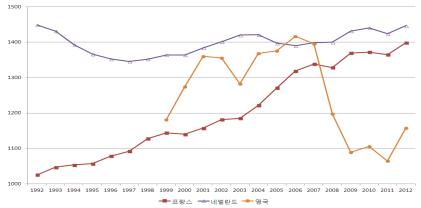
[부도 6-1] 평균임금대비 공공부조



[부도 6-2] 평균임금대비 <del>공공</del>부조



[부도 6-3] 최저임금(2012년 CPI와 Euro current exchange rates 고려)



자료: CSB-MIPI.

〈부표 6-1〉 공공부조 수급자가 최저임금수준의 일자리로 이동한 경우 가처분소득 (단위: 유로, %) 〈35세 독신 남성〉

	DE	DK	FR	NL	SE	UK		
공공부조	7,908	99,434	8,630	11,396	104,028	7,000		
최저임금	11,911	135,655	13,480	14,931	0	9,717		
공공부조→반일제최저임금일자리	10,427	109,836	12,564	12,548	115,650	10,099		
공공부조→전일제최저임금일자리	11,911	135,655	14,563	14,931	149,933	11,902		
ndi SA - in euro	7,908	13,358	8,630	11,396	11,952	8,633		
ndi MW - in euro	11,911	18,224	13,480	14,931	0	11,983		
ndi SAMW_50 - in euro	10,427	14,756	12,564	12,548	13,287			
ndi SAMW_100 - in euro	11,911	18,224	14,563	14,931	17,226			
ndi SA - in PPP	7,765	9,411		10,543	9,306	8,010		
ndi MW - in PPP	11,697	12,840	12,354	13,814	0	11,119		
ndi SAMW_50 - in PPP	10,239			11,609		11,556		
ndi SAMW_100 - in PPP	11,697	12,840	13,347	13,814	13,413	13,619		
ndi SA - % 평균임금대비	26	40		35	37	28		
ndi MW - % 평균임금대비	40	55		46	0	39		
ndi SAMW_50 - % 평균임금대비	35	45	49	38	41	41		
ndi SAMW_100 - % 평균임금대비	40	55		46	53	48		
ndi SA - % 빈곤선대비	69	84	72	94	81	78		
ndi MW - % 빈곤선대비	104	115	112	123	0	109		
ndi SAMW_50 - % 빈곤선대비	91	93	105	103	90	113		
ndi SAMW_100 - % 빈곤선대비	104	115	121	123	116	133		
ndi SAMW_50 - % 공공부조대비	132	110	146	110	111	144		
ndi SAMW_100 - % 공공부조대비	151	136	169	131	144	170		
ndi MW - % 공공부조대비	151	136	156	131	0	139		
ndi SA - % 최저임금대비	66	73	64	76	_	72		
ndi SAMW_50 - % 최저임금대비	88	81	93	84	-	104		
ndi SAMW_100 - % 최저임금대비	100	100	108	100	_	122		

##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 〈35세 한부모 여성(2세 자녀 1명)〉

DE DK FR NL SE							
공공부조	13,232		13,403		150,588	11,373	
최저임금	13,818	154,023	18,871	19,176		14,501	
공공부조→반일제최저임금일자리	12,618	153,530	17,381	17,606	146,482	16,771	
공공부조→전일제최저임금일자리	13,818	154,023	20,119	19,176	197,436	16,834	
ndi SA - in euro	13,232	23,739	13,403	17,155	17,301	14,026	
ndi MW - in euro	13,818	20,692	18,871	19,176	0	17,884	
ndi SAMW_50 - in euro	12,618	20,626	17,381	17,606	16,829	20,683	
ndi SAMW_100 - in euro	13,818	20,692	20,119	19,176	22,683	20,761	
ndi SA - in PPP	12,993	′	12,284	15,872		13,014	
ndi MW - in PPP	13,569	14,578	17,295	17,741		16,593	
ndi SAMW_50 - in PPP	12,391	14,532	15,929	16,289		19,191	
ndi SAMW_100 - in PPP	13,569	14,578	18,438	17,741	17,662	19,263	
ndi SA - % 평균임금대비	44	69	49	52	51	58	
ndi MW - % 평균임금대비	46	60	69	58	0	74	
ndi SAMW_50 - % 평균임금대비	42	60	64	54		85	
ndi SAMW_100 - % 평균임금대비	46	60	74	58		85	
ndi SA - % 빈곤선대비	116	150	112	141	117	127	
ndi MW - % 빈곤선대비	121	131	157	157	0	163	
ndi SAMW_50 - % 빈곤선대비	110	130	145	144		188	
ndi SAMW_100 - % 빈곤선대비	121	131	168	157	153	189	
ndi SAMW_50 - % 공공부조대비	95	87	130	103		147	
ndi SAMW_100 - % 공공부조대비	104	87	150	112	131	148	
ndi MW - % 공공부조대비	104	87	141	112	0	128	
ndi SA - % 최저임금대비	96	115	71	89	_	78	
ndi SAMW_50 - % 최저임금대비	91	100	92	92	-	116	
ndi SAMW_100 - % 최저임금대비	100	100	107	100	_	116	

## 〈부록〉CSB-MIPI 자료 설명<sup>37)</sup>

- 최소소득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담은 DB
- For 취업자: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에 관련된 사항
- For 근로연령대 미취업자, 노인: 공공부조
-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자산조사 있는 보충급여, 아동수당 등 포함
- 1992년 EU 15개국에서 시작. 2001년부터 모든 EU 국가(몰타와 키 프로스 제외) + 노르웨이, 미국
- 조사시점: 1992, 2001, 2009, 2012
- 2012년
- 2012년 1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소득보장 국가 간 비교
- 2001년 이래의 추세 파악
- 공공부조에 부과된 조건 연구(활성화 조건과 내용, 제재조치 등)
- 활성화조치 참여하거나 저임금 일자리 수락할 때 발생하는 인센티브
- 재정(경제)위기가 최소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
- Informants: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팀
- Denmark ABRAHAMSON Peter, University of Copenhagen
- France MATH Antoine, Institut de Recherches Economiques et Sociales(IRES), Paris
- Germany BAHLE Thomas, Mannheimer Zentrum für Europaische Sozialforschung(MZES) & HUBL Vanessa, Mannheimer Zentrum für Europaische Sozialforschung(MZES)
- Netherlands GOUDSWAARD Kees, Leiden University & VAN

<sup>37)</sup> Van Mechelen, N. S. Marchal, T. Goedemé, I. Marx, and B. Cantillon(2011), "The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MIPI) dataset," CSB Working Paper No. 11/5. Antwerp: University of Antwerp. Available at: http://www.centrumvoorsociaalbeleid.be/sites/default/files/CSB%20Working%20Paper%2011%2005\_April%202011.pdf

## VLIET Olaf

- Sweden NELSON Kenneth, Institute for Future Studies/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OFI), Stockholm
- UK BRADSHAW Jonathan, Social Policy Research Unit (SPRU)/ University of York

- 강두용·이상호(2012), 「한국경제의 가계, 기업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현상, 원인, 함의」, 산업연구원.
- 장신욱(2011),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이동성 변화 실태 및 요인」, 『경제발전연구』 17(1), pp.1∼28.
- \_\_\_\_(2012), 「2000년대 후반 불평등 심화의 특징」, 한국사회정책학회 춘 계학술대회(2012. 6. 1) 발표문.
- 강신욱·이병희·장수명·김민희(2010), 『고용·복지·교육 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낙년(2012a), 「한국의 소득집중도 추이와 국제비교, 1976~2010: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 『경제분석』 18(3), pp.75~114.
- \_\_\_\_(2012b),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Working paper 2012-07, 낙성대경제연구소.
- \_\_\_\_(2013), 「한국의 소득분배」, Working paper 2013-06, 낙성대 경제 연구소
- 김범식(2011), 「서울시 가계의 소비구조 분석」 SDI 정책리포트 제95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상조(2012),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 김희삼(2009), 「한국의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문혜정·황상필(2012), 「중장기 소비구조 전망-인구 및 소득분배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 박기백·성명재·김종면·김진(2006),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현물급여 및 간접세 포함』, 한국조세연구원.
- 배진한(1989),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과 한국경제에서의 그 실증적 적합성 검토」, 충남대 경영경제연구소, 『경제논

- 집』5, pp.1~40.
- 석상훈(2009),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변화요인」, 『사회보장연구』 25(1), pp.25~44.
- 성명재(2007),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재정포럼』130, pp.28~41.
-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건범(2009), 「한국의 소득이동: 현황과 특징」, 『경제발전연구』 15(2), pp.55~77.
- 이병희(2013), 「대안적 고용모델의 모색」, 제7회 대안담론포럼(2013. 8. 23) 발표문.
- 이현주·정은희·이병희·주영선(201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 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2012),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와 구성요소에 따른 불평등 수준」, 『동향과 전망』85, pp.131~163.
- 장지연·이병희(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선택」, 『민주 사회와 정책연구』 2013년 상반기(통권 23호), pp.71~109.
- 최지은 · 홍기석(2011), 「우리나라의 세대간 소득이동성 분석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7(3), pp.143~16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한국복지패널」1~7차년도 워자료.
- 한국은행(201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한국은행.
- 홍민기(2011), 「노동소득 분배율의 경기변동성」, 『사회경제평론』 35, pp.49 ~73.
- \_\_\_\_(2013),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소득 분배율」, 미발간자료.
- 홍장표(2013),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 분석」, 『산업노동연구』19(1), pp.1~34.
- Atkinson, Anthony B. and Andrea Brandolini (2006), "From Earnings Dispersion to Income Inequality," Francesco Farina and Ernesto Savaglio (eds.), *Inequality and Economic Integration*, London:

- Routledge, pp.35~62.
- Atkinson, Anthony B. and Salvatore Morelli (2010), "Inequality and Banking Crises: A First look," Report for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Atkinson, Anthony B.,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2011), "Top Incomes in the Long Run of Hist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 (1), pp.3~71.
- Bahle, Thomas, Vanessa Hubl, and Michaela Pfeifer (2011), *The Last Safety Net: A Handbook of Minimum Income Protection in Europe*, Policy press.
- Blau, Francine D. and Lawrence M. Kahn(2009), "Inequality and Earings Distribution," Wiemer Salverda, Brian Nolan, and Timothy M. Smeeding (eds.),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77~203.
- Crettaz, E.(2011), Fighting Working Poverty in Post-industrial Economies.

  Causes, Trade-offs and Policy Solutions,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USA: Edward Elgar.
- DARES, "Les beneficiaires de la revalorisation du Smic au 1er janvier 2011," DARES Analyses, n°074, septembre 2011, http://travail-emploi.gouv.fr/IMG/pdf/2011-074-2.pdf.
- Esping-Andersen, Gøsta, Duncan Gallie, Anton Hemerijck, and John Myles(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vandrou, Maria, Jane Falkingham, John Hills, and Julian Le Grand(1993), "Welfare Benefits in Kind and Income Distribution," *Fiscal Studies* 14 (1), pp.57~76.
- Fields, G. S.(2008), "Income Mobility," Electronic version from Cornell University, ILR School, http://digitalcommons.ilr.comell.edu/articles/453.
- Glyn, Andrew (2009), "Functional Distribution and Inequality," Wiemer Salverda, Brian Nolan, and Timonthy M. Smeeding (eds.), *The*

- Oxford Handbook of Economic Inequ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101~126.
- Gollin, D.(2002), "Getting Income Shares Righ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0 (2), pp.458~474.
- Gottschalk, Peter and Sheldon Danziger(2005), "Inequality of Wage Rates, Earnings and Famil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75 ~2002,"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1 (2), pp.231~254.
- Hallerod, B.(1995), "The Truly Poor: Direct and Indirect Consensual Measurement of Poverty in Sweden,"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5 (2), pp.111~129.
- Hicks, N.(1998), "An Analysis of the Index of Unsatisfied Basic Needs (NBI) of Argentina, with Suggestions for Improvement," World Bank,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 ILO(2012), "Falling Labour Shares and Equitable Growth," *Global Wage Report* 2012/13, Geneva: ILO.
- Jenkins, Stephen P.(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e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 (245), pp.29~63.
- Johnson, G.(1954), "The 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850~1952,"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5 (2), pp.175~182.
- Krueger, A.(1999), "Measuring Labor's Shar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 (2), pp.45~51.
- Krugman, Paul (2010), Inequality and crises: coincidence or causation?

  Inequality and the Status of the Middle Class: Lessons of the
  Luxembourg Income Study, University of Luxembourg,
  Walderdbeere, Luxembourg, 28–30, June 2010.
- Kumhof, Michael and Romain Ranciere (2010), "Inequality, Leverages and Crises," IMF Working Paper 10/268.
- Lavoie, Mark and Engelbert Stockhammer (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Working Papers No.41.

-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http://www.lisdatacenter.org. Luxembourg: LIS.
- Marx, I. and B. Nolan(2012), "In-Work Poverty," GINI Discussion paper 51.
- Nolan, B. and C. Whelan(2010), "Using Non-monetary Deprivation Indicators to Analyze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Lessons from Europe?,"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 (2), pp.305~325.
- 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Paris: OECD,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옮김(2012), 『심화되는 불평등: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은 무엇인가?』.
- \_\_\_\_\_(2012), "Labour Losing to Capital: What Explains the Declining Labour Share?," OECD Employment Outlook 2012, Paris: OECD. (2013), OECD Employment Outlook 2013, Paris: OECD.
- Oxley, H., J. Burniaux, T. Dang, and M. M. d'Ercole(1997),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 29.
- Palier, Brune and Kathleen Thelen(2012), "Dualization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Industrial Relations, Labor Market and Welfare State Changes in France and Germany," Emmenegger, Patrick, Silja Häusermann, Bruno Palier, and Martin Seeleib-Kaiser (ed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한국노동연구원 옮김(2012), 『이중화의 시대:탈산업 사회에서 불평등 양상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 Piketty, T. and E. Saez(2003), "Income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1913~1998,"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1), pp. 1~41.
- Rajan, Raghuram G.(2010), Fault Lin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ndom House LLC, 김민주·송희령 옮김 (2001). 『폴트 라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위

- 협하는가』, 에코리브르.
- Reich, Robert(2010), *After Shock*, Random House LLC, 안진환·박슬라 옮김(2011),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김영사.
- Ringen, S.(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 (3), pp.351~365.
- Salverda, Wiemer and Christina Haas(2013), "Earnings, Employment and Income Inequality," Wiemer Salverda, et al. (eds.), Changing Inequalities and Societal Impacts in Rich Countries: Analyt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unpublished.
- Smeeding, Timothy(1984), "Approaches to Measuring and Valuing In-Kind Subsidi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ir Benefits," Marilyn Moon (ed.), *Economic Transfers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39~176.
- Smeeding, Timothy M., Jeffrey P. Thompson(2010), "Recent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Labor, Wealth and More Complete Measures of Well Being," PERI Working paper Series no.225.
- Spannagel, D.(2013), "In-work Poverty in Europe: Extent, Structure and Causal Mechanisms," COPE Working paper.
- Stiglitz, Joseph E.(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W.Norton & Company, 이 순희 옮김(2013), 『불평등의 대가: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열린책들.
- \_\_\_\_(2013), "Inequality Is Holding Back the Recovery," *New York Times*, January 19.
- Stockhammer, Engelbert (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Working paper Series No. 282.
- Thomas, Vinod, Yan Wang, and Xibo Fan(2000), "Measuring Education Inequality: Gini Coeffcients of Education," http://www.worldbank.org/

devforum/forum\_qog3.html.

- Van Mechelen, N., S. Marchal, T. Goedemé, I. Marx, and B. Cantillon (2011), "The CSB-Minimum Income Protection Indicators(MIPI) dataset," CSB Working Paper No.11/5, Antwerp: University of Antwerp, Available at: http://www.centrumvoorsociaalbeleid.be/sites/default/files/CSB%20Working%20Paper%2011%2005\_April %202011.pdf.
- Verbist, Gerlinde and Manos Matsaganis(2012), "The Redistributive Capacity of Services in the EU," GINI Discussion paper 53.

#### ◈ 執筆陣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현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시장 연구

■ 발행연월일 2013년 12월 26일 인쇄 2013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이 인 재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대표 (02) 3775-5514 Fax (02) 3775-0697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록일자 1988년 9월 13일

■ 등록 번호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 2013 정가 8,000원

ISBN 978-89-7356-962-5